

研究報告書 2002-18

# 老人福社會館 管理運營實態 및 改善方案

吳英姬·鄭京姬

卞在寬·李允景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초기노인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만성질환·치매 등의 건강악화로 인해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도 예상된다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의 증가는 기초소득보장 후생복지 등 기존 복지서비스 외에도 생활체육,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요구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후기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계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노인들이 보다 건전하고 알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989년 이후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노인복지회관은 2002년 현재 1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명확한 기능과 운영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실정으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조사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증진방안과 역할 재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노인복지증진이라는 맥락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존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수준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현황에 대한 최초의 전국조사 결과보고서로서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에 기여하고 노인복지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본원 오영희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정경희 노인복지팀장변재관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 소장, 이윤경 주임연구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 연구진의 구체적인 보고서 집필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서론 (오영희)
- 노인복지회관의 법적근거 및 노인복지 관련시설 분석(이윤경)
- 외국의 노인이용시설 관련 제도(정경희·변재관)
-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 분석(오영희·이윤경)
- 노인복지회관의 유형별 사례연구(오영희·정경희)
- 노인복지회관 기능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조사자료 분석(정경희)
-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오영희·정경희·이윤경·변재관)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보건복지부, 각 시·도 및 시·군·구 관계관과 노인복지회관 시설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유익한 의견을 제시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보고서의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준 손숙자 주임연구조원과 조사자료정리를 성실하게 도와준 정태순 자료정리요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의 내용을 검독하여 유익한 논평을 하여 주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가옥 교수님과 본 원의 서미경 연구위원, 강혜규 책임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2年 11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朴 純 一

## 目次

要約	13
第1章 序論	37
第1節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37
第2節 研究 方法 및 內容	39
第2章 老人福祉會館의 法的根據 및 老人福祉 關聯施設 分析	45
第1節 老人福祉會館의 法的根據 分析	45
第2節 地域社會 老人福祉 關聯施設 現況	55
第3章 外國의 老人利用施設  관련 制度	60
第1節 美國	60
第2節 日本	69
第3節 外國 制度의 示唆點	74
第4章 老人福祉會館의 運營實態 分析	76
第1節 一般施設現況	76
第2節 利用老人現況	86
第3節 서비스 內容 및 프로그램 實態	91
第4節 地域社會와의 連繫	106
第5節 財政現況	115
第6節 職員現況	124
第7節 運營實態分析의 示唆點	144

第 5 章 老人福祉會館의 類型別 事例研究 .....	146
第 1 節 特別市 老人綜合福祉會館 .....	146
第 2 節 廣域市 老人福祉會館 .....	154
第 3 節 道地域 老人福祉會館 .....	157
第 4 節 其他 運營形態·主體에 따른 事例 .....	160
第 6 章 老人福祉會館 機能 및 役割 定立에 관한 調査資料 分析 .....	166
第 1 節 老人福祉會館의 名稱 .....	166
第 2 節 老人福祉會館의 機能 .....	168
第 3 節 老人福祉會館의 서비스 提供方向 .....	170
第 4 節 老人福祉會館의 서비스 對象者 및 運營主體 .....	175
第 5 節 老人福祉會館의 運營上 어려움 .....	177
第 7 章 老人福祉會館 運營 活性化 方案 .....	179
第 1 節 機能과 役割의 再定立 .....	179
第 2 節 老人福祉會館의 運營模型 .....	183
第 3 節 制度的 整備 方案 .....	188
參考文獻 .....	198
附 錄 .....	201

## 표 목 차

〈표 1- 1〉 노인복지회관 실태조사(우편조사) 결과 집계 .....	41
〈표 2- 1〉 노인복지 관련시설의 시도별 설치현황 .....	57
〈표 3- 1〉 연도별 노인복지관 수(미국) .....	62
〈표 3- 2〉 노인복지관의 수입구성 예시 (Senior Center Inc, Charlottesville, Virginia) .....	65
〈표 4- 1〉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일반시설 현황 .....	78
〈표 4- 2〉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시설공간별 확보율 .....	81
〈표 4- 3〉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중복사용 시설공간 .....	83
〈표 4- 4〉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상 전체적 공간의 충분성	84
〈표 4- 5〉 프로그램 운영상 전체적 공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시설공간	85
〈표 4- 6〉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연평균 등록인원 현황 .....	86
〈표 4- 7〉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등록노인의 성별교육수준별 비율 .....	88
〈표 4- 8〉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등록노인의 연령별 비율 .....	89
〈표 4- 9〉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1일 평균 이용노인 현황 .....	90
〈표 4-10〉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연령기준 .....	91
〈표 4-11〉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기본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	94
〈표 4-12〉 직원수별 노인복지회관 기본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	96
〈표 4-13〉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추가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	99
〈표 4-14〉 노인복지회관 직원수별 추가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	99
〈표 4-15〉 지역별 단위사업 프로그램별 제공 비율 .....	100
〈표 4-16〉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이용료 형태 .....	101
〈표 4-17〉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의 노인교실 등록여부 .....	102
〈표 4-18〉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의 사업프로그램 중 우선순위 사업 .....	103

〈표 4-19〉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사업프로그램 …	104
〈표 4-20〉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 욕구조사 실시 여부………	105
〈표 4-21〉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107
〈표 4-22〉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지역 협의체모임의 유무 ……	108
〈표 4-23〉	지난 1년간 지역사회내 협력기관………	109
〈표 4-24〉	지역사회내 협력기관과의 연계내용별 비율(중복응답) ……	110
〈표 4-25〉	지역사회내 협력기관과의 연계방법별 비율(중복응답) ……	110
〈표 4-26〉	연계기관종류별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내용별 비율 및 빈도 (중복응답) ……	113
〈표 4-27〉	연계기관종류별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방법별 비율 및 빈도 (중복응답) ……	112
〈표 4-28〉	지역별 2001년도 정규세입예산(단위사업비 비포함) ……	116
〈표 4-29〉	지역별 정규 예산내역별 평균예산(2001년 기준) ……	117
〈표 4-30〉	정규사업 예산액 대비 세입·세출 항목별 평균비율(2001년 기준) ……	118
〈표 4-31〉	지역별 2001년도 단위사업 세입예산 ……	119
〈표 4-32〉	지역별 단위(특별)사업 예산내역별 평균예산(2001년 기준) ……	120
〈표 4-33〉	단위사업 예산액 대비 세입·세출 항목별 평균 비율(2001년 기준) ……	121
〈표 4-34〉	지역별 2001년도 시설 총세입예산 ……	121
〈표 4-35〉	지역별 시설 총예산내역별 평균예산(2001년 기준) ……	122
〈표 4-36〉	시설총예산액 대비 세입·세출 항목별 평균 비율(2001년 기준) ……	123
〈표 4-37〉	단위사업별 국고 예산지원기준액(2002년) ……	123
〈표 4-38〉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전체직원수 분포………	125
〈표 4-39〉	지역별 전체직원 대비 정규직원 비율………	126
〈표 4-40〉	지역별 직원의 성·학력·연령 분포 ……	128
〈표 4-41〉	지역별 직원의 연봉수준………	129
〈표 4-42〉	지역별 인건비의 국비·지방비·법인지원의 비율………	131

<표 4-43>	지역별 현시설 근무기간.....	132
<표 4-44>	지역별 사회복지관련시설 근무기간 .....	133
<표 4-45>	지역별 직원 자격증 소지율.....	134
<표 4-46>	직책별 업무시간 평균 투여비율.....	135
<표 4-47>	직책별 주평균 근무시간.....	136
<표 4-48>	직책별 업무만족도 .....	137
<표 4-49>	성·연령·근로형태별 업무만족도 .....	137
<표 4-50>	직책별 이직희망률과 이유.....	138
<표 4-51>	직책별 교육·훈련현황 .....	139
<표 4-52>	직책별 교육·훈련 개선사항(중복응답) .....	141
<표 4-53>	직책별 업무수행의 어려운 점(중복응답) .....	142
<표 4-54>	성·연령·근로형태별 업무수행의 어려운 점(중복응답) .....	143
<표 4-55>	직책별 건의 및 개선사항(중복응답) .....	144
<표 5- 1>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층별 시설현황.....	147
<표 5- 2>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2001년도 재정현황 .....	149
<표 5- 3>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별 주요업무내용.....	150
<표 5- 4>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취마 여가·문화 프로그램 .....	153
<표 5- 5>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의 층별 시설현황.....	155
<표 5- 6>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의 2001년도 재정현황 .....	156
<표 5- 7>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157
<표 5- 8>	C군노인복지회관 2001년도 재정현황 .....	159
<표 6- 1>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에 관한 의견.....	167
<표 6- 2>	직원의 직책별 노인복지회관 명칭에 관한 의(직원조사) .....	168
<표 6- 3>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에 대한 태도.....	169
<표 6- 4>	직원의 직책별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에 대한 태도(직원조사) .....	170
<표 6- 5>	직책별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제공과 서비스 연계 기능 중 우선기능(직원조사) .....	170

<표 6- 7>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제공방향.....	171
<표 6- 8>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장 우선 시 해야할 서비스.....	172
<표 6- 9>	직원의 직책별 노인복지회관의 우선 제공서비스(직원조사) ...	173
<표 6-10>	노인복지회관의 필수 서비스별 비율중복응답) .....	174
<표 6-11>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별 비율중복응답) .....	175
<표 6-12>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서비스 대상자 선별기준.....	176
<표 6-13>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주체.....	177
<표 6-14>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 어려움중복응답) .....	178
<표 7- 1>	노인복지관의 유형(案) 및 사업내용 .....	186
<표 7- 2>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른 현(現) 노인복지회관의 구분...	187
<표 7- 3>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른 현(現) 노인복지회관 단위사업실시율.....	188
<표 7- 4>	시·도별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른 현(現) 노인복지회관 분포 .....	191
<표 7- 5>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른 단위사업비와 국비예산추계 비교(전국) .....	193
<표 7- 6>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른 단위사업비와 국비예산추계 비교 (서울시 제외) .....	193
<표 7- 7>	노인복지관의 유형(案) 및 직원 7명 이상인 시설의 단위사업비와 국비예산추계 비교(전국) .....	194
<표 7- 8>	노인복지관의 유형(案) 및 직원 7명 이상인 시설의 단위사업비와 국비예산추계 비교(서울시 제외) .....	194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진행도 .....	40
[그림 3-1]	다목적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개념틀 예제인디아나 폴리스 ...	64
[그림 5-1]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기구조지도.....	148
[그림 5-2]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업무체계·	152
[그림 5-3]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의 기구조지도.....	155
[그림 7-1]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사업내용.....	183

## 附表目次

<부표 1>	시설명칭별 노인복지회관 시설공간별 확보율.....	204
<부표 2>	시설규모별 노인복지회관 시설공간별 확보율.....	205
<부표 3>	노인복지회관 등록노인의 성교육수준·연령별 비율 .....	206
<부표 4>	노인복지회관 명칭별 기본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	207
<부표 5>	노인복지회관 명칭별 추가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	209
<부표 6>	노인복지회관 명칭별 단위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	209
<부표 7>	성·연령·근로형태별 노인복지회관 명칭에 관한 의견.....	210

〈부표 8〉	직원의 성·연령·근로형태별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에 대한 태도 .....	210
〈부표 9〉	성·연령·근로형태별 서비스제공과 서비스 연계 기능 중 우선 기능 .....	210
〈부표 10〉	노인복지회관 직원의 성·연령·근로형태별 우선 제공서비스 .....	211
〈부표 11〉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수 .....	212
〈부표 12〉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 어려운 점 유무 .....	212

## 要 約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초기노인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만성질환·치매 등의 건강악화로 인해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도 예상됨
  -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의 증가는 기초소득의 보장 후생복지 등 기존 복지서비스 외에도 생활체육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요구함
  -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후기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계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지역사회 노인들이 보다 건전하고 알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다양해진 노인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의 해결을 요하는 서비스들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됨
- 노인복지법에 의한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9년 이후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여 2001년 12월말 현재 11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관계법규의 검토노인관련 지역사회시설 현황 분석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역할정립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재조명하고,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 및 직원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또한 기관·전문가 조사자료의 분석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研究方法

- 문헌연구로 노인복지회관 관계 법규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관련시설을 기존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하며, 외국의 노인이용시설과 관련제도 그리고 국내 기존관련연구를 검토함
-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 분석을 위하여 2002년 5월 27일~6월 8일까지 13일간 114개 노인복지회관 및 그 직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함
  - 사례연구 및 조사내용 보충을 위하여 7월 3일~7월 27일까지 25일간 연구진에 의한 직접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함
  -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학계, 시설관계자) 및 공무원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함

## 3. 研究結果

### 가. 노인복지회관 법적근거 및 노인복지 관련시설 분석

#### 1) 노인복지회관 법적근거 분석

-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조례규칙이 있음.
-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규정은 해당 관할지역의 규칙과 조례에 의하여 전반적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회관은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시설규모, 인력의 구성 등의 시설현황과 특성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
- 노인복지법에 의해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와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해

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육,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법적으로는 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정의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됨으로서 시설구분과 정의가 일치하지 못하여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혼란을 초래할 여지를 갖고 있음
-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식명칭임 그러나 지자체의 운영조례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이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자임. 그러나 조례에서는 지자체별로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자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본사업은 상담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교양강좌 등의 실시임. 또한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내용을 반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에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재고하여 그에 적합한 사업을 규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규모와 인력, 지역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노인복지회관 시설기준은 연면적1천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으로 사무실 및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등화설비, 소화설비의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함
-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회관 직원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시설의 ,장상당지 도원 2인 이상, 사무원, 물리치료사, 취사부, 관리인 등임
  - 이 기준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은 최소7명 이상으로 구성됨.

- 지자체 조례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3년으로 재위탁이 가능함.
-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지원수준에 따라서 수행되는 사업과 운영상태가 큰 차이가 나타남
  -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에서는 직접적인 운영보조금지원의 의무가 없음

## 2) 지역사회 노인복지 관련시설 현황

-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은 그 지역의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시설 자원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
  - 노인복지 관련자원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그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는 기본자료가 됨
-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관련시설로는 생활시설(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로 대표되며 그 외의 취업알선기관과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으로 볼 수 있음
  - 노인생활시설(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은 비교적 시·도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재가복지시설에 있어서 시도별 시설수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남
  - 노인복지회관(114개소)과 노인교육전담교육기관(842개소)은 28.1%가 서울시(269개소)에 위치하고 있음.
  - 노인취업알선기관(137개소)도 24.1%가 서울시(33개소)에 집중되어 있음.
  - 사회복지관(353개소)과 장애인복지관(80개소)의 경우도 서울지역(27.0%)이 월등히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며, 6대 광역시와 경기도가 다소 높으며 그 외 도지역의 경우는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남
  - 노인복지 관련시설의 분포를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 재가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지역에 따른 노인복지회관의 역할과 위상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

나. 외국의 노인이용시설 관련 제도

1) 미국

- 미국은 1965년 노인법(Older Americans Act)에서 다목적 노인복지관을 “노인에게 건강, 정신건강, 사회, 영양, 교육서비스와 여가활동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조직하고 전달하는 지역사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재 노인복지관(Senior Centers)의 73%는 다목적 노인복지관으로 포괄적이고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이 되고 있음.
- 다목적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사회적·신체적·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시설로 노인들의 관심사를 확장하고 가능성을 일깨우고 재능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노인복지관은 노인집단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역할을 함
- 다목적 노인복지관은 노인에게 사회활동과 중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주요기능은 ① 식사와 영양프로그램, ② 건강, 피트니스, 건강유지 프로그램, ③ 여가기회 제공, ④ 교통서비스, ⑤ 예술프로그램, ⑥ 자원봉사활동, ⑦ 교육기회, ⑧ 취업지원, ⑨ 세대통합, ⑩ 사회·지역사회활동, ⑪ 기타 특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997년 현재는 10,419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음
- 노인복지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교육프로그램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음
  - 노인복지관의 대다수가 초기의 건강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여가교육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 허약하고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제기관과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중요시함
- 고령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Aging)는 노인복지관의 크기와 복합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목적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을 위한 클럽 노인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국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음

- 미국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제공해야할 서비스의 방향과 일차적인 서비스 대상자와 관련하여 3가지 측면이 정책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
  - 첫째, 프로그램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
  - 둘째, 대상으로 누구를 초점에 둘 것인가 하는 점
  - 셋째, 노인복지관의 일차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 등

## 2) 일본

- 노인복지센터는 일본 노인복지법 제10조 7항(노인복지센터)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이며 지역의 고령자들에 대한 각종 상담서비스를 계승하고, 건강증진, 사회적 교양의 향상(생애학습 프로그램),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등 편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시설임
- 노인복지센터의 형태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 기능을 가진 A형, 대형으로 보건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특A형, A형의 기능을 보완하는 소형의 B형 노인복지센터 등 3유형이 있음.
- 운영목적은 지역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나아가 건강의 증진·교양의 향상 및 여가를 위한 편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즉,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주체의 경우 특A형은 시(구)정촌에서 직접 운영하며 그 외는 지방공공단체 혹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은 원칙으로는 무료임 단, 필요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해당이용에 직접 필요한 경비 이하로 정함
- 특A형 노인복지센터는 2000년 현재 26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A형은 1,624개소, B형은 37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3) 외국제도의 시사점

- 노인복지관 운영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건강한 노인 중심의 노인복지관과 신체적정신적인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중 어떤 측면에서 더 관심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또한 서비스 연계와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 중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충분한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기능 재정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함
- 노인복지관의 규모·유형별로 적합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과 그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물적인적 자원의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한 방안일 수 있음

#### 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 분석(기관 및 직원조사)

##### 1) 일반시설현황

- 조사결과에 의한 시설명칭은 노인복지회관이45.1%이며, 노인종합복지관은 28.4%, 노인종합복지회관은9.8%, 노인복지관 8.8%, 기타 7.8% 등임.
  - 서울시는 94.4%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6대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은 각각 53.6%, 55.4%가 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사용함
-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설립형태는 위탁형이72.5%이며, 기부채납형은 5.9%, 재단설립형은 3.9%, 기타 16.7%로 전체의 3/4정도가 위탁형 설립 기관임
  - 시설운영형태는 해당 사·도 또는 시·군·구에 의한 위탁운영이 74.5%로 전체의 3/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군·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17.6%이며, 법인·재단 등의 자체운영인 기타시설이7.8% 등임.
  - 한편 위탁운영시설인 경우 위탁계약기간은2년 이하인 시설이 43.1%이며, 3년 이상이 56.9%임.
- 시설운영 시작년도를 보면 1999년 이후에 운영을 시작한 시설이 47.1%로 전체의 절반정도이며, 1997~1998년이 23.5%, 1996년 이전이 29.4% 등임.
- 시설규모는 2,000㎡ 이상이 33.3%이며, 1,500㎡~2,000㎡ 미만인 20.6%,

1,000m<sup>2</sup>~1,500m<sup>2</sup> 미만인 24.5%, 1,000m<sup>2</sup> 미만인 21.6%임.

- 시설규모가 2,000m<sup>2</sup> 이상인 시설이 서울시는 83.3%인데 반해, 광역시는 28.6%, 도지역은 19.6%임.
  - 일반시설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지방광역시, 도지역간에 시설명칭 위탁주체, 시설규모가 큰 차이가 있음
- － 법적 기준시설로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는 기관이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당확보율은 93.1%, 식당은 89.2%, 상담실 및 교육실은 각각 78.4%, 물리치료실 확보율은 79.4%임.
- 법적기준시설 이외의 시설공간 현황을 보면 복리후생시설인 미용실과 목욕탕의 확보율이 각각 74.5%, 69.6%이며, 취미·여가 시설인 장기바둑실과 서예실의 확보율이 각각 71.6%와 68.6%임.
  - 사회교육실 중 별도의 컴퓨터실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 61.8%이며,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간보호실은 48.0%, 관장실은 67.6%, 자원봉사자실은 50.0%의 시설이 확보하고 있음
- － 노인복지회관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체적 공간의 충분성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시설이 77.2%이며, 적당하다는 15.8%, 충분하다는 6.9%로 현재의 시설규모에 대해 만족하는 시설은 22.7%에 불과함.

## 2) 이용노인현황

- － 노인복지회관의 연평균 등록인원을 보면 500명 미만의 시설이 30.7%이며, 1,000~1,999명인 시설이 26.1%, 500~999명인 시설이 11.4%, 5,000명 이상인 시설이 10.2%이며, 연평균 등록인원은 1,848명임.
- 등록노인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는 39.6%, 여자는 60.4%로 여자노인의 등록 비율이 더 높음.
  -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56.4%이며, 중졸 24.5%, 고졸 이상 18.8% 등임.
  - 연령별 평균 비율은 65~69세가 32.9%, 70~74세 25.5%, 64세 이하와 75~79세가 각각 16.9%, 80세 이상은 8.0% 등임.

- 1일 평균이용노인 수는 424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시는 평균 848명이며, 광역시는 평균 413명, 도지역은 평균 273명임.
-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연령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0%의 시설은 등록에 필요한 공통된 연령제한이 있다고 응답함
  - 연령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경우 회원자격 연령이 6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80.2%이며, 65세 이상은 19.8%임.

### 3) 서비스 내용 및 프로그램 실태

- 상담사업 실시율은 83.2%임.
-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45.9%이며, 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실시율은 각각 39.2%임.
-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회복사업 중 물리치료 제공률이 75.3%이며, 작업치료는 26.0%, 운동치료는 45.4%, 건강상담은 68.0%, 진료는 59.4%, 한방치료는 53.6%, 검진사업은 44.8%, 방문간호(방문재활)는 36.5%, 기타서비스(기치료, 수지침)는 50.5% 등임.
- 복리후생사업 중 경로식당은 시설의 87.8%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용서비스는 86.9%, 목욕탕 운영은 45.4%, 차량서비스 제공은 52.1% 등임.
- 지역복지협력사업 중 경로행사는 84.7%, 주민편의시설 제공은 81.8%, 자원봉사자모집 및 관리는 77.8%, 출판홍보서비스 제공률이 72.7%, 시설 견학 및 실습교육은 72.7%,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70.4%, 노인봉사대 활동은 67.7%, 후원사업은 66.0%, 자문위원회 운영은 58.6%, 푸드뱅크는 23.2%, 기타는 11.1% 등임.
- 교양교실사업 중 일반교양강좌 실시율은 83.7%이며, 한글교육은 82.3%, 영어교육은 63.8%, 한자교육은 52.1%, 숫자교육은 32.6%, 일어교육은 31.4%, 역사탐방은 27.4%가 실시하고 있음.
- 건강교육사업은 일반건강 (보건)교육실시율이 63.4%, 질병중심의 (보건)교육 실시율은 52.1%임.

-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62.9%임.
- 취미·여가프로그램 중 건강증진관련내용으로 체조·에어로빅·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93.9%이며, 가요교실(가요, 가곡, 노래방 등)은 90.7%, 전통문화교실(민요·시조)은 79.6%, 체육관련 프로그램(탁구, 게이트볼, 포켓볼 등)은 77.6%, 무용(고전·현대) 프로그램은 72.2%, 사물놀이(장구, 가야금, 풍물, 창 등)는 75.3%, 씨클반활동은 57.3%, 미술활동(그림, 도자기, 색종이접기 등)은 43.8%, 서예반은 84.7%, 장기·바둑은 75.3%, 다도·꽃꽂이·채소가꾸기 등은 23.2%, 종교활동은 13.5%, 지역사회봉사활동은 57.7%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가복지사업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제공률은 45.7%이며, 식사배달서비스는 36.2%, 밑반찬배달서비스는 45.7%, 세탁서비스는 31.6%,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1.1% 등임.
  -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밑반찬배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 이상의 시설이 실시하고 있음
- 중풍·치매노인, 기타 장애 가족에 대한 수발 교육 및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사업실시율은 23.7%임.
- 경로당연계사업 실시율은 53.6%이며, 서울시는 88.9%임.
- 일반예산 이외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단위사업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실시율은 43.0%이며, 중풍 및 허약노인 주간보호사업은 34.4%, 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은 23.7%, 단기보호사업은 4.3%, 노인의집 운영사업은 6.5%,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53.2%, 장례서비스는 8.6%, 취업알선사업은 35.1% 등임.
-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프로그램의 이용료에 대하여 서비스요금제가 42.1%, 월단위 정액제가 17.1%, 기타(무료 포함) 40.8% 등임.
- 노인교실 또는 노인대학 노인학교가 보건복지부 또는 사군·구의 노인교실에 등록되어 운영중인 시설이 48.4%임.
- 노인복지회관의 사업프로그램 중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67.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으로

11.5%, 지역복지협력은 7.3%, 경로당 연계사업은 5.2% 등임.

-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중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47.3%이며,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21.5%, 재가복지사업은 7.5% 등의 순임.
- 이용노인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76.6%이며, 이중 47.9%는 정기적으로, 28.7%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함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은 모든 시설이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시는 85.2%, 도지역은 64.7% 실시함.

#### 4) 지역사회와의 연계

-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설은 89.8%이며, 1일 평균 자원봉사자수는 35명임.
  -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주된 통로는 종교단체 및 지역내의 사회단체를 통해서가 32.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지역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로 23.1%, 자원봉사자들의 직접적인 방문 신청이 17.9%, 시·군·구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가 15.4% 등임.
- 지역사회에 보건 또는 복지관련 협의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식적인 협의체가 있으며 작동중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43.7%이며, 협의체는 있으나 거의 활동이 없다는 시설이 13.8%로서 현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57.5%임을 알 수 있음.
  - 지역협의체가 없는 시설의 경우 협의체 형태는 아니지만 지역내 일선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 시설이 14.9%로 전체시설의 72.4%는 보건·복지관련 협의체 또는 모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협의체 또는 모임이 지역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31.3%의 시설은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52.2%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도움이 된다(83.5%)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으로는 구청동사무

소가 25.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각종 협(의)회·시민단체로 22.4%, 각종 사회복지관이용시설은 17.1%, 보건(지)소는 11.8% 등임.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계기관으로는 각종 협(의)회·시민단체임.

-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들과의 연계내용은 프로그램이나 사업관련 정보교환이 38.2%이며, 개인정보 또는 서비스 수급관련 정보교환은 31.6%, 공동사업추진이 27.6% 등임.
- 연계기관과의 협력방식으로는 전화가 50.0%로 가장 빈번히 이용되었으며, 공문 40.8%, 면담 23.7% 등임.

#### 5) 재정현황

- 정규사업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2억~5억원 미만인 시설이 27.0%이며, 5억~10억원 미만은 24.7%, 1억~2억원 미만은 18.0%, 1억원 미만은 14.6%, 10억원 이상의 시설은 9.0% 등임.
  - 지역별로 보면 5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서울시는 88.9%인데 반해,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20.8%, 19.1%로 서울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일반예산의 규모는 시설직원 수와 사업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됨.
- 일반세입예산에 대한 세입항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국고 및 지방비의 정부보조금 비율이 69.3%이며, 법인지원금이 11.7%, 사업수입금이 10.6%, 기타가 4.9%, 후원금은 3.5% 등의 순임. 광역시의 경우 정부보조금 비율이 낮은 반면, 법인지원 비율은 20.0%로 타지역에 비하여 약 2배 정도임.
- 총세출액에 대한 인건비의 평균 비율은 57.3%이며, 사업비 30.0%, 재산조성비(시설비) 8.4%, 기타 4.3%로 세출항목별 비율은 지역별로 비슷함
- 단위사업예산이란 일반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국고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으로 5천만원 미만이 20.5%이며, 5천만~1억원 미만이 13.6%, 별도 단위사업비가 없는 시설이 44.3% 등임.

## 6) 직원현황

- 노인복지회관 직원의 수를 살펴보면 시설당 평균12.7명이 근무하고 있음  
서울시는 26.3명, 광역시는 11.7명, 도지역은 9.0명으로 지역간 편차가 큼
  - 분석대상 노인복지회관 102개소 중 직원이 7명 미만인 시설은 30개소로 전체시설의 29.4%임.
- 노인복지회관 직원 인건비의 출처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전액국고보조를 받는 직원은 전체의 3.9%(서울시 4.3%, 광역시 1.4%, 도지역 4.8%)임.
  - 직원인건비에 대한 지방비지원 비율에서 지방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직원의 비율은 13.7%(서울시 12.5%, 광역시 17.7%, 도지역 12.8%)임.
  - 전액법인지원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비율은 8.8%(서울시 6.4%, 광역시 15.8%, 도지역 7.7%)이며, 광역시의 경우 법인지원금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비율이 높음.
- 직원의 업무만족도를 보면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매우 불만족)에 평균 3.6점이며, 복리후생은 3.3점으로 업무내용(2.5점), 업무량(3.0점), 동료(2.2점)·상사(2.4점)·클라이언트(2.1점)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 만족수준이 낮음
- 노인복지회관 직원 중 전체의 52.9%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음
  - 이직을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저임금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지난 1년간 교육·훈련경험 여부에서 전체직원의 65.1%가 경험이 있음
- 노인복지회관 직원의 업무수행상 어려운 점(중복응답)으로는 46.2%가 과중한 업무를 지적하였으며 열악한 근무여건이 27.5%, 인력·자원봉사자·기자재 등의 자원부족이 18.7%, 클라이언트인 노인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이 15.1%임.
- 직원들의 건의사항(중복응답)에서 직원처우개선이 30.4%, 시설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나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22.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지원의 필요성이 16.8%, 행정간소화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이 14.1%, 시설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15.7% 등임.

## 7) 운영실태분석의 시사점

- 시설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일관된 규칙없이 여러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이 확립되지 못함
- 시설규모, 인력, 서비스제공 현황에 있어서 서울지역과 지방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시설운영비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의 지원없이 운영됨으로써 지역간 재정적 격차가 더 커짐.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지원이 원칙적으로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방의 노인복지회관을 일정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운영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인력배치기준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최소 직원수를 7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행되어야 할 사업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력수준임 한편 현재의 인력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복지회관이 29.4%임.
  -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노인복지회관 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하여 과중한 업무(46.2%), 열악한 근무여건(27.5%), 인력·자원봉사부족·기자재 등의 자원부족(18.7%), 클라이언트인 노인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15.1%) 등 전반적으로 업무의 과중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라. 노인복지회관의 유형별 사례연구

앞장의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동일한 유형으로 지역을 특별시·광역시,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시설운영에 관한 사례연구를 시도함한편 기타사례로 운영형태·주체에 따른 문제점을 위주로 분석함

1)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규모가 종합사회복지관 가 2,000m<sup>2</sup> 이상)의 수준으로 시설설비가 잘 되어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로 교육실과 경로식당, 상담실 등의 공간 부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주요 기본사업으로는 상담사업 기능회복사업 결연·후원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노인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으로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과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단위사업으로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의 집 사업 특화사업(결연사업), 희망의 집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8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당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함께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 후원사업을 통하여 여가시설로서의 경로당 자리매김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사업과 노인공동작업장은 성과가 저조하지만 고령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노인의 개인 성취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므로 생산적 복지측면에서도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사회교육 프로그램에는 교양강좌 등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의 재취업에 필요한 취업적응교육이나 전직훈련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지역노인들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복지관의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확실적이고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실시하기보다는 지역특성 지역노인복지자원 운영자의 전문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광역시 노인복지회관

- 시설규모는 종합사회복지관 나형(1,500㎡ ~ 2,000㎡ 미만)의 수준임.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실내공간 신체적 활동 및 여가공간이 부족함 광역시 또는 도지역의 경우 전체적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교육실(프로그램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노인회사무실뿐 아니라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직원현황은 노인복지회관의 직원(7명)과 병설 노인주간보호소 직원(3명), 경로당활성화 사업(2명)을 합하여 12명임.
  - 광역시와 도지역의 지방비보조에 의한 최소의 직원구성으로는 다양화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움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위한 인건비지원이 기본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에 의해 지원됨으로써 직원의 근로형태가 불안정 할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과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함

## 3) 도지역 노인복지회관

- C군노인복지회관은 1999년 5월에 최초 위탁(2년 단위)이 이루어졌으며, 2001년 재위탁을 받음.
  - 위탁계약기간이 짧아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C군노인복지회관은 도로에서 걸어서 접근하기는 쉬우며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군지역의 먼 거리에서도 모든 노인이 이용하고 있음
-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총 세입 중 단위사업에 의한 예산 지원비율이 45.0%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임
  - 세입예산과 지출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위사업비를 일반예산 항목으로 합쳐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C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5%에 불과하지만, 노인비율이 높으므로 노인 복지사업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편임
- 예산지원을 중앙(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지역별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개별사업별 지원이 아닌 일정한 단위사업의 내용을 묶어서 일괄지원 할 수 있어야 됨

#### 4) 시·군·구 직영 노인복지회관

- D노인복지회관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노인복지회관임
  -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지 않아서 노인복지회관 본연의 기능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재정실태를 살펴보면 주로 시설보강에 예산을 소요하고 있을 뿐 강사료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출이 없음
  - D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의 본연의 기능에 부응하는 공간구성이 되어 있지 못함
- E종합복지센터는 군단위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노인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노인과 여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종합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이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의에서 벗어나는 운영형태로 노인복지회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군·구 직영 노인복지회관은 공통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시·군·구 직영 노인복지회관의 가장 큰 문제로는 전문인력의 부재가 지적될 수 있음. 직원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이 어렵고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 5) 대한노인회 운영 노인복지회관

- 군에 소재하고 있는 F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대한노인회에서3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군청에서 계획 실시하고 있음.
  - 지역적 특성상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 없어서 위탁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전담공무원 인건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직영하지 못함
  - 1998년부터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일반운영비 시설관리인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군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어 준직영형태임
  - 이러한 운영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규적인 프로그램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날만 프로그램(노인학교, 게이트볼, 노래자랑, 시조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노인복지회관 본연의 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지역사회 의 각종 단체모임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한노인회 지회사업으로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F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대한노인회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비만을 보조하고 있을 뿐 위탁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은 상태임
  - 건물면적이 622㎡에 불과하며 실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 되어 있지 못하며,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을 할 수 있는 강당만 있음
  -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직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이 없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지역사회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 또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대한노인회지회 차원에서 의 노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마. 노인복지회관 기능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조사자료 분석

1)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 노인복지회관 명칭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설 관리자는 다수가 명칭의 통일을 희망하고 있으나 어떠한 명칭으로 통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27.2%이며, 노인복지관 25.0%, 노인복지회관 16.3%로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음 또한 규모에 따라서 ‘종합’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의견도 26.1%임.
  - 한편 공무원의 경우, 27.9%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공식명칭인 노인복지회관으로 통일, 21.3%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통일 13.1%는 노인복지관으로 통일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어 어떤 명칭이 되었던 명칭의 통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연구자들은 11.8%만이 현재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는 의견이며 41.2%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의 통일을 선호하고 있음
  -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는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하며, 62.2%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의 명칭통일을 희망하고 있고, 18.2%는 노인복지관으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명칭의 통일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며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떠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정책 입안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2) 노인복지회관의 기능

-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정립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으로 보는 견해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연계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되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각각 32.2%이며, 서비스 연계가 일차적 기능이라는 의견도 18.9%임.
  - 한편, 공무원은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보는 견해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연계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되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음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주가 되고 서비스 연계가 부차적 기능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함

- 연구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차적인 기능이라는 응답이 52.9%이며, 서비스 제공과 연계의 역할을 동일한 비중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29.4%임.
- 직원들의 응답을 보면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연계의 기능의 비중을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임

### 3)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제공방향

- 기본방향은 공무원과 시설관리자 연구자가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전문화보다 응답률이 높음.
  - 이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시점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됨
-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서비스로는 노인복지회관의 법적 분류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가장 기본기능인 사회교육서비스가 언급되고 있음. 즉 시설 관리자의 40.9%, 공무원의 37.1%, 연구자의 26.7%가 사회교육서비스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서비스로 언급하고 있음
- 시설 관리자의 경우 노인복지회관의 필수서비스로 가장 많이 언급된 서비스(중복응답)는 사회교육서비스(63.6%)이며, 다음이 재가복지서비스(47.7%), 보건의료서비스 (34.1%), 상담서비스(30.7%) 등의 순임.
  - 공무원의 경우도 사회교육서비스가 59.0%, 재가복지서비스 44.3%, 상담서비스 31.1%, 보건의료서비스 24.6% 등 비슷한 응답유형을 보이고 있음
  - 연구자의 경우 응답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 80%가 재가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회관의 주요기능으로 언급하고 있음
  -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서비스로 우선시 되어야 할 1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사회교육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로

응답률이 27.6%와 27.4%로 비슷한 수준이며, 다음으로 상담서비스가 15.8%, 보건의료서비스가 12.6%임.

- 노인복지회관에 부적합한 서비스로 지적이 가장 많이 된 서비스는 취업 등 경제관련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임

#### 4)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대상자 및 운영주체

-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대다수가 연령기준을 언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65세를 언급하고 있음.
  - 이는 대부분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임. 즉, 서비스 대상자로 일반노인이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시설관리자는 72.8%, 공무원은 72.6%임.

#### 5) 노인복지회관 운영상 어려움

- 노인복지회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노인복지회관 수의 부족, 예산부족,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부적절한 위탁법인의 선정, 이용계층의 편중, 직원자질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음

#### 바.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

##### 1)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 지역사회 노인복지 구심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정립
  - 기존 여가중심의 사회교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

을 위하여 건강, 교육,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역할변화는 법적인 명칭과 분류체계의 변화가 요구됨 즉, 노인복지회관을 여가복지시설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와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의하고 명칭과 분류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임
- 노인복지회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함에 있어서 지역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임을 명시하고 지역내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것을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역할로 언급하여야 할 것임
-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사업은 상담사업을 바탕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건강교육사업 복리후생사업 사회교육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 노인자원봉사(유급/무급),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거동불편노인을 위해서는 기능회복사업보건·재활사업, 재가복지사업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을 실시,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수행에 필요한 지역복지협력사업노인복지 관련시설과의 연계를 실시함.
  - 이러한 주요 사업 중 지역별 특성 시설규모,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욕구에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복지회관의 유형을 지역 시설·직원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기관의 특성을 살려 선택적 사업이 개발·추진되어야 할 것임.

## 2)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모형

- 노인복지회관의 유형을 시설규모 및 인력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노인종합복지관(가형, 나형)과 노인복지관으로 구분하여 조직 및 사업내용을 제시함
- 대도시형인 노인종합복지관 가형의 경우는 직원수26명을 기준으로 총무과,

사회복지과, 재가복지과로 구분함

- 총무과는 조직 및 인사, 예산·결산, 회계·경리, 시설 및 재산관리, 복리후생사업,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수행
  - 사회복지과는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복지협력사업, 기능회복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의 업무수행
  - 재가복지과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
- － 중소도시형인 노인복지관은 직원수 12명을 기준으로 총무팀, 사회복지팀, 재가복지팀으로 구분함
- 총무팀은 조직 및 인사, 예산·결산, 회계·경리, 시설 및 재산관리, 복리후생사업,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수행
  - 사회복지팀은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복지협력사업, 기능회복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또는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의 업무수행
  - 재가복지팀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또는 주간보호사업 등의 업무수행

### 3) 제도적 정비 방안

- － 재정지원의 확대 및 지원방식의 개선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에는 국고보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제공 수준에 격차가 발생함
- 단위사업별 국고지원은 자칫 노인복지회관에서의 균형잡힌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하고 인력관리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이 정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설운영비를 국고보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현실적으로는 개별적인 서비스 단위별 국고보조에서 기관단위 보조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모든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비를 국고보조 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일정기준을 만족시키는 시설에만 운영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지역사회 노인복지거점 기관에 대한 통합적 재정지

원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 위탁 기준의 설정: 위탁법인 선정의 기준 및 평가제도의 제시를 명확히 하는 대신 위탁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운영주체의 선정: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임 따라서 예산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운영주체 선정 시 지역성을 벗어나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에게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 평가제도의 도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는 평가를 통한 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이끌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회관도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정기적인 평가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함
  - 단,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고보조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수준으로 국고보조를 지급한 이후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틀을 개발해야 함
- 노인복지회관 설립위원회 설치: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복지회관 설립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될 때부터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
- 단계적 정비: 일정기준 미달의 시설은 「노인복지관」(가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관(가칭)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만들고, 법적 근거에 의해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해야 함

# 第1章 序論

## 第1節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급격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초기노인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만성질환·치매 등의 건강악화로 인해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도 예상된다 또한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과 경제적 능력에서의 노인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의 증가는 기초소득의 보장 후생복지 등 기존 복지서비스 외에도 생활체육,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요구한다. 한편 이들 노인들을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후기고령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 계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왜냐하면 평균가구원수의 축소, 자녀세대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노인부부 세대 또는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비공식 수발이 크게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시책방향도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수용보호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가정중심의 복지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2). 즉, 노인복지의 개념이 과거의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서 전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변화됨에 따라 지역사회노인들

이 보다 건전하고 알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해진 노인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의 해결을 요하는 서비스들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다. 이 중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9년 노인여가시설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12월말 현재 1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이용노인의 욕구조사 또는 표본조사에 의한 시설운영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원영희 외(1997)는 전국 25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변재관(2000)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침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현황을 분석하였다. 서경석(2001)은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노인복지회관의 문제점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역사회노인을 위한 복지센터로서의 개념정립의 필요,성법적 근거의 취약성, 명칭의 이원화, 운영지침의 부재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시설운영면에서도 기본시설의 부족, 인력과 예산의 열악성, 지역적 격차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은 전체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없이 일부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 
- 1) 노인복지회관은 지자체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통일되지 못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명칭인 노인복지회관이란 용어로 이 명칭들을 언급함.
  - 2) 서미경 외(1996)의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노인이용시설인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모형개발을 위하여 서울의 3개 노인종합복지관의 실태를 파악함. 김범수 외(1997)는 서울시립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시설이용노인의 복지욕구 및 프로그램이용 현황에 관해 분석하였음. 나상희 외(1998)는 서울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 대한 욕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음. 김상근(2000)은 대구노인종합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노인복지회관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노인복지회관의 역할과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관계법규의 검토노인관련 지역사회시설 현황 분석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역할정립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재조명하고,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 및 직원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또한 운영실태 및 전문가 조사자료의 분석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역할 재정립과 운영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第2節 研究 方法 및 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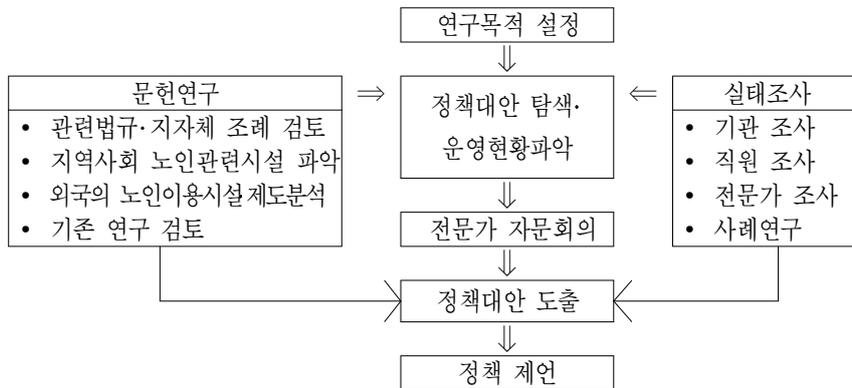
본 연구는 문헌연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실태조사 사례연구, 전문가 조사, 그리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그림 1-1 참조).

문헌연구에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법적 근거와 기존 운영기준을 검토하여 향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관계 법규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운영조례시행규칙」을 검토하였다. 한편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표준유형의 제시를 위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관련시설 현황을 기존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외국의 노인이용시설과 관련제도를 이해하고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재정립에 반영해야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다목적 노인복지시설과 일본의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운영지침에 대한 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인복지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2002년 5월 27일~6월 8일까지 13일간 114개 노인복지회관 및 그 직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복지회관의 기관조사는 전국14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응답률 93.0%)하였으며, 직원조사는 전체 직원 중 향후 노인복지회관

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관리자 전문직 및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응답률 81.9%)하였다(표 1-1 참조).

[그림 1-1] 연구 진행도



한편 사례연구 및 조사내용 보충을 위하여 7월 3일~7월 27일까지 25일간 연구진에 의한 직접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면접조사는 지역 및 운영주체를 고려하여 선정된 26개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면접은 주로 시설 총무(관리자)와 해당 시설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직접방문 면접조사 대상기관은 16개 시·도의 지역적 분배와 시·군·구 직영기관, 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시설관리공단, YMCA 등 다양한 운영주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사례연구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구체적인 위탁관련 사항, 시설현황, 조직 및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표준운영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의 역할 및 기능정립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계 전문가(시설관계자, 연구자) 및 공무원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표 1-1 참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 실무자의 자문회의를 거쳐 의견을 듣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1-1〉 노인복지회관 실태조사(우편조사) 결과 집계

(단위: 개소, 명, %)

구분	시설 조사표	직원 조사표	전문가 조사표		
			시설 관리자	관계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학계 전문가
조사대상수	114	717 <sup>1)</sup>	114	130	50
조사완료수 (응답률 %)	106 (93.0)	587 (81.9)	106 (93.0)	63 (48.5)	15 (30.0)

주: 1) 회수된 조사표 106개소 중 조사항목에 무응답 내용이 많은 4개를 제외하고, 자료입력이 완료된 102개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상근직 및 계약직 1,300명 중 사무원 생활보호원 간병인, 조리취사원 관리인, 운전기사, 보일러기사 등은 제외됨

실태조사결과는 백분율 및 평균치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으로 기술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WIN을 활용하였다. 국내 기존연구에서 서울시 및 지방간의 격차에 대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으므로 각 통계표에서는 지역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통계치를 제시하였으며, 분석한 응답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해당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114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조사에서는 일반시설현황 재정실태, 조직 및 인력현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현황,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전반적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해당 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업무 및 근무환경 지원환경 향후 기능과 역할, 일반사항에 대한 설문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조사표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역할 재정립과 서비스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3종류의 조사자료분석과 직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지역에 따른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였다 지역에 따른 분류

- 3) 그러나 본 조사는 노인복지회관 실태파악이 주목적이므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음
- 4) 방문면접에서는 시설관계자에게 시설 설립과 위탁에 대한 내용향후 노인복지회관의 기능 역할, 재정관련 사항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탁관련 내용과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역할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로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기관의 전반적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분류와는 별도로 운영형태·주체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타사례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노인복지회관 시설조사 직원조사, 전문가 조사, 사례연구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기관조사

##### 1) 시설일반현황

- 설립형태, 운영형태(위탁주체, 기간)
- 시설규모, 개별시설공간별 유무 및 공간의 충분성
- 편의시설별 유무
- 시설 접근성

##### 2) 이용노인현황

- 등록회원수: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경제수준(수급자)
- 이용회원 연령기준

##### 3) 직원현황

- 직원 일반사항: 성, 연령, 인건비, 근무형태, 최종학력, 자격증 소지여부, 시설근무년수

##### 4) 재정실태

- 2001년도 정규예산내역(세입, 세출)
- 2001년도 부설(특별)사업 예산내역(세입, 세출)
- 국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견

##### 5) 프로그램별 서비스

- 각 사업별 실시 여부
- 사회교육프로그램별 실시 여부

- 단위사업 프로그램별 서비스 실시 여부
- 중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조사연구사업 실시 여부

6) 지역사회와의 연계

- 등록자원봉사자수 및 1일 평균 자원봉사활동자수
- 자원봉사 자원을 얻는 통로
- 지역사회내 관련기관과 연계방법 연계내용
-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향후 기능과 역할

- 노인복지(회)관 명칭
- 기능·역할(일차적 서비스제공 또는 연계서비스)
-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할 서비스
- 지역사회 내에서의 노인복지회관의 위상
- 우선적인 이용 대상자
- 단위사업(재가복지, 취업알선 등)의 필요성 등

나. 직원조사

1) 업무 및 근무환경

- 업무비율
- 평균 근무시간
- 업무만족도(급여, 업무내용, 업무량, 복지후생제도, 동료 및 상사·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이직 희망여부 및 이유

2) 지원환경

- 직원 교육 및 훈련 현황, 개선사항

## 3) 향후 기능과 역할

- 노인복지(회)관 명칭
- 일차적 기능·역할(일차적 서비스제공 또는 연계서비스)
-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할 서비스
- 업무수행 시 어려운 점
- 시설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 4) 개인 일반사항

-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 자격증 소유여부
- 직책 및 근로형태

## 다. 전문가조사

- 1) 노인복지(회)관 명칭
- 2) 기능·역할(일차적 서비스제공 또는 연계서비스)
- 3)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할 서비스
- 4) 지역사회 내에서의 노인복지회관 위상
- 5) 우선적인 이용 대상자
- 6) 단위사업(재가복지, 취업알선 등)의 필요성 등

## 라. 사례연구

- 1) 시설설립과 위탁에 관한 내용
- 2) 시설 위치 및 서비스 대상자
- 3) 시설 관리운영현황
- 4) 제공 사업·서비스 현황
- 5) 기타 시설운영상 문제점 등

## 第2章 老人福社會館의 法的根據 및 老人福祉 關聯施設 分析

### 第1節 老人福社會館의 法的根據 分析

#### 1. 定義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해당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조례와 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각 시설에서는 운영규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규정은 전국적으로 제시된 것 없이 해당 관할 지역의 규칙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은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시설규모, 인력의 구성 등의 시설현황과 특성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조례와 규칙 내용의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보고,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 5) 지역사회내에서 대표적인 복지관인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 앞서 관련 법률과 훈령 등에 의해서 전국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7항),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3조, 7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조, 6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별표1, 제5호)으로 다양한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 특히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그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설치운영신고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통해 자세한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노인복지회관과 비슷한 유형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법적 근거 및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와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목적은“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게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육,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즉,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 교육,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 운영조례에서의 노인복지회관 정의도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또는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회관을 지역사회 내에서의 노인복지의 중심적 역할로 정의한다. 즉, 법적인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에게 관련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중심역할이 기대되어진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정의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됨으로서 시설분류구분과 정의가 일치하지 못하여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혼란을 초래할 여지를 갖고 있다.

## 2. 名稱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식명칭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운영조례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명칭의 유형은 ‘복지관’과 ‘복지회관’으로 구분되며, ‘종합’의 명칭이 사용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타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대체적으

로 ‘복지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으로 모법(母法)인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사용되는 명칭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일반화된 광역시와 대도시 중심으로 ‘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의 명칭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사용하고 있다. 서울은 1개소의 노인복지센터를 제외하고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을 사용하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제주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고,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전남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한 지역 내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몇몇 시설의 경우 운영조례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대한노인회 ○○○지회’로 명명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이 아닌 ‘대한노인회’라는 수탁단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노인복지회관의 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임의적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시설종류에 대해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해 노인복지회관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하며 따라서 노인복지회관과 명칭이 유사한 시설들과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막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통일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도 사회복지관과 같이 모법인 노인복지법에서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하나로 통일화하여 시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利用對象者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자이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지자체별로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자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으로 대체적으로 60세 또는 65세로 보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의 기준은 전체적인 연령기준 외에도 각 사업별 서비스별 연령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정봉사원과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와 취업알선센터 등의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곳의 경우는 단위사업별 연령기준에 의해서 이용대상 노인이 정해지게 된다 즉, 재가복지사업의 경우는 65세 이상이며, 노인취업 관련 서비스에서는 55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따라서 이용대상자의 연령기준이 상이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이용대상자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해 모든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있어 동일한 연령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현재의 상태는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 4. 事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업을 노인복지회관의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상담·지도: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 예방, 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 ②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 ③ 기능회복훈련: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 ④ 교양강좌 등: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 ⑤ 또한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병설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특성에 따라 야간이 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회관은 법적으로 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재가복지사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로서 다양한 복지적 서비스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의 사업내용도 노인복지법의 사업내용과 유사하여 지역사회 노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즉, 상담, 교육, 취업, 재가복지사업, 기능회복(물리치료), 의료, 복지후생(이·미용실, 목욕실 등)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미용실, 목욕실과 같이 특정 설비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강조하거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은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내용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재가복지사업의 주간보호시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병행 운영하여 일정기간 보호 후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재가복지사업 외에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취업알선센터 등의 사업을 병설 운영하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기본사업 외에 추가적인 단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내용을 반영하는 노인복지법과 기타 조례에서의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진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업은 규모에 따라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행해야 하

6) 본 글에서 노인복지회관의 기본사업이라고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법인지원 등 정규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하며 단위사업은 국고보조 등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는 사업이 선정된다 즉,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단위사업이다 이 중 노인복지사업은 모든 사회복지관에서 필수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서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은 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재가복지사업 취업 및 공동작업장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본래의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단순히 건물의 의미이며 그 곳에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에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재고하여 그에 적합한 사업을 규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규모와 인력, 지역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회관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5. 施設 및 設備基準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회관 시설기준은 연면적1천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으로 사무실 및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등화설비, 소화설비의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대체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제시된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미용실과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등의 설비기준을 제시한다.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설비는 노인복지회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례로서 경기도 P시 노인복지관의 경우「P시노인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 대회의실, 사무실, 진료실, 심전도검사실, X-RAY실 또는 초음파실, 물리치료실, 접수실 및 약창고, 이·미용실, 수지침실, 식당,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시설설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P시의 경

우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의원 중심의 시설로 운영됨으로 조례에서 제시된 시설 설비기준은 대부분 노인의료를 위한 시설로 되어있다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과 설비가 설치 시군·구의 의도에 따라 구성됨으로 인하여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제공되어질 사업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과 설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사업이 정해진 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종합사회복지관 나형, 사회복지관으로 구분하여 설립하도록 하였다(종합사회복지관(가형)은 2,000㎡ 이상, 종합사회복지관(나형)은 1,000㎡~2,000㎡ 미만, 1,000㎡ 미만은 사회복지관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조직구성 수행하는 사업 등의 기준이 다르게 규정된다. 또한 시설설치에 있어서의 입지조건과 우선순위가 제시되어짐으로써 사회복지관 설치 시부터 사업에 대한 계획이 함께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설치 계획 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 별표4에 의거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배치율 등록장애인 수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00제곱미터 이내의 수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모두 시설을 설치할 때 입지조건과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며 그에 따라 시설 규모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노인복지회관 설립에 큰 시사점을 준다 즉, 노인복지회관도 설립 시부터 제공할 서비스와 사업에 대한 구상을 통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과 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6. 職員配置基準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회관의 직원배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시설의 장

나. 상담지도원 2인 이상: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다. 사무원

라. 물리치료사

마. 취사부

바. 관리인

이상의 기준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은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노인복지회관의 사업을 직원명이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직원이 7명 미만인 시설이 많이 있다. 이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직원배치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제시한 곳은 몇 개 지역에 그친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국고 보조없이 지방비로 보조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조례에서는 직원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4장에서 조직 및 종사자 규정에 직원의 배치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조직을 지원되는 종사자수에 따라 4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정원 31명 이상 복지관(1국 7팀)체제, 정원 25명 이상~30명 이내 복지관(1국 6팀), 정원 21~24명 이상 복지관(1국 5팀), 정원 20명 이하 복지관(1국 4팀)이며,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등 부대프로그램 및 독립 시설이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의 경우 사무국장 소속 하에 별도의 팀으로 편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조직의 규모를 직원수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직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내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설의 규모·조직, 사업내용 등이 별도로 구분·규정되어 있기보다는, 이 기준이 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시설의 궁극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내용과 그를 위한 시설과 설비 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이들의 조직구성

에 대한 규정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인력배치기준은 수행되어야 할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수준이며, 이들이 어떻게 조직화하여 움직일 것인가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7. 委託 關聯 事項

지자체 조례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을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탁기간은 대체적으로 2~3년으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노인복지회관은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직접운영을 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위탁과 관련한 기준 등이 명시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위탁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복지단체나 노인단체에 위탁한 이후에 평가제도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위탁운영한 곳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위탁을 연장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지자체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이 시설을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할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수탁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인복지회관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노인복지회관의 2~3년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어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맥 등을 이용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선정기준을 투명화하고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 8. 財政

대부분의 노인복지회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은 지자체의 지원수준에 따라서 수행되는 사업과 운영상태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의 의무가 없으므로 인해 노인복지회관은 건물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근거법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재정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제6장 경비의 부담에서 부지확보, 건립비, 기능보강비, 운영경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관의 운영경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보조는 없이 지방비 보조와 자부담으로 충당하며, 기타 지방은 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로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일반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고,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는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며, 지방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하며 이외에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관과 같이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국비지원금 없이 대부분이 지방비와 자체부담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시설별 수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노인복지회관도 일정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일정 부분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9. 其他事項

이상의 내용 외에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법적 내용에서는 지자체 조례에서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며, 그 외의 시설 설비의 임대, 이용료의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지역장애인 등이 포함된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복지관을 설립하는 준비단계를 갖는 것은 계속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적정한 성격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지역사회의 필요한 시설의 형태를 갖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설립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매년 중앙정부에서 장애인복지관운영지침을 시달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기능과 역할에 있어 기본적인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도 법적인 정비 외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현재의 노인복지회관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운영형태 등의 유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第2節 地域社會 老人福祉 關聯施設 現況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은 그 지역의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시설 자원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노인복지 관련자원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그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는 기본자료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관련시설로는 노인생활시설,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로 대표되며, 그 외의 취업알선기관과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사업을 기본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내의 노인복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

우 현재 노인 이용률이 높지 않으나 점차적으로 노인의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만성질환과 일상생활수행능력(ADL)제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장애인복지관도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자원이다

그러므로 이들 시설의 시·도별 분포와 노인인구 수와의 비교를 통해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도별로 노인복지 관련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전국의 노인생활시설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은 총 288개소로, 이 중 양로시설은 126개, 요양시설 114개, 전문요양시설 48개로 구성된다. 경기도에 52개소인 18.1%로 가장 많은 시설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북에 30개소, 서울에 25개소, 전북에 24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노인생활시설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은 비교적 시·도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노인의 15.9%가 서울에 거주하며 15.4%가 경기도, 4.0%가 인천에 거주하여 전국 노인의 35.3%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에 9.3%, 경남에 7.9%의 노인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시·도별로 노인생활시설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과 노인인구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노인인구와 생활시설 분포가 높은 경기도와는 달리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분포에 비해 생활시설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노인생활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또한 서울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아 시설을 설립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재가복지시설은 전국에 322개소가 있으며, 서울에 89개소, 부산 42개소, 경기도에 3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 부산, 경기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는 재가복지시설의 수가 20개소 미만으로, 노인생활시설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과는 달리 재가복지시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전국 재가복지시설의 27.6%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생활시설(8.7%)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으로 지역사회 이용시설인 재가복지시설의 서울집중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분포와 재가복지시설의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강원도를 제외한 8개도지역의 경우는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 재가복지시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노인인구수 대비 경기도 거주노인비율이 5.4%인 것에 반해 재가복지시설 설치비율은 10.6%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생활시설의 18.1%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시·도별로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은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비율이 14.0%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지역에도 10% 이상의 높은 노인인구비율이 나타나서 지역별 노인복지대책의 시급성을 반영한다. 재가복지시설에 있어서 시·도별 시설수의 차이는 매우 크며 특히 전체노인인구 중 지역내 노인인구의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시·도별 편차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표 2-1〉 노인복지 관련시설의 시·도별 설치현황

(단위: 개소, %, 명)

시·도	노인생활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65세 이상 노인수 (비율)	노인 인구 비율
	양로	요양	전문 요양	소계 (비율)	가정 봉사원 파견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소계 (비율)		
전국	126	114	48	288 (100.0)	143	142	37	322 (100.0)	3,346,821 (100.0)	7.5
서울	8	9	8	25 ( 8.7)	25	51	13	89 ( 27.6)	533,053 ( 15.9)	5.5
부산	7	6	3	16 ( 5.6)	18	22	2	42 ( 13.0)	223,275 ( 6.7)	6.3
대구	5	6	2	12 ( 4.2)	9	6	2	17 ( 5.3)	146,140 ( 4.4)	6.1
인천	3	6	3	12 ( 4.2)	8	5	1	14 ( 4.3)	135,455 ( 4.0)	5.6
광주	5	3	1	9 ( 3.1)	5	4	1	10 ( 3.1)	74,714 ( 2.2)	5.7
대전	2	3	3	8 ( 2.8)	6	2	2	10 ( 3.1)	74,089 ( 2.2)	5.6
울산	1	1	1	3 ( 1.0)	3	3	-	6 ( 1.9)	40,729 ( 1.2)	4.1
경기	23	24	5	52 ( 18.1)	17	13	4	34 ( 10.6)	513,865 ( 15.4)	5.9
강원	7	5	2	14 ( 4.9)	6	9	2	17 ( 5.3)	145,492 ( 4.3)	10.2
충북	5	6	1	12 ( 4.2)	2	2	-	4 ( 1.2)	140,471 ( 4.2)	10.0
충남	11	8	3	22 ( 7.6)	4	3	2	9 ( 2.8)	220,813 ( 6.6)	12.5
전북	12	9	3	24 ( 8.3)	11	3	1	15 ( 4.7)	209,710 ( 6.3)	11.5
전남	8	7	3	18 ( 6.3)	11	4	3	18 ( 5.6)	269,006 ( 8.0)	14.0
경북	14	11	5	30 ( 10.4)	5	10	2	17 ( 5.3)	311,926 ( 9.3)	12.0
경남	10	7	4	21 ( 7.3)	9	2	1	12 ( 3.7)	265,538 ( 7.9)	9.2
제주	5	3	1	9 ( 3.1)	4	3	1	8 ( 2.5)	42,545 ( 1.3)	8.5

〈표 2-1〉 계속

(단위: 개소, %, 명)

시·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취업 알선기관 <sup>b)</sup> (비율)	지역사회자원			65세 이상 노인수 (비율)	노인 인구 비율
	경로당	노인 복지 회관	노인 교육 기관 <sup>a)</sup>	소계 <sup>c)</sup> (비율)		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소계 (비율)		
전국	43,372	114	842	956 (100.0)	137 (100.0)	353	80	433 (100.0)	3,346,821 (100.0)	7.5
서울	2,364	20	249	269 ( 28.1)	33 ( 24.1)	90	27	117 ( 27.0)	533,053 ( 15.9)	5.5
부산	1,584	6	109	115 ( 12.0)	10 ( 7.3)	46	3	49 ( 11.3)	223,275 ( 6.7)	6.3
대구	1,066	4	32	36 ( 3.8)	7 ( 5.1)	25	1	26 ( 6.0)	146,140 ( 4.4)	6.1
인천	1,057	9	17	26 ( 2.7)	8 ( 5.8)	13	4	17 ( 3.9)	135,455 ( 4.0)	5.6
광주	828	5	11	16 ( 1.7)	5 ( 3.6)	19	2	21 ( 4.8)	74,714 ( 2.2)	5.7
대전	609	5	24	29 ( 3.0)	4 ( 2.9)	17	2	19 ( 4.4)	74,089 ( 2.2)	5.6
울산	525	2	11	13 ( 1.4)	5 ( 3.6)	4	1	5 ( 1.2)	40,729 ( 1.2)	4.1
경기	6,172	25	88	113 ( 11.8)	17 ( 12.4)	38	10	48 ( 11.1)	513,865 ( 15.4)	5.9
강원	1,934	3	43	16 ( 1.7)	7 ( 5.1)	12	2	14 ( 3.2)	145,492 ( 4.3)	10.2
충북	3,283	3	29	32 ( 3.3)	4 ( 2.9)	10	3	13 ( 3.0)	140,471 ( 4.2)	10.0
충남	4,287	5	42	47 ( 4.9)	7 ( 5.1)	13	6	19 ( 4.4)	220,813 ( 6.6)	12.5
전북	4,336	7	40	47 ( 4.9)	6 ( 4.4)	14	4	18 ( 4.2)	209,710 ( 6.3)	11.5
전남	5,052	9	42	51 ( 5.3)	5 ( 3.6)	14	5	19 ( 4.4)	269,006 ( 8.0)	14.0
경북	5,294	2	55	57 ( 5.9)	8 ( 5.8)	15	6	21 ( 4.8)	311,926 ( 9.3)	12.0
경남	4,670	4	36	40 ( 4.2)	9 ( 6.6)	20	1	21 ( 4.8)	265,538 ( 7.9)	9.2
제주	311	5	18	23 ( 2.4)	2 ( 1.5)	3	3	6 ( 1.4)	42,545 ( 1.3)	8.5

주: 1) 노인교육전담기관이란 노인교실 대한노인회 소속 천주교·교회의 노인교육기관을 의미함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소계는 노인복지회관과 노인교육전담기관의 합계임

3)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보건복지부 주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동부 주관 고려자인재은행, 서울시 주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 인력은행임

자료: a) 보건복지부, 『2002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2.

b) \_\_\_\_\_, 『2002년 사회복지관 현황』, 2002.

c) \_\_\_\_\_, 『2002년 장애인복지관 현황』, 2002.

d) 정경희 외, 『노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e)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2001.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43,372개가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동과 리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음으로 시·도별 분포를 비교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교육전담교육기관은 전국에 956개소가 있다. 이 중 28.1%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전국노인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이 15.9%인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재가복지시설과 같이 여가복지시설의 서울 집중도가 높다. 그 외 지역 여가복지시설의 비율은 부산 12.0%, 경기도 11.8%, 경북

5.9%, 전남 5.3%, 충남과 전북에 각각 4.9%로 나타났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도 재가복지시설의 분포와 같이 서울 부산에 편중되어 있고, 그외 지역은 여가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취업알선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37개소가 있으며, 이 시설 또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지역에 33개소, 경기도 17개소, 부산 10개소, 경남 9개소, 경북에 8개소 등으로 나타난다. 노인취업알선기관을 노인인구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서울은 월등히 높으며, 6개 광역시의 경우는 노인인구비율이 같거나 약간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사·도의 경우는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서비스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관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시설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353개의 사회복지관과 80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27.0%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에 11.3%, 경기도에 11.1%, 대구에 6.0%가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대개 4%내외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앞에서 살펴본 지역사회내의 이용시설과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서울지역이 월등히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며 부산과 대구 등과 같은 6대 광역시와 경기도가 다소 높으며 그 외 시·도 경우는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난다

노인관련 시설의 분포를 사·도별로 살펴본 결과, 다른 시설에 비해 노인생활시설(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시설인 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취업알선기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서울지역에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6대 광역시와 경기지역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그 외 시·도의 경우는 노인 이용시설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물론 아직까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역할과 위상은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언은 지역별 노인복지 관련시설의 분석을 비롯한 타 연구결과를 통해 본 보고서의 정책제언에서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第3章 外國의 老人利用施設 관련 制度

### 第1節 美國

#### 1. 定義 및 機能

미국은 1965년 노인법(Older Americans Act)의 제정 때부터 노인복지관(Senior Centers)의 건립과 발전에 관심을 두어왔다. 노인법은 다목적 노인복지관을 “노인에게 건강, 정신건강, 사회, 영양, 교육서비스와 여가활동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조직하고 전달하는 지역사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Senior Centers)의 73%는 다목적 노인복지관으로서 포괄적이고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심기관이 되고 있다(AoA, 2000).

각 주는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에 주가 지정한 거점기관의 수와 구심점(focal point)으로 간주되는 노인복지관의 수, 노인법이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수를 매년 보고하게 되어있다. 1997년 현재 주보고에 의하면 8,256개의 구심점이 있으며 그 중 75%는 다목적 노인복지관이다. 동시에 각 주는 10,419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이 중 58.4%인 6,082개소는 노인법에 의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노인청은 고령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Aging)를 통하여 다목적 노인복지관의 수준과 서비스의 조율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기준과 자기평가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개별 노인복지관은 개선과 확대 또는 새로운 방향 제시가 영역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의 기본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

---

7) 인증은 동료기관의 평가, 시설방문, 노인복지관협회(National Institute of Senior Centers: NISC)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준수여부, 노인복지관 인증협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노인복지관협회(NISC)에는 2,000개소(명)의 노인복지관과 전문가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다목적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그들의 사회적신체적,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시설로 노인들의 관심사를 확장하고 가능성을 일깨우고 재능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노인복지관은 노인집단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Lowy & Doolin, 1990). 즉 노인집단이 지역사회와 유리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목적 노인복지관은 일과 은퇴 독립성과 의존성, 건강함과 만성 질환 상태와 같은 양극사이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것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영양적 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노인에게 사회활동과 중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의 다목적 노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은 ① 식사와 영양프로그램, ② 건강, 피트니스, 건강유지 프로그램, ③ 여가기회 제공, ④ 교통서비스, ⑤ 예술프로그램, ⑥ 자원봉사활동, ⑦ 교육기회, ⑧ 취업지원, ⑨ 세대통합, ⑩ 사회·지역사회 활동, ⑪ 기타 특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AOA, 2002). 이러한 목적을 가진 다목적 노인복지관의 앞으로 과제는 2010년에는 베이붐 세대가 50세 이상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래의 노인인구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내일의 노인세대를 위하여 시간을 활용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제반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상호적인(interactive) 정보체계와 테크놀로지에 기초한 활동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목적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건강상태 증진, 건강불균형, 경제적 안정의 증대, 수발자의 스트레스 저하, 노인의 독립성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2. 歷史

노인을 위한 센터의 출발점은 1943년 뉴욕시에서 시작한 William Hodson Community Center이다. 단순한 회합장소로 출발했지만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생각이 전파되어 1947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 San Francisco Senior Center와 Menlo Park의 Little House 2곳이 문을 열게 되었

다. 이들은 뉴욕시의 William Hodson Community Center에 비하여 여가와 교육 프로그램에 더 초점을 두었으며 중산층 노인층을 주요 이용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또한 1951년에는 중기 이후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 라운지”가 커네티컷주의 Bridgetport에 세워졌다.

그후 30여 년 동안 욕구의 증대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수가 증대해왔다. 1961년에는 218개소가 1965년에는 404개소가, 1969년에는 754개소가 신축되어 총 1,058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었다. 고령위원회(NCOA)가 처음 회원록을 발간한 1966년에는 360개소가, 두 번째로 발간한 1970년에는 1,200개소가 등록되었다.

1970년도부터 1973년 기간 중 또다른 1,169개의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어 1974년의 고령위원회(NCOA)는 2,362개의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관협회의 회원록에 실렸다. 1977년도에 노인청은 3,600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다고 추정하였으며 1990년에는 9,000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었다. 1997년 현재는 10,419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다(Gelfand, 1993; Krout, 1987; Louis & Doolin, 1990; AoA, 2000).

〈표 3-1〉 연도별 노인복지관 수(미국)

연도	1943년	1951년	1961년	1969년	1974년	1977년	1990년	1997년
개소수	1	4	218	1,058	2,362	3,600	9,000	10,419

1959년에 처음으로 Ohio Association of Centers for Senior Citizens라는 주단위의 협회가 오하이오주에 성립되었다. 그 후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협회가 성립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주가 주 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협회를 갖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는 1962년에 처음 노인복지관에 관한 회의가 있었으며 그 이후 회의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1963년에는 전국노인복지관협회(National Institute of Senior Centers)가 NCOA의 회원조직으로 가입하였다(Louis & Doolin, 1990).

이러한 노인복지관의 확대에 상응하여 노인복지관의 법적 근거도 공고해졌다. 노인복지관의 법적 근거조항은 노인법(Old Americans Act)으로 제정 시부터 노인복지관의 근거규정이 법내용에 포함되었으며 1973년의 개정시에는 제5장 Section 501에 “다목적 노인복지관이라는 표현이 첨가되었다. 1975년까지는 그

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없었지만 이러한 명칭은 노인복지관을 독특한 시설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제5장은 노인복지관의 '획득, 개조, 리노베이션에 대한 재정지원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건립이나 운영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장이 복지관의 건립과 특정서비스의 개발과 전달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제5장은 기관에 대한 자원을 제3장은 운영경비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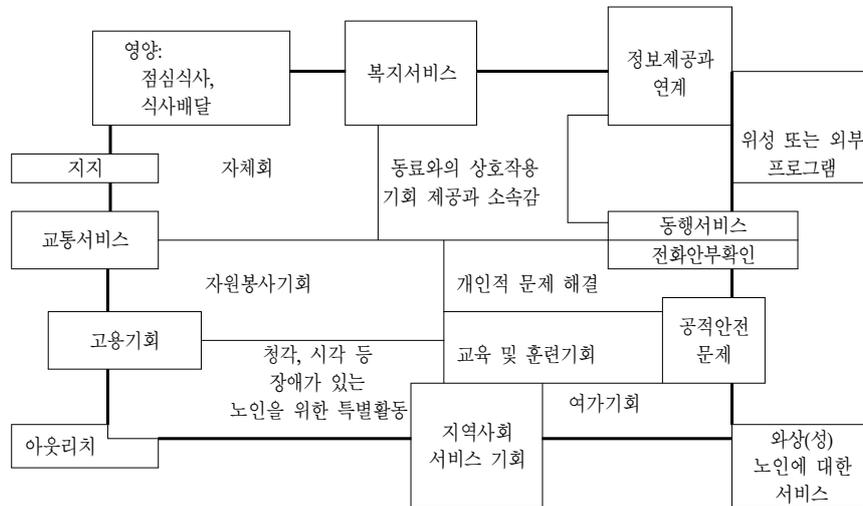
1978년의 노인법 개정시 제5장과 제3장의 내용이 제3장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제3장은 종합노인복지관의 획득, 개조, 리노베이션, 또는 건립과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담게 되었다 또한 1965년 제정된 지역의 공적 발전과 개발(Local Public Works Development and Investment Act)에 관한 제1장에 노인복지관으로 이용될 건물의 건축, 리노베이션, 보수 비용을 전액 재정지원할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1974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10장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많은 프로그램은 사회보장법 제10장에 의한 재정적 지원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제20장의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때로 연령 외에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밝히지 않고 있는 노인법과 상충을 일으키기도 한다 같은 해에 제정된 주택과 지역사회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은 지역사회서비스의 확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서로 노인복지관의 건축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3. 프로그램

노인복지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교육프로그램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여가·교육프로그램에는 수공예, 자연, 과학과 야외생활, 연극, 신체활동, 음악, 춤, 특별사회활동, 문예활동, 소풍, 취미활동, 초청강연, 강의, 영화, 강연회, 대담 등이 있다. 한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정보·상담·의뢰서비스, 주거·취업서비스,

보건프로그램, 보호서비스, 식사서비스, 법률·소득서비스, 우호방문서비스, 집안 일 보조서비스, 전화확인서비스, 수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교통제공서비스, 요양시설관련 활동 등이 있다

[그림 3-1] 다목적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개념틀 예시(인디애나 폴리스)



주: — 는 다목적회관 내의 활동 영역임 일부활동은 다목적회관 건물 안에서 진행되며 일부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다른 일부는 다목적회관 건물 내외에서 동시에 이루어짐

노인복지관의 대다수가 초기의 건강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여가교육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 허약하고 위협에 처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제기관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자조와 상호 지원, 허약한 노인과 건강한 노인의 유대강화 노인의 프로그램 계획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휴식서비스, 시각 및 청각장애 노인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주간보호시설 이용노인과의 연계 집에만 거주하는 노인이나 요양시설 거주노인에게 아웃리치(outreach), 가족을 위한 정보 및 교육, 지원 프

로그램 제공, 정신적인 의존상태 노인을 위한 서비스기회 확대 등을 활발히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한 노인들로의 서비스 대상 확대가 건강한 노인의 참여와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두 종류의 노인집단의 통합이 노인복지관의 목적 운영,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 4. 財政과 設備

노인복지관은 그 재원과 물리적 환경마련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약 절반 이상이 공적인 재원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약 1/5 이하가 전적으로 사적인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입구성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노인복지관의 수입구성 예시(Senior Center Inc, Charlottesville, Virginia)

항목	비율(%)	항목	비율(%)
기부	19	임대료	8
회비	16	현물급여	26
프로그램 이용료	10	소식지	4
특별기획	7	기타	5
그랜트(grant)	5		

자료: 2001 Annual Report of Senior Center Inc, Charlottesville, Virginia.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건물 또한 매우 다양하여 약 1/4 정도는 자신의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5은 교회나 종교집회장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1/3은 지역 또는 군정부의 여가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약 10%는 비영리단체의 지역회관을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10%는 주택청건물을, 5%는 사적인 영리공간을 활용하고 있다(Lowy & Doolin, 1990). 노인복지관 건물은 대규모 건물로부터 중간규모, 2 또는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노인복지관 건물의 일부는 계획한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계획한 것과는 다른 기능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

다. 또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미비가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이용대상자로 확대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즉, 목표 집단의 생활지역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적절한 주차장, 야외활동공간, 장애노인을 위한 접근성 강화 등이 노인복지관의 물리적 환경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상담공간, 식사공간, 직원과 물건수납을 위한 공간, 다양한 크기의 활동공간 등이 내부환경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 5. 職員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직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노인복지관의 직원규모는 작은 편이다 Lowy & Doolin(1990)에 의하면 다목적 노인복지관의 약 1/4은 유급직원이 전혀 없고 1/3은 한 명의 전담직원이 있으며, 1/5만이 4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주 Charlottesville시의 Senior Center의 경우 2000년 현재 관장을 포함하여 소식지 담당, 안내 담당, 행정담당, 서비스 개발담당, 여행담당, 자원봉사 담당자 등 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많은 노인복지관은 자원봉사자가 다른 기관의 직원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절반 이상의 노인복지관은 그 지역의 지부의 일부로 직원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실제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겠다 다른 기관과 직원을 공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정보제공과 연계 예술과 공예, 여가프로그램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을 뿐 교육프로그램, 식사배달, 건강·법·취업, 도서서비스 등과 같이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회원 포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6. 類型<sup>8)</sup>

노인복지관의 수만큼 운영과 지향성은 매우 다양하다 Taiezt(1976)은 노인복지관의 유형을 노인들의 욕구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주로 저소득층과 소외된 노인들을 주요 이용대상자로 설정하는 사회사업기관 모델(Social Agency Model)과 대체적으로 중산층인 자원봉사나 지역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모형(Voluntary Organization Model)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Fowler(1974)는 노인복지관을 활동유형 운영형태, 서비스의 기원이라는 3가지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활동은 일차적인 서비스 활동, 개별적 서비스와 케이스워크, 또는 이 세 가지의 조합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운영형태로는 모든 것이 한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중식과 다양한 이웃 시설에 위치해있는 분권형 이 둘의 혼합형, 연계에 의한 복합적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의 기원별로는 노인복지관의 직원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노인복지관 직원과 지역사회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 노인복지관의 직원은 연계만 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고령위원회(NCOA)는 노인복지관의 크기와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목적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을 위한 클럽 노인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국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다 이 때 센터와 클럽의 차이는 서비스의 범위, 물리적 공간의 영구성 무보수 직원의 수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Cohen(1972)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① 양호한 시설과 용이한 인지에 기초한 지역사회 가시성(visibility), ② 서비스의 중심지, ③ 관심과 욕구충족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 수행, ④ 지역사회와의 연계역할 ⑤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클럽과 구분된다

8) Gelfand, 1993의 pp.156~157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 7. 政策的 이슈<sup>9)</sup>

미국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제공해야할 서비스의 방향과 일차적인 서비스 대상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이 정책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노인복지관의 출발시 목표였던 교육·여가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기 위하여 확장된 영역인 치료(treatment), 즉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둘 것인가 만일 치료(treatment)에 초점을 둔다면 다른 종류의 사회·보건서비스 기관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대상으로 누구를 초점에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은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건강한 노인이 주축이 되어왔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개입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관심증대로 인하여 저소득층 노인과 소수집단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중산층 중심의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노인·소수 집단 노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어떠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의 변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등록(membership) 자체가 서비스 대상자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노인복지관이 사회시설(social utility)에서 서비스제공시설(case-service facility)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복지관의 일차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이다 1973년 이후부터 지역 에이전시가 노인관련 네트워크의 초석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제공의 상징이 되어 왔다. 주정부와 지역 에이전시의 성숙에 따라서 에이전시와 노인복지관의 역할정립이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은 지역 에이전시를 계획과 행정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9) L. Lowy and J. Doolin(1990)의 논의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전달의 중심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회에는 노인복지와 관련 하여 1) 재원과 계획을 책임지는 지역 에이전시와 2)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장소로서의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는 2개의 기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정립함에 있어서 노인의 제특성과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점들이다

## 第2節 日本

### 1. 「老人福祉센터」의 概要

노인복지센터는 일본 노인복지법 제40조 7항(노인복지센터)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이며 지역의 고령자들에 대한 각종 상담서비스를 계승하고 건강증진, 사회적 교양의 향상(생애학습 프로그램),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등 편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다 그 형태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 기능을 가진 A형, 대형으로 보건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특A형, A형의 기능을 보완하는 소형의 B형 노인복지센터 등 3유형이 있다.

#### 가. 목적

지역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나아가 건강의 증진·교양의 향상 및 여가를 위한 편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결국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종류(유형)

특A형, A형, B형이 있으며, 설치된 장소,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결정한다

다. 운영주체

특A형은 시(구)정촌에서 직접 그 외는 지방공공단체 혹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이용료

원칙으로는 무료이다 단, 필요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해당이용에 직접 필요한 경비이하로 정한다 지방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 규정하고, 그 외의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그에 따른다.

2. 老人福祉센터의 類型別 運營指針

가. 특A형 노인복지센터: 2000년 현재 269개소가 운영

1) 사업

가) 각종상담

(1) 생활상담: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등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적절한 원조 및 지도

(2) 건강상담: 노인의 질병의 예방 치료에 관하여 상담에 응하고, 적절한 원조 및 지도

나) 건강증진에 관한 지도 노인의 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해 영양 운동 등의 지도

다) 취업 등의 지도 노인의 생업 및 취업 등에 관한 지도를 행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

라)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노인의 후퇴기능의 회복훈련을 실시

마)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 및 여가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을 행하며, 나아가 이를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바) 노인클럽에 대한 원조 등 노인클럽의 운영에 관해 원조를 실시하며 노인에 대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

## 2) 건물 등

### 가) 건물의 구조, 규모

(1) 특A형 센터의 건물구조는 이용자의 편리 방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그 규모는 800m<sup>2</sup> 이상으로 한다.

(2) 특A형 센터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단,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과 설비의 일부를 공용하는 경우는 당해 시설의 운영상 지장이 생기지 않는 경우로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소장실, 사무실, 생활상담실, 진찰실, 검사실, 영양지도실, 보건자료실, 기능회복훈련실, 집회 및 운동지도실, 교양오락실, 도서실, 욕실, 화장실

### 나) 입지조건

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하며 나아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직원(종사자)

특A형 센터의 경우, 시설장, 상담원, 지도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단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의 직원과 겸무를 할 수 있다.

4) 관련기관과의 연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관계부서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밀접하게 한다

5) 기타사항

욕실의 경우, 「공중욕장법(公衆浴場法)」(1968년 법률제 139호)제2조 제1항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A형 노인복지센터: 2000년 현재 1,624개소 운영

1) 사업

가) 각종상담: 생활상담, 건강상담

나) 취업 등의 지도

다)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라) 교양강좌 등의 실시

마) 노인클럽 등에 대한 원조 등

2) 건물 등

가) 건물의 구조, 규모

(1) A형 센터의 건물 구조는 이용자의 편리 방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규모는 495.5㎡ 이상으로 한다.

(2) A형 센터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설비의 일부를 공동사용할 경우 해당시설의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소장실, 사무실, 생활상담실, 건강상담실, 기능회복훈련실, 집회실, 교양오락실, 도서실, 욕실, 화장실

나) 입지조건

노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하며 사업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직원(종사자)

시설장, 상담·지도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복지시설 등의 직원과 겸직할 수 있다

4) 기타

욕실의 경우에는 「공중욕장법(公衆浴場法)」(1968년 법률제 139호)제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B형노인복지센터: 2000년 현재 378개소가 운영

1) 사업

B형 센터는 A형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각종상담: 생활상담, 건강상담

나) 교양강좌의 실시

다) 노인클럽에 대한 원조

## 2) 건물 등

### 가) 건물의 구조, 규모

- (1) B형 센터의 건물구조는 이용자의 편리, 방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규모는 165㎡ 이상 495.5㎡ 미만으로 한다.
- (2) B형 센터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설비의 일부를 공동사용할 경우 해당시설의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 관리인실, 생활상담실, 건강상담실, 교양오락실, 집회실, 화장실

### 나) 입지조건

A형 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노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하며 나아가 사업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직원(종사자)

B형 센터에는 건물관리를 위한 직원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복지시설 등의 직원과 겸직할 수 있다

## 4) A형 노인복지센터와의 연계

B형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형센터의 직원 등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 第3節 外國 制度의 示唆點

미국과 일본에서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검토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인복지관 운영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복지관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운영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를 통해 노인복지관에 대한 평가들의 개발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수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노인복지관에 대한 평가들을 개발하여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파악 정비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는 다른 노인복지회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관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는 물리적 기반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편재해있는 노인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복지관에는 서비스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노인복지의 지역사회 준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건강한 노인 중심의 노인복지관과 신체적정신적인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중 어떤 측면에서 더 관심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한 서비스 연계와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 중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기존의 노인대상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강조점을 둘 것인가 보다는 이러한 이슈들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해결과제의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비스제공과 함께 서비스의 연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건강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관의 규모는 위치하고 있는 사회의 규모와 관련자원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모별 유형별로 적합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과 그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물적·인적 자원의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한 방안일 수 있다

## 第4章 老人福社會館의 運營實態 分析

본 장에서는 전국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과 직원에 대한 우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114개 시설 중 조사에 응답하고 자료이용이 가능한 노인복지회관 102개 기관과 그 직원조사에 대한 조사내용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sup>10)</sup>

### 第1節 一般施設現況

#### 1. 一般特性

앞장의 법적 근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식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사결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설명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으로 명명하는 시설이 45.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28.4%, 노인종합복지회관 9.8%, 노인복지관 8.8%, 기타 7.8%이다. 기타 명칭으로는 복지센터, 대한노인회지회,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경로·여성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94.4%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6대 광역시와 9대 도지역은 각각 노인복지회관이 53.6%와 55.4%로 서울시와 지방간의 시설명칭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4-1 참조).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설립형태는 위탁형(대지, 건축비의 정부지원 또는 공공 건물)이 72.5%이며, 기부채납형은 5.9%, 재단설립형은 3.9%, 기타(시·군·구 직접 운영) 16.7%로 전체의 3/4정도가 위탁형 설립기관이다.

시설운영형태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의한 위탁운영이 74.5%로 전체의

10) 보다 상세한 조사방법은 제1장 제2절의 연구 방법 및 내용 참조

3/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군·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17.6%, 법인·재단 등의 자체운영인 기타시설이 7.8%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는 94.4%가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6대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은 약 70%정도이지만 이 중 시·도 위탁의 비율이 서울시는 66.7%인데 반해 광역시와 도지역은 20% 미만이다. 위탁주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관 운영 위탁금의 지원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복지관의 운영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탁주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도지역은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25.0%인데, 재정지원의 어려움 또는 위탁기관의 선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직접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운영차원에서 질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탁운영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하인 시설이 43.1%이며, 3년 이상이 5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85.7%)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나, 광역시 및 도지역은 절반 이상이 위탁계약기간이 2년 이하로 시설운영에 안정성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시설위치는 주택아파트 혼합지역이 40.8%로 가장 많으며, 주택밀집지역은 26.5%, 아파트지역 9.2% 등으로 대체로 접근하기 쉬운 주택·아파트지역에 76.5%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지역은 대도시에 비하여 주택·아파트지역 이외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32.7%)이 많은 편이다.

시설운영 시작년도를 보면 1999년 이후에 운영을 시작한 시설이 47.1%로 전체의 절반정도이며, 1997~1998년이 23.5%, 1996년 이전이 29.4% 등이다. 즉 전체시설의 약 70%정도가 1997년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개정된 이후에 운영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지규모는 2,000㎡ 이상이 42.4%로 가장 많으며, 1,000㎡ 미만 20.2%, 1,000㎡~1,500㎡ 미만과 1,500㎡~2,000㎡ 미만이 각각 18.2%와 19.2%이다. 시설규모<sup>11)</sup>는 2,000㎡ 이상이 33.3%로 가장 많으며, 1,500㎡~2,000㎡ 미만이 20.6%, 1,000~1,500㎡ 미만이 24.5%, 1,000㎡ 미만이 21.6%이다. 대지규모는 2,000㎡

11) 사회복지관은 시설규모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즉, 시설규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가형(2,000㎡ 이상)과 나형(1,000㎡~2,000㎡), 사회복지관(500㎡~1,000㎡)으로 분류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2002』).

이상의 시설이 광역시와 도지역에 비하여 서울시가 더 적는데 반해시설규모는 2,000㎡ 이상의 시설이 서울시는 83.3%, 광역시 지역은 28.6%, 도지역은 19.6% 등으로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노인복지회관이 타지역에 비하여 시설규모가 크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기준인 연면적1,000㎡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21.6%에 이르고 있는데, 도지역의 경우는 약 1/3정도가 1,000㎡ 미만의 시설이다

이상의 일반시설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기타지방(6대 광역시 및 9개 도지역)의 지역구분에 따라 시설명칭 위탁주체, 시설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변수들간에는 서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일반시설 현황

(단위: %)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94.4	21.4	10.7	28.4
노인복지관	5.6	10.7	8.9	8.8
노인종합복지회관	-	10.7	12.5	9.8
노인복지회관	-	53.6	55.4	45.1
기타 <sup>1)</sup>	-	3.6	12.5	7.8
시설설립형태				
재단설립형	5.6	3.6	3.6	3.9
기부채납형	-	14.3	3.6	5.9
위탁형	88.9	71.4	67.9	72.5
임대형	5.6	-	-	1.0
기타	-	10.7	25.0	16.7
시설운영형태				
직접운영(시·군·구 직영)	-	14.3	25.0	17.6
위탁운영	94.4	71.4	69.6	74.5
(시·도)	(66.7)	(17.9)	(5.4)	(19.6)
(시·군·구)	(27.8)	(53.6)	(64.3)	(54.9)
기타(법인 자체운영)	5.6	14.3	5.4	7.8
계	100.0	100.0	100.0	100.0
(N)	(18)	(28)	(56)	(102)

<표 4-1> 계속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지역내 시설위치 <sup>2)</sup>				
주택밀집지역	22.2	28.6	26.9	26.5
아파트지역	16.7	10.7	5.8	9.2
주택과 아파트 혼합지역	44.4	50.0	34.6	40.8
상가/사무실지역	5.6	-	9.6	6.1
기타	11.1	10.7	23.1	17.3
시설운영 시작년도 <sup>3)</sup>				
1996년 이전	22.2	28.6	32.1	29.4
1997~1998년	22.2	28.6	21.4	23.5
1999년 이후	55.6	42.9	46.4	47.1
대지규모 <sup>4)</sup>				
1,000㎡ 미만	5.6	25.9	22.2	20.2
1,000㎡~1,500㎡ 미만	44.4	14.8	11.1	18.2
1,500㎡~2,000㎡ 미만	22.2	14.8	20.4	19.2
2,000㎡ 이상	27.8	44.4	46.3	42.4
(평균면적 m <sup>2</sup> )	(1,673)	(2,386)	(3,123)	(2,658)
시설규모				
1,000㎡ 미만	5.6	10.7	32.1	21.6
1,000㎡~1,500㎡ 미만	-	39.3	25.0	24.5
1,500㎡~2,000㎡ 미만	11.1	21.4	23.2	20.6
2,000㎡ 이상	83.3	28.6	19.6	33.3
(평균면적 m <sup>2</sup> )	(2,524)	(2,037)	(1,614)	(1,891)
계	100.0	100.0	100.0	100.0
(N)	(18)	(28)	(56)	(102)
위탁계약기간 <sup>5)</sup>				
2년 이하	14.3	52.9	51.9	43.1
3년 이상	85.7	47.1	48.1	56.9
계	100.0	100.0	100.0	100.0
(N)	(14)	(17)	(27)	(58)

주: 1) 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여성(노인·아동)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등  
 2) 무응답 4개소 제외  
 3) 2002년 이후 시설운영이 시작된 2개소 포함.  
 4) 무응답 3개소 제외  
 5) 위탁운영중인 76개소만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무응답 18개소 제외함

## 2. 施設空間

<표 4-2>에서 노인복지회관 내 개별시설공간의 확보현황을 법적기준시설에 의한 공간과 이외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법적기준시설로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는 기관이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당확보율은 93.1%, 식당은 89.2%, 상담실 및 교육실은 각각 78.4%, 물리치료실 보유율은 79.4%이다. 이들 개별시설공간 확보현황은 프로그램 실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식당,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은 모든 시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당, 교육실, 사무실 등의 보유율은 94.4%이다. 광역시와 도지역은 개별시설공간의 확보율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광역시의 경우 교육실(85.7%)과 물리치료실(82.1%)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도지역의 경우 식당(89.3%) 확보율이 더 높은 편이다. 이는 그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들의 서비스요구 수준이나 전문직종의 직원 유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법적기준시설 이외의 시설공간 현황을 보면 복리후생시설인 이·미용실과 목욕탕의 보유율이 각각 74.5%, 69.6%이며, 취미·여가 시설인 장기바둑실과 서예실의 보유율이 각각 71.6%와 68.6%이다. 사회교육실 중 별도의 컴퓨터실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 61.8%이며,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간보호실은 48.0%, 관장실 67.6%, 그리고 자원봉사자실 50.0% 등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에 비하여 서울시는 컴퓨터실과 관장실은 모든 시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실, 주간보호실, 서예실, 이·미용실 등의 보유율은 9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으로 주간보호사업과 정보화 교육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인복지회관내 개별시설공간의 확보현황에서도 법적기준시설에 의한 공간과 이외의 공간 모두 서울시의 경우 확보율이 대체로 높으며 6대 광역시와 도지역은 비슷한 수준이다.

<표 4-2>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시설공간별 확보율

(단위: %)

사업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b>법적기준시설</b>				
사무실	94.4	100.0	92.9	95.1
식당	100.0	82.1	89.3	89.2
상담실	100.0	71.4	75.0	78.4
강당	94.4	92.9	92.9	93.1
교육실	94.4	85.7	69.6	78.4
물리치료실	100.0	82.1	71.4	79.4
<b>법적기준시설 이외 공간</b>				
소강당	38.9	46.4	33.9	38.2
관장실	100.0	75.0	53.6	67.6
자원봉사자실	83.3	57.1	35.7	50.0
간호사실	94.4	17.9	17.9	31.4
경로의원	5.6	25.0	17.9	17.6
공동작업장	66.7	28.6	35.7	39.2
취업센터 사무실	27.8	7.1	10.7	12.7
주간보호실	94.4	57.1	28.6	48.0
단기보호실	11.1	7.1	7.1	7.8
컴퓨터실	100.0	57.1	51.8	61.8
탁구실	83.3	50.0	35.7	48.0
장기바둑실	88.9	85.7	58.9	71.6
독서실	50.0	32.1	28.6	33.3
서예실	94.4	71.4	58.9	68.6
종교활동실	5.6	7.1	7.1	6.9
세탁실	77.8	35.7	32.1	41.2
목욕탕	88.9	75.0	60.7	69.6
이·미용실	94.4	64.3	73.2	74.5
경로당	-	7.1	12.5	8.8
대한노인회 사무실	-	53.6	55.4	45.1
기계실	88.9	96.4	76.8	84.3
창고	88.9	92.9	80.4	85.3
기타교육실	33.3	3.6	1.8	7.8
기타여가시설	11.1	17.9	7.1	10.8
기타 체육관련시설	27.8	14.3	21.4	20.6
기타 보건·의료관련시설	16.7	3.6	1.8	4.9
기타 시설	27.8	10.7	26.8	22.5
(대상시설수)	( 18)	( 28)	( 56)	(102)

<부표 1>에서 시설명칭에 따른 시설공간 확보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경우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 비하여 시설확보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법적기준시설공간의 보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외의 시설공간인 복리후생시설인 이·미용실과 목욕탕, 취미·여가 시설인 장기바둑실과 서예실 사회교육실인 컴퓨터실,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간보호실은 90%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 시설공간 확보율을 보면 2,000㎡ 이상의 시설의 경우 법적기준 시설공간의 확보율은 각각 90% 이상이며, 그 이외의 서예실(97.1%), 목욕탕 및 이·미용실(91.2%), 장기바둑실(88.2%), 관장실(82.4%), 탁구실(79.4%), 주간보호실 및 컴퓨터실(76.5%)의 시설공간 확보율도 높은 편이다 시설규모가 클수록 개별시설공간 보유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사무실의 경우 시설규모가 적을수록 공간확보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시설공간의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의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부표 2 참조).

노인복지회관 내에 별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중복하여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고 응답(64.7%)한 시설의 경우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중복사용 공간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선 강당을 교육실(30.8%), 소강당(12.3%), 기타(9.2%)로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소강당을 교육실(9.2%), 기타(3.1%)로 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육실을 기타시설로 활용하는 시설이 12.3%로 나타났는데, 사회교육 또는 여가 취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의 부족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표 4-3 참조).

〈표 4-3〉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중복사용 시설공간

(단위: %)

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당 + 소강당	12.3	-	1.5
강당 + 교육실	30.8	3.1	-
강당 + 기타	9.2	6.2	-
소강당 + 교육실	9.2	-	1.5
소강당 + 기타	3.1	7.7	3.1
교육실 + 기타	4.6	12.3	4.6
상담실 + 독서실	1.5	3.1	7.6
사무실 + 기타	4.6	3.1	1.5
기타 중복 사용시설	24.6	29.2	13.8
없음	-	35.3	66.4
계	100.0	100.0	100.0
(N)	(65)	(65)	(65)

주: 중복 사용하는 시설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65개소만 대상으로 분석함.

한편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체적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시설이 77.2%이며, 적당하다 15.8%, 충분하다 6.9%로 현재의 시설규모에 대해 만족하는 시설은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특성별로는 대도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규모가 클수록 부족하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설공간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4-4 참조).

〈표 4-4〉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상 전체적 공간의 충분성

구분	(단위: %)			계 (N)
	충분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전체 <sup>1)</sup>	6.9	15.8	77.2	100.0 (101)
지역				
서울특별시	-	5.6	94.4	100.0 ( 18)
6대 광역시	10.7	7.1	82.1	100.0 ( 28)
9개 도지역	7.3	23.6	69.1	100.0 ( 55)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	6.9	93.1	100.0 ( 29)
노인복지관	11.1	44.4	44.4	100.0 ( 9)
노인종합복지회관	10.0	10.0	80.0	100.0 ( 10)
노인복지회관	8.9	15.6	75.6	100.0 ( 45)
기타	12.5	25.0	62.5	100.0 ( 8)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5.0	10.0	85.0	100.0 ( 20)
시·군·구 위탁운영	5.5	14.5	80.0	100.0 ( 55)
기타(시·군·구 직영)	11.5	23.1	65.4	100.0 ( 26)
시설규모				
1,000㎡ 미만	4.5	13.6	81.8	100.0 ( 22)
1,000㎡ ~ 1,500㎡ 미만	12.5	20.8	66.7	100.0 ( 24)
1,500㎡ ~ 2,000㎡ 미만	4.8	19.0	76.2	100.0 ( 21)
2,000㎡ 이상	5.9	11.8	82.4	100.0 ( 34)

주: 1) 무응답 1개소 제외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상 전체적 공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시설에 대하여 어떤 시설공간이 부족한지를 질문한 결과 첫 번째 부족한 시설공간으로는 교육실(48.0%), 강당(14.7%), 식당(5.3%) 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 부족공간으로도 교육실(14.7%), 세 번째는 사무실(9.3%)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4-5 참조). 즉 현재 가장 부족한 시설 공간으로는 교양강좌 등을 실시 할 수 있는 교육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프로그램 운영상 전체적 공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시설공간  
(단위: %)

사업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적기준시설			
사무실	1.3	1.3	9.3
식당	5.3	5.3	2.7
상담실	-	9.3	1.3
강당	14.7	8.0	4.0
소강당	2.7	4.0	4.0
교육실	48.0	14.7	8.0
물리치료실	2.7	-	1.3
법적기준시설 이외 공간			
관장실	-	-	-
자원봉사자실	-	4.0	5.3
간호실	1.3	-	-
경로의원	-	1.3	-
공동작업장	1.3	-	5.3
취업센터 사무실	-	-	-
주간보호실	4.0	6.7	4.0
단기보호실	-	-	-
컴퓨터실	1.3	4.0	1.3
탁구실	4.0	6.7	4.0
장기바둑실	-	1.3	1.3
독서실	-	1.3	2.7
서예실	1.3	4.0	1.3
종교활동실	-	-	-
세탁실	-	-	1.3
목욕탕	-	2.7	-
이·미용실	-	-	-
경로당	-	-	-
대한노인회 사무실	-	-	-
기계실	-	-	-
창고	-	-	2.7
기타교육실	2.7	1.3	1.3
기타여가시설	1.3	4.0	2.7
기타 체육관련시설	6.7	5.3	8.0
기타 보건·의료관련시설	-	1.3	1.3
기타 시설	1.3	9.3	12.0
없음	-	4.0	14.7
계	100.0	100.0	100.0
(N)	(75)	(75)	(75)

주: 시설공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75개소만 분석대상으로 분석함.

## 第2節 利用老人現況

<표 4-6>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연평균 등록인원을 보면 500명 미만의 시설이 30.7%이며, 1,000~1,999명인 시설이 26.1%, 500~999명인 시설이 11.4%, 5,000명 이상의 시설이 10.2%이며, 평균 등록인원은 1,84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경우 5,0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27.8%로 가장 많으나, 광역시는 1,000~1,999명의 시설이 39.1%, 도지역은 500명 미만의 시설이 42.6%로 이용노인의 현황은 대도시일수록 등록인원 노인수가 더 많은 편이다

<표 4-6>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연평균 등록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500명 미만	500~ 999명	1,000~ 1,999명	2,000~ 2,999명	3,000~ 3,999명	4,000~ 4,999명	5,000명 이상	계	(N) <sup>1)</sup>	평균 <sup>2)</sup>
전체	30.7	11.4	26.1	9.1	4.5	8.0	10.2	100.0	(88)	1,848
지역										
서울특별시	-	-	22.2	22.2	5.6	22.2	27.8	100.0	(18)	3,711
6대 광역시	30.4	8.7	39.1	13.0	4.3	-	4.3	100.0	(23)	1,517
9개 도지역	42.6	17.0	21.3	2.1	4.3	6.4	6.4	100.0	(47)	1,284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7.1	-	25.0	17.9	3.6	21.4	25.0	100.0	(28)	3,380
노인복지관	33.3	16.7	50.0	-	-	-	-	100.0	(6)	986
노인종합복지회관	30.3	20.0	30.0	10.0	10.0	-	-	100.0	(10)	1,295
노인복지회관	45.9	16.2	21.6	5.4	5.4	2.7	2.7	100.0	(37)	1,102
기타	42.9	14.3	28.6	-	-	-	14.3	100.0	(7)	1,411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5.6	-	16.7	33.3	5.6	16.7	22.2	100.0	(18)	3,346
시·군·구 위탁운영	32.0	10.0	36.0	4.0	2.0	8.0	8.0	100.0	(50)	1,596
기타(시·군·구 직영)	50.0	25.0	10.0	-	10.0	-	5.0	100.0	(20)	1,117
시설규모										
1,000㎡ 미만	45.0	20.0	20.0	-	5.0	10.0	-	100.0	(20)	1,093
1,000㎡~1,500㎡ 미만	50.0	5.0	30.0	10.0	5.0	-	-	100.0	(20)	1,024
1,500㎡~2,000㎡ 미만	16.7	11.1	33.3	11.1	5.6	5.6	16.7	100.0	(18)	2,347
2,000㎡ 이상	16.7	10.0	23.3	13.3	3.3	13.3	20.0	100.0	(30)	2,627

주: 1) 무응답 시설 14개소 제외

2) 최다 이용시설 1개소의 경우 등록인원이 10,000명 이상으로 응답하여 평균 등록인원 계산시 제외하였음.

시설명칭별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연평균 등록인원이 3,380명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1,295명, 노인복지회관의 1,102명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등록노인이 더 많다. 한편 시설운영형태는 시·도 위탁운영 시설이, 시설규모는 클수록 등록노인의 수가 더 많다.

<표 4-7>에서 노인복지회관 등록노인의 평균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는 39.6%, 여자는 60.4%로 여자노인의 등록 비율이 더 높다. 이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65세 인구 중 남자(38.3%), 여자(61.8%)의 비율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교육수준별 분포는 초졸 이하가 56.4%이며, 중졸 24.5%, 고졸 이상 18.8% 등이다. 이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노인복지회관의 등록노인의 경우 중졸 및 고졸 이상의 고학력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이다.

제특성별 등록 노인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일수록 여자 노인이 더 많으며, 시설운영형태에서 시·도 위탁의 경우 여자노인의 비율이 더 높으나, 시설명칭과 시설규모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에서는 대도시일수록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도 위탁운영일수록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더 많은 편이다.

<표 4-8>에서 연령별 평균비율은 64세 이하는 16.8%이며, 65~69세가 32.9%, 70~74세 25.5%, 75~79세 16.9%, 80세 이상은 8.0% 등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64세 이하와 8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적은 반면 65~79세 연령층의 비율은 더 높은 편이다. 이는 전기 고령층일수록 건강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향이 있어 여가 프로그램의 욕구와 참여가 높기 때문이다. 특성별로는 서울시는 64세 이하(21.4%)의 비율이 높고, 광역시와 도지역의 경우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도 위탁운영 시설, 2,000㎡ 이상의 시설이 64세 이하의 비율이 더 많은 편이다.

〈표 4-7〉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등록노인의 성별·교육수준별 비율

(단위: %)

구분	성별			교육수준				
	남자	여자	(대상 시설수)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이상	기타	(대상 시설수)
전체	39.6	60.4	(86)	56.3	24.5	18.7	0.5	(74)
지역								
서울특별시	34.8	65.2	(18)	52.2	18.2	28.3	1.4	(17)
6대 광역시	36.6	63.4	(21)	51.1	27.8	21.2	-	(17)
9개 도지역	42.8	57.2	(47)	60.3	25.7	13.6	0.4	(40)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38.0	62.0	(27)	49.2	23.0	26.2	1.6	(24)
노인복지관	33.3	66.7	( 6)	64.3	22.6	13.3	0.3	( 3)
노인종합복지회관	39.8	60.2	(10)	52.5	22.3	25.1	-	(10)
노인복지회관	41.0	59.0	(36)	62.1	24.7	13.3	-	(30)
기타	43.9	56.1	( 7)	57.8	32.8	9.7	-	( 7)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38.0	62.0	(18)	51.9	18.3	28.5	1.4	(17)
시·군·구 위탁운영	39.3	60.7	(48)	58.2	24.0	17.5	0.4	(38)
기타(시·군·구 직영)	41.7	58.3	(20)	56.5	31.0	12.5	-	(19)
시설규모								
1,000㎡ 미만	43.7	56.3	(20)	66.7	19.1	14.2	0.1	(17)
1,000㎡ ~ 1,500㎡ 미만	38.5	61.5	(19)	62.1	21.0	17.0	-	(17)
1,500㎡ ~ 2,000㎡ 미만	36.8	63.2	(18)	54.0	32.0	14.0	-	(14)
2,000㎡ 이상	39.2	60.8	(29)	47.0	26.2	25.3	1.5	(26)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sup>1)</sup>	38.2	61.8	-	77.8	8.4	13.4	0.0	-

주: 1)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표 4-8>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등록노인의 연령별 비율

(단위: %)

구분	64세 이하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대상시설수)
전체	16.8	32.9	25.5	16.9	8.0	(78)
지역						
서울특별시	21.3	31.1	25.9	13.6	8.1	(17)
6대 광역시	20.1	33.6	25.0	15.5	5.8	(19)
9개 도지역	13.5	33.3	25.6	18.8	8.8	(42)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20.8	32.3	26.3	12.9	7.7	(24)
노인복지관	14.3	29.1	27.0	18.8	11.2	( 6)
노인종합복지회관	21.7	26.5	25.2	19.0	8.2	(10)
노인복지회관	15.0	34.0	24.7	19.0	7.3	(31)
기타	6.7	42.5	25.8	16.7	8.4	( 7)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21.1	31.9	24.1	16.2	6.8	(17)
시·군·구 위탁운영	16.1	29.5	26.1	18.7	9.8	(42)
기타(시·군·구 직영)	14.7	41.5	25.5	13.6	4.9	(19)
시설규모						
1,000㎡ 미만	13.3	34.0	29.5	15.8	7.5	(17)
1,000㎡~1,500㎡ 미만	14.9	34.9	23.1	18.9	8.1	(18)
1,500㎡~2,000㎡ 미만	9.2	26.9	28.3	23.6	12.1	(16)
2,000㎡ 이상	24.8	34.4	23.0	12.2	5.7	(27)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sup>1)</sup>	34.7	26.7	17.8	11.6	9.2	-

주: 1)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표 4-9>에서 노인복지회관의 1일 평균이용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200~399명 인 시설이 29.3%로 가장 많으며, 200명 미만 27.2%, 800명 이상 16.3%, 400~599명 15.2%, 600~799명 12.0% 등으로 1일 평균 이용노인의 수는 42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1일 이용노인이 800명 이상인 시설이 55.6%로 평균 이용노인수는 849명이며, 광역시는 200~399명이 32.0%로 평균 413명, 도지역은 200명 미만의 시설이 38.8%로 평균 273명으로 서울시 이용노인의 수는 타지역의 2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시설명칭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1일 이용노인이 800명 이상인 대규모 시설이 44.4%로 평균 759명이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평균 395명, 노인복지회관 283명 등이다. 시·도 위탁운영시설의 경우

600명 이상의 시설이 79.0%로 평균 826명이며, 시·군·구 위탁운영시설 347명, 기타시설 255명 등이다. 시설규모 2,000㎡ 이상의 경우 1일 이용노인의 수가 800명 이상인 시설이 41.9%로 평균 699명으로 나타났다.

〈표 4-9〉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 1일 평균 이용노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명 미만	200~399명	400~599명	600~799명	800명 이상	계 (N)	평균
전체	27.2	29.3	15.2	12.0	16.3	100.0 (92)	423.7
지역							
서울특별시	-	11.1	5.6	27.8	55.6	100.0 (18)	849.4
6대 광역시	24.0	32.0	24.0	8.0	12.0	100.0 (25)	413.4
9개 도지역	38.8	34.7	14.3	8.2	4.1	100.0 (49)	272.6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	22.2	7.4	25.9	44.4	100.0 (27)	758.9
노인복지관	37.5	50.0	-	-	12.5	100.0 ( 8)	256.3
노인종합복지회관	20.0	30.0	30.0	10.0	10.0	100.0 (10)	395.0
노인복지회관	41.5	26.8	22.0	7.3	2.4	100.0 (41)	282.7
기타	50.0	50.0	-	-	-	100.0 ( 6)	150.7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5.3	15.8	-	21.1	57.9	100.0 (19)	825.7
시·군·구 위탁운영	29.4	33.3	21.6	7.8	7.8	100.0 (51)	346.8
기타(시·군·구 직영)	40.9	31.8	13.6	13.6	-	100.0 (22)	254.9
시설규모							
1,000㎡ 미만	52.6	31.6	10.5	5.3	-	100.0 (19)	206.2
1,000㎡~1,500㎡ 미만	47.6	33.3	9.5	4.8	4.8	100.0 (21)	277.5
1,500㎡~2,000㎡ 미만	19.0	47.6	9.5	19.0	4.8	100.0 (21)	360.1
2,000㎡ 이상	3.2	12.9	25.8	16.1	41.9	100.0 (31)	699.2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연령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5.0%는 연령 제한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95.0%의 시설은 등록에 필요한 공통된 연령제한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시설이 회원자격을 정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시와 광역시는 모든 시설이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표 4-10 참조).

연령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의 경우 회원자격 연령이 60세 이상이라고 응

답한 시설이 80.2%이며, 65세 이상은 19.8%인데, 회원자격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시설이 더 많은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이용대상자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그 대상자를 제한하기도 한다.

〈표 4-10〉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연령기준

(단위: %, 명)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연령제한 시설 비율 (대상시설수) <sup>1)</sup>	100.0 (18)	100.0 (28)	90.9 (55)	95.0 (101)
이용제한 연령				
60세 이상	100.0	89.3	68.0	80.2
65세 이상	-	10.7	32.0	19.8
계 (명)	100.0 (18)	100.0 (28)	100.0 (50)	100.0 (96)

주: 1) 무응답 1개소 제외

### 第3節 서비스 內容 및 프로그램 實態

#### 1. 基本事業

노인복지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의하여 노인복지회관은 기본사업으로 상담·지도,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교양강좌, 각종 여가 및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12)</sup>

상담·지도는 노인의 생활 주택, 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 예방 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이다(보건복지부, 2002). 즉, 노인복지회관에서 상담사업은 노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파악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에 따른

12) 200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사업내용으로는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어려운 노인 결연, 노인부업실 운영, 노인 가정봉사원파견, 노인 식사 및 목욕서비스 등임(보건복지부, 2002).

가족들의 고충을 상담하여 노인복지 및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회관의 상담사업 실시율은 83.2%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시는 94.4%, 광역시는 85.2%, 도지역은 78.0%로 대체로 높은 실시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1 참조).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은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이다 즉, 고령자 취업알선사업은 고령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알선으로 노년기 생활에 안정감을 고취시키고, 실질적 소득보장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 45.9%이며, 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실시율은 각각 39.2%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취업상담서비스와 공동작업장 운영을 각각 66.7%가 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서비스는 61.1%의 시설이 실시하고 있어, 6대 광역시와 9개 도지역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기능회복훈련은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 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능회복사업 중 물리치료 제공률이 75.3%이며, 작업치료 26.0%, 운동치료 45.4%, 건강상담 68.0%, 진료 59.4%, 한방치료 53.6%, 검진사업 44.8%, 방문간호(방문재활) 36.5%, 기타(기치료, 수지침) 50.5% 등으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리치료, 건강상담, 진료상담, 한방치료서비스 제공률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물리치료의 경우 시설공간별 확보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시는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시는 78.6%, 도지역은 64.7%가 실시하고 있다.

복리후생사업은 관내 이용노인의 신체위생의 청결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영양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어르신의 각종 편의를 돕는 사업으로 이미용실 및 목욕탕 운영, 결식노인 무료급식 제공, 일반식당운영, 차량운행서비스 등이 있다. 복리후생사업 중 경로식당은 시설의 87.8%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용서비스는 86.9%, 목욕탕 운영은 45.4%, 차량서비스제공은 52.1%, 기타서비스 5.1%를 제공하고 있다. 경로식당운영은 지역간 비슷한 수준이지만 목욕탕 운영과 차량서비스는 서울시가 타지역에 비하여 거의 2배 정도 더 많이 실시하고 있다.

지역복지협력사업 중 경로행사는 84.7%, 주민편의시설 제공 81.8%, 자원봉사 자모집 및 관리는 77.8%, 출판홍보서비스 제공률이 72.7%, 시설 견학 및 실습 교육은 72.7%,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70.4%, 노인봉사대 활동은 67.7%, 후원사업은 66.0%, 자문위원회 운영은 58.6%, 푸드뱅크는 23.2%, 기타는 11.1%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대도시지역일수록 지역복지협력사업 실시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며, 특히 자문위원회 운영은 서울시의 경우 94.4%로 광역시와 도지역의 2배 정도 더 높는데 비하여, 편의시설 제공은 광역시와 도지역이 더 높다

교양강좌 등의 실시란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를 의미한다 사회교육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자기계발을 통한 정서함양을 도모하며 보람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양교실사업 중 일반교양강좌 실시율은 83.7%이며, 한글교육 82.3%, 영어교육 63.8%, 한자교육 52.1%, 숫자교육 32.6%, 일어교육 31.4%, 역사탐방은 27.4%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과목의 강좌에서 프로그램 실시율이 서울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와 도지역은 비슷한 수준이다

건강교육사업은 일반건강 (보건)교육실시율이 63.4%, 질병중심의 (보건)교육 실시율은 52.1%이며, 서울시는 각각 88.2%와 83.3%로 실시율이 높다.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62.9%이며, 서울시는 모든 시설이 실시하고 있고, 광역시는 60.7%, 도지역은 51.0%가 실시하고 있어 시설공간별 확보율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경향이다

취미·여가프로그램 중 건강증진관련내용으로 체조·에어로빅·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93.9%이며, 가요교실(가요, 가곡, 노래방 등)은 90.7%, 전통문화교실(민요·시조)은 79.6%, 체육관련 프로그램(탁구, 게이트볼, 포켓볼 등)은 77.6%, 무용(고전·현대) 프로그램 72.2%, 사물놀이(장구, 가야금, 풍물, 창 등)는 75.3%, 씨클반활동은 57.3%, 미술활동(그림, 도자기, 색종이접기 등)은 43.8%, 서예반 84.7%, 장기·바둑은 75.3%, 다도·꽃꽂이·채소가꾸기 등은 23.2%, 종교활동은 13.5%, 지역사회봉사활동은 57.7%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기본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단위: %)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상담사업	94.4	85.2	78.0	83.2
취업알선(소득보장)				
취업상담	66.7	46.4	38.5	45.9
취업알선	61.1	35.7	33.3	39.2
공동작업장	66.7	32.1	33.3	39.2
기타(프로그램명)	16.7	-	3.9	5.2
기능회복				
물리치료	100.0	78.6	64.7	75.3
작업치료	67.7	25.9	11.8	26.0
운동치료	94.4	37.0	32.7	45.4
건강상담	94.4	63.0	61.5	68.0
진료	88.9	44.4	56.9	59.4
한방치료	77.8	57.1	43.1	53.6
검진사업	83.3	39.3	34.0	44.8
방문간호(방문재활)	77.8	33.3	23.5	36.5
기타(기치료, 수지침)	77.8	37.0	48.0	50.5
기타	27.8	14.3	5.8	12.2
복리후생				
경로식당 운영	88.9	85.7	88.5	87.8
이·미용서비스	100.0	89.3	81.1	86.9
목욕탕 운영	72.2	35.7	41.2	45.4
차량서비스	88.9	42.3	44.2	52.1
기타(프로그램명)	5.6	7.1	3.8	5.1
지역복지협력				
출판홍보(팸플렛, 홍보지)	94.4	82.1	60.4	72.7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94.4	85.7	67.9	77.8
노인봉사대 활동	88.9	60.7	64.2	67.7
경로행사	94.4	85.7	80.8	84.7
자문위원회 운영	94.4	53.6	49.1	58.6
지역사회 연계사업	88.9	74.1	62.3	70.4
후원사업	88.9	65.4	58.5	66.0
편의시설 제공	66.7	89.3	83.0	81.8
시설 견학 및 실습교육	94.4	78.6	62.3	72.7
푸드뱅크	61.1	25.0	9.4	23.2
기타	16.7	7.1	11.3	11.1
(대상시설 수)	(18)	(28)	(56)	(102)

주: 각 프로그램별 무응답은 제외함

<표 4-11> 계속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교양강좌				
교양교실				
일반교양강좌	94.4	85.7	78.8	83.7
한글 교육	100.0	82.1	76.0	82.3
영어 교육	100.0	55.6	55.1	63.8
일어 교육	77.8	28.6	17.9	31.4
한자 교육	77.8	44.4	46.9	52.1
숫자 교육	55.6	18.5	32.0	32.6
역사탐방	33.3	14.8	32.0	27.4
건강교육				
일반건강 (보건)교육	88.2	61.5	56.0	63.4
질병중심의 (보건)교육	83.3	53.8	40.0	52.1
정보화교실				
컴퓨터 교실	100.0	60.7	51.0	62.9
취미여가프로그램				
건강증진(체조, 에어로빅, 요가 등)	100.0	89.3	94.3	93.9
가요교실(가요, 가곡, 노래방 등)	100.0	96.4	84.3	90.7
전통문화교실(민요, 시조)	100.0	82.1	71.2	79.6
체육(탁구, 게이트볼, 포켓볼 등)	100.0	78.6	69.2	77.6
무용(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100.0	92.9	51.0	72.2
사물놀이(장구, 가야금, 풍물, 창 등)	88.9	75.0	70.6	75.3
씨클반(합창반, 연극반, 영화감상반 등)	88.9	55.6	47.1	57.3
미술활동(그림, 도자기, 색종이접기 등)	100.0	25.9	33.3	43.8
서예반(한글, 한문, 서화, 사군자)	100.0	85.7	78.8	84.7
장기, 바둑	94.4	78.6	66.7	75.3
다도, 꽃꽂이, 채소가꾸기 등	50.0	22.2	14.0	23.2
종교활동	27.8	10.7	10.0	13.5
지역사회봉사활동	88.9	44.4	53.8	57.7
기타	29.4	35.7	19.6	26.0

<표 4-12>에서 직원수별 기본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직원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제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정수의 직원수가 확보되어야 지역노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력규모에 따라 실시 가능한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데 직원이 12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상담사업은 95%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사업은 약 50% 정도가 실시되고 있다

〈표 4-12〉 직원수별 노인복지회관 기본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단위: %)

구분	6명 이하	7~11명	12~24명	25명 이상	전체
상담사업	54.2	86.2	96.3	100.0	83.2
취업알선(소득보장)					
취업상담	38.5	23.3	55.6	86.7	45.9
취업알선	28.0	16.7	51.9	80.0	39.2
공동작업장	24.0	30.0	44.4	73.3	39.2
기타(프로그램명)	-	3.3	7.4	13.3	5.2
기능회복					
물리치료	32.0	83.3	96.3	93.3	75.3
작업치료	-	23.3	42.3	46.7	26.0
운동치료	19.2	40.0	65.4	66.7	45.4
건강상담	26.9	76.7	88.5	86.7	68.0
진료	28.0	53.3	84.6	80.0	59.4
한방치료	28.0	56.7	63.0	73.3	53.6
검진사업	4.0	36.7	73.1	80.0	44.8
방문간호(방문재활)	7.7	13.8	73.1	66.7	36.5
기타(기치료, 수지침)	24.0	39.3	70.4	80.0	50.5
기타	3.8	6.7	18.5	26.7	12.2
복리후생					
경로식당 운영	73.1	90.0	96.3	93.3	87.8
이·미용서비스	59.3	93.3	100.0	100.0	86.9
목욕탕 운영	16.0	36.7	66.7	73.3	45.4
차량서비스	15.4	44.8	77.8	85.7	52.1
기타(프로그램명)	3.8	3.3	7.4	6.7	5.1
지역복지협력					
출판홍보(팸플렛, 홍보지)	25.9	76.7	100.0	100.0	72.7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44.4	76.7	100.0	100.0	77.8
노인봉사대 활동	55.6	56.7	77.8	93.3	67.7
경로행사	65.4	80.0	100.0	100.0	84.7
자문위원회 운영	18.5	56.7	77.8	100.0	58.6
지역사회 연계사업	29.6	72.4	96.3	93.3	70.4
후원사업	22.2	67.9	92.6	93.3	66.0
편의시설 제공	74.1	86.7	85.2	80.0	81.8
시설 견학 및 실습교육	37.0	70.0	96.3	100.0	72.7
푸드뱅크	11.1	10.0	33.3	53.3	23.2
기타(프로그램명)	7.4	-	22.2	20.0	11.1
(대상시설수)	(30)	(30)	(27)	(15)	(102)

주: 각 프로그램별 무응답은 제외함

〈표 4-12〉 계속

구분	6명 이하	7~11명	12~24명	25명 이상	전체
교양강좌					
교양교실					
일반교양강좌	73.1	80.0	92.6	93.3	83.7
한글 교육	45.8	90.0	96.3	100.0	82.3
영어 교육	20.8	58.6	88.5	100.0	63.8
일어 교육	0.0	40.0	56.5	78.6	46.4
한자 교육	12.5	58.6	65.4	80.0	52.1
숫자 교육	4.2	26.7	50.0	60.0	32.6
역사탐방	16.0	24.1	30.8	46.7	27.4
건강교육					
일반건강 (보건)교육	48.0	48.3	80.8	92.3	63.4
질병중심의 (보건)교육	28.0	34.5	76.9	85.7	52.1
정보화교실					
컴퓨터 교실	34.6	65.5	70.4	93.3	62.9
취미여가프로그램					
건강증진(체조, 에어로빅, 요가 등)	88.9	90.0	100.0	100.0	93.9
가요교실(가요, 가곡, 노래방 등)	76.0	90.0	100.0	100.0	90.7
전통문화교실(민요, 시조)	50.0	76.7	100.0	100.0	79.6
체육(탁구, 게이트볼, 포켓볼 등)	50.0	76.7	92.6	100.0	77.6
무용(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28.0	80.0	88.9	100.0	72.2
사물놀이(장구, 가야금, 풍물, 창 등)	48.0	70.0	96.3	93.3	75.3
씨름반(합창반, 연극반, 영화감상반 등)	20.0	56.7	73.1	93.3	57.3
미술활동(그림, 도자기, 색종이접기 등)	16.0	26.7	61.5	93.3	43.8
서예반(한글, 한문, 서화, 사군자)	57.7	90.0	96.3	100.0	84.7
장기, 바둑	48.0	80.0	85.2	93.3	75.3
다도, 꽃꽂이, 채소가꾸기 등	16.0	13.8	26.9	46.7	23.2
종교활동	3.8	3.6	29.6	20.0	13.5
지역사회봉사활동	30.8	50.0	73.1	93.3	57.7
기타	16.0	20.0	38.5	33.3	26.0
(대상시절수)	(30)	(30)	(27)	(15)	(102)

주: 각 프로그램별 무응답은 제외함

## 2. 追加事業

노인복지회관은 기본사업 이외에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특

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로서 다양한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이다.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사업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의 상태나 욕구에 맞는 식사·밑반찬을 제공하여 재가노인의 결식을 방지하고 균형잡힌 영양식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재가복지사업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제공률은 45.7%이며, 식사배달서비스는 36.2%, 밑반찬배달서비스는 45.7%, 세탁서비스는 31.6%,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1.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밑반찬배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 이상의 시설이 실시하고 있다.

주간보호사업은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신체장애(뇌졸중) 및 만성노인성 질환의 어르신에게 각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심신기능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의 신체·정신적 고통을 절감시켜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주간보호사업 실시율은 41.2%이나, 서울의 경우 94.4%가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시는 42.9%로 서울시는 대부분의 시설이 주간보호사업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기보호사업의 실시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단기보호사업을 위해서 요구되는 설비가 많아 실시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중풍·치매노인, 기타 장애 가족에 대한 수발 교육 및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사업 실시율은 23.7%이며, 서울의 경우 55.6%, 광역시는 21.4%가 실시하고 있다. 경로당연계사업은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복지서비스 및 활동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하여 주로 경로당 전담자의 순회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경로당연계사업 실시율은 53.6%로,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8.9%, 광역시는 57.1%가 실시하고 있다.

〈표 4-13〉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추가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단위: %)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재가복지사업				
가정봉사원파견	83.3	44.4	32.7	45.7
식사배달서비스	61.1	33.3	28.6	36.2
밀반찬배달서비스	82.4	44.4	34.0	45.7
세탁서비스	61.1	22.2	26.0	31.6
주거환경개선사업	83.3	29.6	32.0	41.1
기타(프로그램명)	16.7	3.6	-	4.2
주간보호사업	94.4	42.9	21.6	41.2
단기보호사업	11.1	3.6	3.9	5.2
교육사업				
보호자교육	55.6	21.4	13.7	23.7
경로당 연계 사업	88.9	57.1	39.2	53.6
(대상시설수)	(18)	(28)	(56)	(102)

주: 각 프로그램별 무응답은 제외함

〈표 4-14〉 노인복지회관 직원수별 추가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단위: %)

구분	6명 이하	7~11명	12~24명	25명 이상	전체
재가복지사업					
가정봉사원파견	16.0	26.7	80.0	78.6	45.7
식사배달서비스	16.0	30.0	52.0	57.1	36.2
밀반찬배달서비스	12.0	36.7	68.0	85.7	45.7
세탁서비스	8.0	23.3	53.8	50.0	31.6
주거환경개선사업	8.0	26.7	73.1	71.4	41.1
기타(프로그램명)	-	3.3	3.7	13.3	4.2
주간보호사업	4.0	26.7	63.0	93.3	41.2
단기보호사업	-	6.7	3.7	13.3	5.2
교육사업					
보호자교육	8.0	10.0	44.4	40.0	23.7
경로당 연계 사업	32.0	46.7	55.6	100.0	53.6
(대상시설수)	(30)	(30)	(27)	(15)	(102)

주: 각 프로그램별 무응답은 제외함

### 3. 單位事業

단위사업이란 노인복지회관의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한다 즉,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해 별도로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설문지 응답시 단위사업과 추가사업시설 자체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응답한 시설이 있으므로 국고지원에 의한 실적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단위사업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실시율은43.0%이며, 중풍 및 허약노인 주간보호사업은 34.4%, 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은 23.7%, 단기보호사업은 4.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집 운영사업은 6.5%,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53.2%, 장례서비스는 8.6%, 취업알선사업은 35.1% 등이다. 서울지역이 타지역에 비하여 단위사업별 실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15 참조).

〈표 4-15〉 지역별 단위사업 프로그램별 제공 비율

구분	(단위: %)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77.8	51.9	25.0	43.0
중풍 및 허약노인 주간보호사업	77.8	34.6	18.4	34.4
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	61.1	23.1	10.2	23.7
단기보호사업	11.1	-	4.1	4.3
노인의 집 운영사업	22.2	3.8	2.0	6.5
경로당 활성화 사업	88.9	55.6	38.8	53.2
장례서비스	22.2	7.7	4.1	8.6
취업알선사업	55.6	37.0	26.5	35.1
기타	22.2	7.1	10.2	11.6
(대상시설수)	( 18)	( 28)	( 56)	(102)

주: 각 프로그램별 무응답은 제외함 각각의 프로그램이 시설자체사업과 동시에 실시되고 있음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비스 요금제가42.1%로 가장 많으며, 월 단위 정액제가 17.1%, 기타 40.8%이다. 서울시는 전체의 3/4정도가 프로그램 내

용에 따라 비용을 받는 서비스 요금제(76.5%)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시는 40.0%, 도지역은 26.5%가 서비스 요금제이다(표 4-16 참조).

노인종합복지관은 70.4%가 서비스 요금제이며, 노인복지회관은 기타(무료 이용 포함)가 63.3%이다. 서비스 요금제의 비율이 시·도 위탁운영시설은 75.0%이며, 시·군·구 위탁운영시설은 46.2%, 기타(시·군·구 직영 등)시설은 9.5%에 불과하다. 시설규모가 클수록 서비스 요금제를 실시하는 편이다

<표 4-16>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이용료 형태

(단위: %, 개소)

구분	월단위 정액제	서비스 요금제	기타(무료 포함)	계 (N)
전체	17.1	42.1	40.8	100.0 (76)
지역				
서울특별시	17.6	76.5	5.9	100.0 (17)
6대 광역시	20.0	40.0	40.0	100.0 (25)
9개 도지역	14.7	26.5	58.8	100.0 (34)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14.8	70.4	14.8	100.0 (27)
노인복지관	33.3	50.0	16.7	100.0 ( 6)
노인종합복지회관	12.5	50.0	37.5	100.0 ( 8)
노인복지회관	20.0	16.7	63.3	100.0 (30)
기타	-	20.0	80.0	100.0 ( 5)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18.8	75.0	6.3	100.0 (16)
시·군·구 위탁운영	15.4	46.2	38.5	100.0 (39)
기타(시·군·구 직영)	19.0	9.5	71.4	100.0 (21)
시설규모				
1,000㎡ 미만	11.1	22.2	66.7	100.0 (18)
1,000㎡~1,500㎡ 미만	18.8	43.8	37.5	100.0 (16)
1,500㎡~2,000㎡ 미만	26.7	33.3	40.0	100.0 (15)
2,000㎡ 이상	14.8	59.3	25.9	100.0 (27)

<표 4-17>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중 노인교실 또는 노인 대학, 노인학교가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의 노인교실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48.4%의 시설은 등록을 한 노인교실을 운영중이다

제특성별 노인교실등록률을 보면 지역별로는 광역시가66.7%로 가장 높으며, 시설종류별로는 노인복지회관(52.4%), 운영형태별로는 시·군·구 위탁운영 시설(51.0%), 시설규모 1,000㎡~1,500㎡ 미만의 시설(66.7%)에서 노인교실 등록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의 노인교실 등록여부

구분	(단위: %)		
	예	아니오	계 (N)
전체 <sup>1)</sup>	48.4	51.6	100.0 (95)
지역			
서울특별시	23.5	76.5	100.0 (17)
6대 광역시	66.7	33.3	100.0 (27)
9개 도지역	47.1	52.9	100.0 (51)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37.0	63.0	100.0 (27)
노인복지관	50.0	50.0	100.0 ( 8)
노인종합복지회관	50.0	50.0	100.0 (10)
노인복지회관	52.4	47.6	100.0 (42)
기타	62.5	37.5	100.0 ( 8)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42.1	57.9	100.0 (19)
시·군·구 위탁운영	51.0	49.0	100.0 (51)
기타	48.0	52.0	100.0 (25)
시설규모			
1,000㎡ 미만	60.0	40.0	100.0 (20)
1,000㎡~1,500㎡ 미만	66.7	33.3	100.0 (24)
1,500㎡~2,000㎡ 미만	47.4	52.6	100.0 (19)
2,000㎡ 이상	28.1	71.9	100.0 (32)

주: 1) 무응답 7개소 제외

노인복지회관의 사업프로그램 중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67.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으로 11.5%, 지역복지협력 7.3%, 경로당 연계사업 5.2% 등으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재가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비율이 각각 17.6%와 17.9%인데 비하여 도지역은 5.9%에 불과하다. 서울은 지역복지협력사

업의 우선순위가 17.6%로 타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시설종류별로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사회교육프로그램 우선순위가 3.2%, 재가복지사업은 7.3%인데 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교육프로그램이 60.7%, 재가복지사업은 14.3%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군·구 위탁운영시설, 시설규모가 클수록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의 비율이 높아지는 편이다

<표 4-18> 제특성별 노인복지회관의 사업·프로그램중 우선순위 사업

(단위: %)

구분	상담 서비스	지역 복지 협력	취업 알선	재가 복지 사업	경로당 연계 사업	기능 회복 사업	사회 교육프로그램	보건 의료 서비스	복지 후생 서비스	계 (N)
전체	3.1	7.3	1.0	11.5	5.2	3.1	67.7	-	1.0	100.0 (96)
지역										
서울특별시	-	17.6	-	17.6	-	5.9	58.8	-	-	100.0 (17)
6대 광역시	-	3.6	-	17.9	-	3.6	75.0	-	-	100.0 (28)
9개 도지역	5.9	5.9	2.0	5.9	9.8	2.0	66.7	-	2.0	100.0 (51)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3.6	17.9	-	14.3	-	3.6	60.7	-	-	100.0 (28)
노인복지관	-	-	-	22.2	-	-	77.8	-	-	100.0 (9)
노인종합복지회관	-	10.0	-	10.0	-	-	70.0	-	10.0	100.0 (10)
노인복지회관	4.9	2.4	-	7.3	9.8	2.4	73.2	-	-	100.0 (41)
기타	-	-	12.5	12.5	12.5	12.5	50.0	-	-	100.0 (8)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	5.6	-	11.1	-	5.6	77.8	-	-	100.0 (18)
시·군·구 위탁운영	3.8	9.4	-	15.1	7.5	1.9	62.3	-	-	100.0 (53)
기타	4.0	4.0	4.0	4.0	4.0	4.0	72.0	-	4.0	100.0 (25)
시설규모										
1,000㎡ 미만	9.1	9.1	4.5	4.5	13.6	-	59.1	-	-	100.0 (22)
1,000㎡~1,500㎡ 미만	4.8	4.8	-	9.5	9.5	-	71.4	-	-	100.0 (21)
1,500㎡~2,000㎡ 미만	-	10.0	-	15.0	-	5.0	70.0	-	-	100.0 (20)
2,000㎡ 이상	-	6.1	-	15.2	-	6.1	69.7	-	3.0	100.0 (33)

<표 4-19>에서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중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47.3%이며, 취미·여가 프로그램이 21.5%, 재가복지사업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프로그램인 사회교육프로그램 재가복지사업 등과 비슷한 경향으로 시설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타지역에 비하여 서울시의 경우 재가복지사업(23.5%), 경로당연계사업(17.6%), 기능회복사업(17.6%) 등의 사업의 비율이 높은 반면 광역시는 보건의료서비스(14.8%), 도지역은 사회교육프로그램(53.1%) 및 취미·여가프로그램(28.6%)이 가장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시설종류별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재가복지사업(15.4%),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사회교육프로그램(70.0%)이 가장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시설이 많은 편이다

〈표 4-19〉 제 특성별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사업·프로그램  
(단위: %)

구분	상담 서비스	지역 복지 협력	취업 알선	재가 복지 사업	경로당 연계 사업	기능 회복 사업	사회 교육 프로그램	취미·여가 프로그램	보건 의료 서비스	복지 후생 서비스	계 (N)
전체	2.2	2.2	-	7.5	3.2	4.3	47.3	21.5	6.5	5.4	100.0 (93)
지역											
서울특별시	-	-	-	23.5	17.6	17.6	29.4	5.9	-	5.9	100.0 (17)
6대 광역시	-	3.7	-	7.4	-	-	48.1	18.5	14.8	7.4	100.0 (27)
9개 도지역	4.1	2.0	-	2.0	-	2.0	53.1	28.6	4.1	4.1	100.0 (49)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3.8	3.8	-	15.4	7.7	11.5	34.6	19.2	-	3.8	100.0 (26)
노인복지관	-	-	-	-	11.1	-	66.7	11.1	-	11.1	100.0 ( 9)
노인종합복지회관	-	-	-	10.0	-	-	70.0	20.0	-	-	100.0 (10)
노인복지회관	2.4	2.4	-	2.4	-	2.4	46.3	22.0	14.6	7.3	100.0 (41)
기타	-	-	-	14.3	-	-	42.9	42.9	-	-	100.0 ( 7)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	-	-	11.1	5.6	16.7	44.4	16.7	-	5.6	100.0 (18)
시·군·구 위탁운영	1.9	3.8	-	9.4	3.8	1.9	47.2	17.0	9.4	5.7	100.0 (53)
기타	4.5	-	-	-	-	-	50.0	36.4	4.5	4.5	100.0 (22)
시설규모											
1,000㎡ 미만	10.0	5.0	-	-	5.0	-	45.0	30.0	-	5.0	100.0 (20)
1,000㎡~1,500㎡ 미만	-	4.3	-	8.7	-	-	52.2	13.0	13.0	8.7	100.0 (23)
1,500㎡~2,000㎡ 미만	-	-	-	5.6	5.6	5.6	50.0	22.2	5.6	5.6	100.0 (18)
2,000㎡ 이상	-	-	-	12.5	3.1	9.4	43.8	21.9	6.3	3.1	100.0 (32)

시·도 위탁운영 시설은 타시설에 비하여 재가복지사업(1.1%)과 기능회복훈련(16.7%)은 비율이 높은 편이며, 시설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 재가복지사업(12.5%)의 비율이 높다.

<표 4-20>은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들의 의견과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는지에 대한 설문으로 76.6%의 시설이 이용노인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47.9%는 정기적으로, 28.7%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모든 시설이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시 85.2%, 도지역 64.7% 이다.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도 위탁운영시설 시설규모가 2,000㎡ 이상인 시설은 90% 이상이 이용노인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4-20> 제 특성별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 욕구조사 실시 여부 (단위: %)

구분	실시			미실시	계 (N)
	정기적	비정기적	소계		
전체 <sup>1)</sup>	47.9	28.7	76.6	23.4	100.0 (94)
지역					
서울특별시	75.0	25.0	100.0	-	100.0 (16)
6대 광역시	55.6	29.6	85.2	14.8	100.0 (27)
9개 도지역	35.3	29.4	64.7	35.3	100.0 (51)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70.4	25.9	96.3	3.7	100.0 (27)
노인복지관	75.0	-	75.0	25.0	100.0 ( 8)
노인종합복지회관	60.0	30.0	90.0	10.0	100.0 (10)
노인복지회관	25.6	37.2	62.8	37.2	100.0 (43)
기타	50.0	16.7	66.7	33.3	100.0 ( 6)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66.7	27.8	94.4	5.6	100.0 (18)
시·군·구 위탁운영	47.2	32.1	79.2	20.8	100.0 (53)
기타	34.8	21.7	56.5	43.5	100.0 (23)
시설규모					
1,000㎡ 미만	30.0	35.0	65.0	35.0	100.0 (20)
1,000㎡ ~ 1,500㎡ 미만	40.9	31.8	72.7	27.3	100.0 (22)
1,500㎡ ~ 2,000㎡ 미만	40.0	25.0	65.0	35.0	100.0 (20)
2,000㎡ 이상	68.8	25.0	93.8	6.3	100.0 (32)

주: 1) 무응답 8개소 제외

#### 第 4 節 地域社會와의 連繫

노인복지회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에서는 자원봉사자 현황지역사회 보건·복지관련 협의체 유무, 지난 1년간 지역사회내 연계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설은 89.8%이며, 서울시는 모든 시설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광역시는 96.3%, 도지역은 83.0%의 시설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등록자원봉사자 수는 100명 미만의 시설이 26.3%이며, 200~499명과 500~999명이 각각 23.7%이며, 100~199명은 19.7% 등이다. 지역별 평균 등록 자원봉사자수는 서울시는 평균 749명, 광역시는 평균 236명, 도지역은 평균 291명이다(표 4-21 참조).

1일 평균 자원봉사자수는 20~49명이 39.0%이며, 10명 미만은 24.7%, 10~19명은 23.4%, 50명 이상은 13.0%이다. 1일 평균 자원봉사자수도 서울(39명)이 가장 많으며, 도지역(38명), 광역시(27명) 등의 순이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주된 통로는 종교단체 및 지역내의 사회단체를 통해서가 32.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지역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로 23.1%, 자원봉사자들의 직접적인 방문 신청이 17.9%, 시·군·구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가 15.4%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신청한다(26.7%)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표 4-22>는 지역사회에 보건 또는 복지관련 협의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식적인 협의체가 있으며 작동중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43.7%이며, 협의체는 있으나 거의 활동이 없다는 시설이 13.8%로서 현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57.5%임을 알 수 있다. 대도시지역일수록 공식적 협의체가 작동중인 비율이 더 높다.

지역협의체가 없는 시설에 대하여 협의체 형태는 아니지만 지역내 일선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14.9%는 있다고 응답하여 결국 전체시설의 72.4%는 지역사회내 보건·복지관련 협의체 또는 모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협의체 또는 모임이 지역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하여 31.3%의 시설은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52.2%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도움이 된다(83.5%)고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도시일수록 협의체 모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들 모임이 지역기관과의 연계협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편이다.

〈표 4-21〉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단위: %)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자원봉사자가 있는 시설 비율 (대상시설수 <sup>1)</sup> )	100.0 (18)	96.3 (27)	83.0 (53)	89.8 (98)
등록자원봉사자 수 <sup>2)</sup>				
100명 미만	-	50.0	24.3	26.3
100~199명	5.9	27.3	21.6	19.7
200~499명	29.4	9.1	29.7	23.7
500~999명	41.2	9.1	24.3	23.7
1,000명 이상 (평균)	23.5 (749)	4.5 (236)	- (291)	6.6 (378)
계 (N)	100.0 (17)	100.0 (22)	100.0 (37)	100.0 (76)
1일 평균 자원봉사활동자 수				
10명 미만	-	33.3	30.8	24.7
10~19명	11.8	23.8	28.2	23.4
20~49명	58.8	33.3	33.3	39.0
50명 이상 (평균)	29.4 (39)	9.5 (27)	7.7 (38)	13.0 (35)
계 (N) <sup>3)</sup>	100.0 (17)	100.0 (21)	100.0 (39)	100.0 (77)
자원봉사자원을 얻는 주된 통로				
시·군·구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3.3	14.3	16.7	15.4
지역내 여성자원봉사센터를 통해	-	4.8	9.5	6.4
종교단체 및 지역내의 사회단체들을 통해	26.7	33.3	33.3	32.1
지역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0	28.6	21.4	23.1
자원봉사자들의 직접적인 방문 신청	26.7	14.3	16.7	17.9
기타	13.3	4.8	2.4	5.1
계 (N) <sup>4)</sup>	100.0 (15)	100.0 (21)	100.0 (42)	100.0 (78)

주: 1) 무응답 4개소 제외

2)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 88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무응답 12개소 제외함.

3) 무응답 11개소 제외

4) 무응답 10개소 제외

〈표 4-22〉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지역 협의체·모임의 유무

(단위: %)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지역 협의체 유무				
공식적인 협의체가 있으며 작동중	61.1	46.2	34.9	43.7
협의체는 있으나 거의 활동이 없다	5.6	15.4	16.3	13.8
협의체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	7.7	7.0	5.7
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	16.7	23.1	11.6	16.1
협의체에 대한 논의도 준비도 없다	16.7	7.7	30.2	20.7
계	100.0	100.0	100.0	100.0
(N)	(18)	(26)	(43)	(87)
지역내 일선서비스 제공자들의 모임 유무				
있다	27.8	7.7	14.0	14.9
없다	5.6	23.1	27.9	21.8
비해당(지역 협의체가 있는 경우)	66.7	69.2	58.1	63.2
계	100.0	100.0	100.0	100.0
(N)	(18)	(26)	(43)	(87)
협의체·모임의 지역기관과 연계·협력 정도 <sup>1)</sup>				
연계 및 협력에 큰 도움이 된다	31.3	35.0	29.0	31.3
연계 및 협력에 약간 도움이 된다	62.5	50.0	48.4	52.2
도움이 되지 않는다	6.3	15.0	22.6	16.4
도움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	-	-	-	-
계	100.0	100.0	100.0	100.0
(N)	(16)	(20)	(31)	(67)

주: 1) 협의체 또는 모임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68개소) 중 무응답 1개소 제외함.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내에서 타기관과 연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전체의 74.5%)을 대상으로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부터 순서대로 3개 기관의 종류, 그 기관과의 연계방법, 연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으로는 구청동사무소가 25.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각종 협(의)회·시민단체로 22.4%, 각종 사회복지관(이용시설)은 17.1%, 보건(지)소는 11.8% 등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계한 기관으로는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보건(지)소 등의 순이며, 세 번째 연계한 기관으로는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학교라고

응답하였다(표 4-23 참조).

〈표 4-23〉 지난 1년간 지역사회내 협력기관

(단위: %, 개소)

구분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	두 번째 연계한 기관	세 번째 연계한 기관
구청·동사무소	25.0	7.9	2.6
보건(지)소	11.8	10.5	2.6
의료기관(병·의원)	1.3	6.6	3.9
종교단체	2.6	2.6	2.6
학교(직업전문학교)	6.6	3.9	10.5
공공기관(단체)	6.6	3.9	6.6
각종 사회복지관이용시설	17.1	5.3	6.6
각종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2.6	3.9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6.6	15.8	2.6
사회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	-	-
공동모금회	-	-	-
고용촉진공단	-	-	-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22.4	25.0	23.7
없음	-	15.8	34.2
계	100.0	100.0	100.0
(N)	(76)	(76)	(76)

한편 이들 연계기관들과의 연계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과는 프로그램이나 사업관련 정보교환이 38.2%이며, 개인정보 또는 서비스 수급 관련 정보교환은 31.6%, 공동사업추진이 27.6% 등이다. 두 번째 기관과의 연계내용은 공동사업추진, 프로그램·사업관련 정보교환, 개인정보·서비스 수급관련 정보교환 등의 순이며, 세 번째 기관과의 연계내용은 프로그램·사업관련 정보교환, 개인정보·서비스 수급관련 정보교환이라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사회내 기관들과는 연계는 주로 프로그램사업관련 정보교환, 개인정보·서비스 수급관련 정보교환, 공동사업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클라이언트의 의뢰 또는 클라이언트의 공동 관리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표 4-24 참조).

연계기관과의 협력방식으로는 첫 번째 기관과는 전화가 50.0%로 가장 빈번히 이용되며, 공문이 40.8%, 면담이 23.7% 등의 순이다. 두 번째 기관과는 공문(43.4%), 전화(35.5%) 등의 순이며, 세 번째 기관과 연계방법은 전화, 공문, 면담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4-25 참조).

〈표 4-24〉 지역사회내 협력기관과의 연계내용별 비율(중복응답)

(단위: 개소)

구분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	두 번째 기관	세 번째 기관
프로그램이나 사업관련 정보교환	38.2	23.7	44.4
개인정보 또는 서비스 수급관련 정보교환	31.6	18.4	19.7
인력교환	13.2	14.5	7.9
클라이언트 의뢰	13.2	14.5	9.2
클라이언트 공동관리	10.5	6.6	6.6
공동사업 추진	27.6	26.3	17.1
기관내 프로그램 이용	7.9	5.3	6.6
기타	7.9	9.2	11.8
(대상시설수)	(76)	(76)	(76)

〈표 4-25〉 지역사회내 협력기관과의 연계방법별 비율(중복응답)

(단위: %)

구분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	두 번째 기관	세 번째 기관
전화	50.0	35.5	26.3
공문	40.8	43.4	26.3
면담	23.7	15.8	23.7
회의	10.5	9.2	9.2
공식적 협의체·모임	15.8	13.2	9.2
(대상시설수)	(76)	(76)	(76)

지역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과의 연계내용을 살펴보면 구청·동사무소와는 개인정보·서비스 수급관련 정보교환(42.1%)이, 각종 사회복지관이용 시설과는 프로그램·사업관련 정보교환(61.5%)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협(의)회·시민단체와는 프로그램·사업관련 정보교환(41.2%)과 공동사업추진(41.2%)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4-26 참조).

두 번째 연계기관과의 연계내용으로 각종 협의)체·시민단체와는 공동사업추진(41.2%), 프로그램·사업관련 정보교환(31.6%)으로 연계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과는 인력교환을 위해 가장 빈번히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기관과의 연계에서도 각종 협의)회·시민단체와는 프로그램·사업관련 정보교환, 개인정보·서비스 수급관련 정보교환, 공동사업추진 등을 위해 연계하고 있다.

한편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과의 연계방법을 살펴보면 구청동사무소와의 연계방법은 공문(57.9%)과 전화(52.6%)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관과의 연계방법은 전화(69.2%) 협의체 모임(38.5%)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각종 협의)회·시민단체와는 전화, 공문, 면담, 협의체 모임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두 번째 기관으로 각종 협의)회·시민단체와는 협의체 모임 또는 공문에 의한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과는 전화 또는 공문에 의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기관으로 각종 협의)회·시민단체와는 전화, 공문, 면담 등의 방법이 비슷한 수준으로 연계되고 있다(표 4-27 참조).

〈표 4-26〉 연계기관종류별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내용별 비율 및 빈도(중복응답)  
(단위: %, 개소)

구분	프로그램· 사업관련정보 교환	개인정보 또는 서비스수급관련 정보교환	인력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대상 시설수)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					
구청·동사무소	26.3 (5)	42.1 (8)	5.3 (1)	10.5 (2)	(19)
보건(지)소	44.4 (4)	44.4 (4)	22.2 (2)	11.1 (1)	(9)
의료기관(병·의원)	- (-)	- (-)	- (-)	- (-)	(1)
종교단체	- (-)	50.0 (1)	- (-)	- (-)	(2)
학교(직업전문학교)	20.0 (1)	- (-)	40.0 (2)	- (-)	(5)
공공기관(단체)	40.0 (2)	- (-)	20.0 (1)	- (-)	(5)
각종사회복지관이용시설	61.5 (8)	38.5 (5)	- (-)	30.8 (4)	(13)
각종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	- (-)	- (-)	- (-)	(-)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40.0 (2)	60.0 (3)	20.0 (1)	- (-)	(5)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41.2 (7)	17.6 (3)	17.6 (3)	17.6 (3)	(17)
계	38.2 (29)	31.6 (24)	13.2 (10)	13.2 (10)	(76)
두 번째 연계한 기관					
구청·동사무소	33.3 (2)	33.3 (2)	- (-)	50.0 (3)	(6)
보건(지)소	12.5 (1)	37.5 (3)	- (-)	50.0 (4)	(8)
의료기관(병·의원)	- (-)	- (-)	- (-)	20.0 (1)	(5)
종교단체	- (-)	- (-)	50.0 (1)-	- (-)	(2)
학교(직업전문학교)	100.0 (3)	- (-)	33.3 (1)	- (-)	(3)
공공기관(단체)	33.3 (1)	33.3 (1)	33.3 (1)	33.3 (1)	(3)
각종사회복지관이용시설	50.0 (2)	25.0 (1)	- (-)	- (-)	(4)
각종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	50.0 (1)	- (-)	- (-)	(2)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25.0 (3)	16.7 (2)	50.0 (6)	8.3 (1)	(12)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31.6 (6)	21.1 (4)	10.5 (2)	5.3 (1)	(19)
없음	- (-)	- (-)	- (-)	- (-)	(12)
계	23.7 (18)	18.4 (14)	14.5 (11)	14.5 (11)	(76)
세 번째 연계한 기관					
구청·동사무소	50.0 (1)	50.0 (1)	50.0 (1)	- (-)	(2)
보건(지)소	- (-)	50.0 (1)	50.0 (1)	50.0 (1)	(2)
의료기관(병·의원)	- (-)	66.7 (2)	- (-)	66.7 (2)	(3)
종교단체	- (-)	- (-)	- (-)	- (-)	(2)
학교(직업전문학교)	25.0 (2)	12.5 (1)	12.5 (1)	- (-)	(8)
공공기관(단체)	40.0 (2)	40.0 (2)	40.0 (2)	20.0 (1)	(5)
각종사회복지관이용시설	40.0 (2)	40.0 (2)	- (-)	40.0 (2)	(5)
각종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33.3 (1)	33.3 (1)	- (-)	- (-)	(3)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 (-)	- (-)	- (-)	- (-)	(2)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44.4 (8)	27.8 (5)	5.6 (1)	5.6 (1)	(18)
없음	- (-)	- (-)	- (-)	- (-)	(26)
계	21.1 (16)	19.7 (15)	7.9 (6)	9.2 (7)	(76)

<표 4-26> 계속

(단위: %, 개소)

구분	클라이언트 공동관리	공동사업 추진	기관내 프로그램 이용	기타	(대상 시설수)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					
구청·동사무소	10.5 (2)	26.3 (5)	5.3 (1)	10.5 (2)	(19)
보건(지)소	11.1 (1)	44.4 (4)	11.1 (1)	- (-)	(9)
의료기관(병·의원)	- (-)	100.0 (1)	- (-)	- (-)	(1)
종교단체	- (-)	50.0 (1)	- (-)	50.0 (1)	(2)
학교(직업전문학교)	20.0 (1)	40.0 (2)	20.0 (1)	- (-)	(5)
공공기관(단체)	- (-)	20.0 (1)	- (-)	20.0 (1)	(5)
각종사회복지관이용시설	15.4 (2)	- (-)	15.4 (2)	7.7 (1)	(13)
각종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	- (-)	- (-)	- (-)	(-)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20.0 (1)	- (-)	- (-)	- (-)	(5)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5.9 (1)	41.2 (7)	5.9 (1)	5.9 (1)	(17)
계	10.5 (8)	27.6 (21)	7.9 (6)	7.9 (6)	(76)
두 번째 연계한 기관					
구청·동사무소	33.3 (2)	16.7 (1)	16.7 (1)	16.7 (1)	(6)
보건(지)소	- (-)	12.5 (1)	- (-)	12.5 (1)	(8)
의료기관(병·의원)	- (-)	60.0 (3)	- (-)	20.0 (1)	(5)
종교단체	50.0 (1)	- (-)	- (-)	- (-)	(2)
학교(직업전문학교)	- (-)	66.7 (2)	66.7 (2)	33.3 (1)	(3)
공공기관(단체)	33.3 (1)	33.3 (1)	- (-)	- (-)	(3)
각종사회복지관이용시설	25.0 (1)	- (-)	25.0 (1)	- (-)	(4)
각종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	50.0 (1)	- (-)	- (-)	(2)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 (-)	25.0 (3)	- (-)	8.3 (1)	(12)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 (-)	42.1 (8)	- (-)	10.5 (2)	(19)
없음	- (-)	- (-)	- (-)	- (-)	(12)
계	6.6 (5)	26.3 (20)	5.3 (4)	9.2 (7)	(76)
세 번째 연계한 기관					
구청·동사무소	- (-)	50.0 (1)	- (-)	- (-)	(2)
보건(지)소	50.0 (1)	50.0 (1)	- (-)	- (-)	(2)
의료기관(병·의원)	33.3 (1)	33.3 (1)	33.3 (1)	- (-)	(3)
종교단체	- (-)	- (-)	- (-)	100.0 (2)	(2)
학교(직업전문학교)	12.5 (1)	25.0 (2)	12.5 (1)	37.5 (3)	(8)
공공기관(단체)	20.0 (1)	40.0 (2)	- (-)	- (-)	(5)
각종사회복지관이용시설	- (-)	20.0 (1)	20.0 (1)	- (-)	(5)
각종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	- (-)	- (-)	33.3 (1)	(3)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 (-)	- (-)	50.0 (1)	50.0 (1)	(2)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5.6 (1)	27.8 (5)	5.6 (1)	11.1 (2)	(18)
없음	- (-)	- (-)	- (-)	- (-)	(26)
계	6.6 (5)	17.1 (13)	6.6 (5)	11.8 (9)	(76)

〈표 4-27〉 연계기관종류별 노인복지회관과의 연계방법별 비율 및 빈도(중복응답)  
(단위: %, 개수)

구분	전화	공문	면담	회의	공식적 협의체/모임	(대상 시설수)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가장 빈번히 연계한 기관						
구청·동사무소	52.6 (10)	57.9 (11)	26.3 (5)	- (-)	5.3 (1)	(19)
보건(지)소	44.4 (4)	55.6 (5)	33.3 (3)	22.2 (2)	- (-)	(9)
의료기관(병·의원)	- (-)	100.0 (1)	- (-)	- (-)	- (-)	(1)
종교단체	100.0 (2)	- (-)	50.0 (1)	- (-)	- (-)	(2)
학교(직업전문학교)	80.0 (4)	40.0 (2)	- (-)	- (-)	- (-)	(5)
공공기관(단체)	- (-)	60.0 (3)	- (-)	20.0 (1)	- (-)	(5)
각종사회복지관이용시설	69.2 (9)	7.7 (1)	23.1 (3)	15.4 (2)	38.5 (5)	(13)
각종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	- (-)	- (-)	- (-)	- (-)	(-)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80.0 (4)	40.0 (2)	20.0 (1)	20.0 (1)	- (-)	(5)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29.4 (5)	35.3 (6)	29.4 (5)	11.8 (2)	35.3 (6)	(17)
계	50.0 (38)	40.8 (31)	23.7 (18)	10.5 (8)	15.8 (12)	(76)
두 번째 연계한 기관						
구청·동사무소	33.3 (2)	83.3 (5)	33.3 (2)	16.7 (1)	- (-)	(6)
보건(지)소	50.0 (4)	50.0 (4)	12.5 (1)	12.5 (1)	12.5 (1)	(8)
의료기관(병·의원)	40.0 (2)	80.0 (4)	- (-)	- (-)	- (-)	(5)
종교단체	50.0 (1)	50.0 (1)	50.0 (1)	- (-)	- (-)	(2)
학교(직업전문학교)	100.0 (3)	66.7 (2)	33.3 (1)	- (-)	- (-)	(3)
공공기관(단체)	66.7 (2)	100.0 (3)	33.3 (1)	33.3 (1)	- (-)	(3)
각종사회복지관이용시설	50.0 (2)	25.0 (1)	- (-)	- (-)	25.0 (1)	(4)
각종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	100.0 (2)	- (-)	- (-)	- (-)	(2)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58.3 (7)	41.7 (5)	25.0 (3)	- (-)	- (-)	(12)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21.1 (4)	31.6 (6)	15.8 (3)	21.1 (4)	42.1 (8)	(19)
없음	--	--	--	--	--	(12)
계	35.5 (27)	43.4 (33)	15.8 (12)	9.2 (7)	13.2 (10)	(76)
세 번째 연계한 기관						
구청·동사무소	50.0 (1)	50.0 (1)	- (-)	50.0 (1)	- (-)	(2)
보건(지)소	50.0 (1)	50.0 (1)	50.0 (1)	50.0 (1)	50.0 (1)	(2)
의료기관(병·의원)	66.7 (2)	66.7 (2)	66.7 (2)	33.3 (1)	- (-)	(3)
종교단체	- (-)	50.0 (1)	50.0 (1)	- (-)	- (-)	(2)
학교(직업전문학교)	37.5 (3)	37.5 (3)	37.5 (3)	12.5 (1)	- (-)	(8)
공공기관(단체)	- (-)	60.0 (3)	40.0 (2)	20.0 (1)	20.0 (1)	(5)
각종사회복지관이용시설	80.0 (4)	20.0 (1)	20.0 (1)	- (-)	20.0 (1)	(5)
각종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33.3 (1)	66.7 (2)	- (-)	- (-)	- (-)	(3)
자원봉사센터·자활후견기관	50.0 (1)	- (-)	50.0 (1)	- (-)	- (-)	(2)
각종 협(의)회·시민단체	38.9 (7)	33.3 (6)	38.9 (7)	11.1 (2)	22.2 (4)	(18)
없음	--	--	--	--	--	(26)
계	26.3 (20)	26.3 (20)	23.7 (18)	9.2 (7)	9.2 (7)	(76)

## 第 5 節 財政現況

### 1. 一般定規豫算

2001년도 노인복지회관의 재정현황을 정규사업을 위한 세입세출과 단위사업을 위한 세입·세출로 구분 제시한 후 정규사업과 단위사업 예산을 합한 시설 총예산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정규사업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2억~5억원 미만인 시설이 27.0%이며, 5억~10억원 미만은 24.7%, 1억~2억원 미만은 18.0%, 1억원 미만은 14.6%, 10억원 이상의 시설은 9.0% 등이며, 별도 정규 운영예산이 없다는 시설이 6.7%이다(표 4-28 참조). 별도의 정규운영예산이 없는 시설은 주로 시·군·구 직영시설로서 인건비 등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예산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5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서울시는 88.9%인데 비하여,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20.8%, 19.1%로 서울시와 지방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규사업예산의 규모는 시설직원 수 프로그램·사업실시 등 시설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명칭별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은 5억원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72.4%이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2.2%, 노인복지관 14.3%, 노인복지회관 10.5% 등이다. 한편 위탁주체별로는 시·도 위탁의 경우 5억원 이상이 73.7%인데 반하여, 시·군·구 위탁운영은 29.8%에 불과하며, 기타시설은 56.5%가 1억원 미만으로 운영된다. 즉, 위탁주체에 따라 예산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위탁주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운영비 보조금의 차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규모가 클수록 세입예산도 대체로 증가하는 편이다.

〈표 4-28〉 지역별 2001년도 정규세입예산(단위사업비 비포함)

(단위: %)

구분	별도예산 없음	1억원 미만	1~2억원 미만	2~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계 (N)
전체	6.7	14.6	18.0	27.0	24.7	9.0	100.0 (89)
지역							
서울특별시	-	-	-	11.1	61.1	27.8	100.0 (18)
6대 광역시	-	12.5	33.3	33.3	12.5	8.3	100.0 (24)
9개 도지역	12.8	21.3	17.0	29.8	17.0	2.1	100.0 (47)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	-	13.8	13.8	48.3	24.1	100.0 (29)
노인복지관	-	28.6	-	57.1	14.3	-	100.0 ( 7)
노인종합복지회관	-	11.1	-	66.7	22.2	-	100.0 ( 9)
노인복지회관	13.2	21.1	31.6	23.7	10.5	-	100.0 (38)
기타	16.7	33.3	-	16.7	16.7	16.7	100.0 ( 6)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	-	10.5	15.8	52.6	21.1	100.0 (19)
시·군·구 위탁운영	-	12.8	23.4	34.0	23.4	6.4	100.0 (47)
기타(시·군·구 직영)	26.1	30.4	13.0	21.7	4.3	4.3	100.0 (23)
시설규모							
1,000㎡ 미만	9.5	28.6	23.8	28.6	9.5	-	100.0 (21)
1,000㎡~1,500㎡ 미만	-	23.8	28.6	33.3	9.5	4.8	100.0 (21)
1,500㎡~2,000㎡ 미만	11.8	5.9	23.5	23.5	35.3	-	100.0 (17)
2,000㎡ 이상	6.7	3.3	3.3	23.3	40.0	23.3	100.0 (30)

주: 무응답 13개소 제외

<표 4-29>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일반세입액은 평균 4억 4524만원이며, 이중 국고 및 지방비의 정부보조금이 3억 730만원, 사업수입 6492만원, 법인지원 3496만원, 후원금 1516만원, 기타 2291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8억 7429만원인데 비하여, 광역시와 도지역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즉, 정규예산규모에서도 서울시와 지방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4-29> 지역별 정규 예산내역별 평균예산(2001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b>세입액</b>				
정부보조	65,529.8	21,463.6	21,498.9	30,729.5
사업수입	11,200.8	6,538.5	4,462.3	6,491.8
후원금	2,888.7	1,146.9	1,154.0	1,516.0
법인지원	5,803.5	3,481.8	2,523.4	3,495.8
기타	2,006.5	4,612.4	1,019.5	2,291.2
세입합계	87,429.3	37,243.3	30,658.2	44,524.2
(N)	(17)	(24)	(40)	(81)
<b>세출액</b>				
인건비	46,473.1	22,573.5	17,558.7	25,113.0
재산조성비(시설비)	6,316.5	1,722.3	3,060.8	3,347.5
사업비	29,116.1	9,458.4	9,501.0	13,605.1
기타	5,297.1	2,499.0	693.5	2,194.7
세출합계	87,202.7	36,253.2	30,814.0	44,260.3
(N)	(17)	(24)	(40)	(81)

주: 무응답(13개소) 시설과 별도 운영예산이 없는 시설(6개소), 개별 항목별 예산이 무응답인 시설(1개소), 개별 항목별 예산액이 99997만원 이상인 시설(1개소)은 제외하였음.

<표 4-30>에서 일반세입예산에 대한 세입항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국고 및 지방비의 정부보조금 비율이 69.3%이며, 법인지원금이 11.7%, 사업수입금이 10.6%, 기타가 4.9%, 후원금은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 비율이 서울시는 74.1%, 광역시는 59.5%, 도지역은 73.1%로 나타나서, 광역시의 경우 정부보조금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법인지원 비율은 20.0%로 타지역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이는 타지역에 비하여 지방보조금에 의한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는 시(廣域市)에서 위탁받은 시설은 일반운영비를 대부분 지원받고 있으나 구(區)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는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설의 경우는 대규모 시설에도 불구하고 법인보조금 또는 단위사업비에 의해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재정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국고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세출예산액은 평균 4억 4260만원으로 인건비 2억 5113만원, 사업비 1억 3605만원, 재산조성비(시설비) 3348만원, 기타 2195만원이다. 총세출액에 대한 인건비의 평균 비율은 57.3%이며, 사업비 30.0%, 재산조성비(시설비) 8.4%, 기타 4.3%으로 세출항목별 비율은 지역간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표 4-30〉 정규사업 예산액 대비 세입·세출 항목별 평균비율(2001년 기준)  
(단위: %)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세입액				
정부보조	74.1	59.5	73.1	69.3
사업수입	11.2	10.1	10.7	10.6
후원금	3.1	4.2	3.2	3.5
법인지원	9.7	20.0	7.7	11.7
기타	1.9	6.2	5.3	4.9
세출액				
인건비	53.6	62.0	56.1	57.3
재산조성비(시설비)	8.3	5.9	10.0	8.4
사업비	31.7	28.5	30.2	30.0
기타	6.5	3.6	3.7	4.3
계	100.0	100.0	100.0	100.0
(N) <sup>1)</sup>	(17)	(24)	(40)	(81)

주: 1) 무응답(13개소) 시설과 별도 운영예산이 없는 시설(6개소), 개별 항목별 예산이 무응답인 시설(1개소), 개별 항목별 예산액이 99997만원 이상인 시설(1개소)은 제외하였음.

## 2. 單位事業豫算

단위사업예산이란 일반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국고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으로 5천만원 미만인 20.5%이며, 5천만~1억원 미만 13.6% 등이며, 별도 단위사업비가 없는 시설이 44.3%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총괄지원 되므로 별도의 단위사업비를 지원 받는 시설이 적은 편이다(표 4-31 참조). 한편 재정현황에서 세입액에 대하여 일반운영비와 단위사업비를 정확히 구분되어 있거나 국고 시·도, 시·군·구의 보조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단위사업비가 정규예산의 국고 또는

시·도 보조금으로 포함된 경우가 있어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표 4-31〉 지역별 2001년도 단위사업 세입예산

(단위: %)

구분	별도 운영예산 없음	5천만원 미만	5천만 ~1억원 미만	1억~1억 5천만원 미만	1억5천만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계 (N)
전체 <sup>1)</sup>	44.3	20.5	13.6	6.8	8.0	6.8	100.0 (88)
지역							
서울특별시	55.6	11.1	11.1	-	11.1	11.1	100.0 (18)
6대 광역시	28.0	24.0	16.0	12.0	12.0	8.0	100.0 (25)
9개 도지역	48.9	22.2	13.3	6.7	4.4	4.4	100.0 (45)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46.4	17.9	14.3	7.1	10.7	3.6	100.0 (28)
노인복지관	42.9	28.6	14.3	-	-	14.3	100.0 ( 7)
노인종합복지회관	22.2	11.1	11.1	33.3	-	22.2	100.0 ( 9)
노인복지회관	42.1	23.7	15.8	2.6	10.5	5.3	100.0 (38)
기타	83.3	16.7	-	-	-	-	100.0 ( 6)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52.6	10.5	21.1	-	5.3	10.5	100.0 (19)
시·군·구 위탁운영	34.0	23.4	14.9	10.6	12.8	4.3	100.0 (47)
기타(시·군·구 직영)	59.1	22.7	4.5	4.5	-	9.1	100.0 (22)
시설규모							
1,000㎡ 미만	35.0	20.0	25.0	5.0	5.0	10.0	100.0 (20)
1,000㎡~1,500㎡ 미만	42.9	28.6	9.5	9.5	9.5	-	100.0 (21)
1,500㎡~2,000㎡ 미만	41.2	17.6	11.8	5.9	17.6	5.9	100.0 (17)
2,000㎡ 이상	53.3	16.7	10.0	6.7	3.3	10.0	100.0 (30)

주: 1) 무응답 14개소 제외

단위사업예산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위사업예산액은 평균1억 2082만원이며, 이 중 국고 및 지방비의 정부보조금이 1억 1018만원으로 총액대비 비율이 91.1%이다. 단위사업비는 사업비지출(48.0%) 비율이 인건비지출(44.4%) 비율 보다 더 높으며, 특히 광역시와 도지역의 경우 단위사업비중 사업비지출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4-32, 표 4-33 참조).

〈표 4-32〉 지역별 단위(특별)사업 예산내역별 평균예산(2001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sup>1)</sup>
<b>세입액</b>				
정부보조	13,389.1	12,965.6	8,561.4	11,017.6
사업수입	367.5	200.4	102.9	183.6
후원금	0.0	615.3	75.8	265.5
법인지원	378.4	281.3	152.9	238.6
기타	537.0	230.0	438.1	376.5
세입합계	14,672.0	14,292.7	9,331.0	12,081.8
(N)	( 8)	(18)	(22)	(48)
<b>세출액</b>				
인건비	8,976.9	5,284.0	2,883.5	4,799.5
재산조성비(시설비)	679.5	624.4	1,282.8	935.4
사업비	4,689.6	8,062.7	4,984.3	6,089.6
기타	326.0	186.6	180.5	207.0
세출합계	14,672.0	14,158.4	9,331.1	12,031.5
(N)	( 8)	(18)	(22)	(48)

주: 1) 무응답 시설과(14개소) 별도의 단위사업예산이 없는 시설40개소 제외함.

〈표 4-33〉 단위사업 예산액 대비 세입·세출 항목별 평균 비율(2001년 기준)

(단위: %)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sup>1)</sup>
<b>세입액</b>				
정부보조	90.3	90.1	92.2	91.1
사업수입	1.6	1.6	1.6	1.6
후원금	0.0	3.9	0.8	1.8
법인지원	2.2	2.1	1.0	1.6
기타	5.9	2.3	4.4	3.9
<b>세출액</b>				
인건비	44.4	46.6	42.5	44.4
재산조성비(시설비)	20.7	1.4	4.7	6.2
사업비	33.0	50.6	51.5	48.0
기타	1.9	1.4	1.3	1.4
계	100.0	100.0	100.0	100.0
(N)	( 8)	(18)	(22)	(48)

주: 1) 무응답 시설과(14개소) 별도의 단위사업예산이 없는 시설40개소 제외함.

### 3. 施設 總豫算

정규사업예산과 단위사업예산을 포함한 시설총예산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의 시설이 19.5%이며, 1억~2억원 미만은 10.3%, 2억~5억원 미만은 31.0%, 5억~10억원 미만은 25.3%, 10억원 이상 13.8% 등으로 2억~5억원 미만의 예산규모가 가장 많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5억원 이상인 시설이 94.5%인데 비하여, 광역시와 도지역은 2억~5억원의 시설이 각각 45.8%와 33.3%로 가장 많으며, 2억원 미만의 시설이 각각 29.2%와 43.2%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총 예산의 규모가 5억 이상인 시설이 약 3/4정도인데 비하여, 노인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억~5억 미만이 각각 42.9%, 44.4%로 가장 많다. 한편 위탁주체

〈표 4-34〉 지역별 2001년도 시설 총세입예산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2억원 미만	2~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계 (N)
전체 <sup>1)</sup>	19.5	10.3	31.0	25.3	13.8	100.0 (87)
지역						
서울특별시	-	-	5.6	55.6	38.9	100.0 (18)
6대 광역시	12.5	16.7	45.8	8.3	16.7	100.0 (24)
9개 도지역	32.1	11.1	33.3	22.2	2.2	100.0 (45)
시설명칭						
노인종합복지관	-	7.1	17.9	42.9	32.1	100.0 (28)
노인복지관	28.6	-	42.9	28.6	-	100.0 (7)
노인종합복지회관	11.1	-	44.4	33.3	11.1	100.0 (9)
노인복지회관	29.7	18.9	37.8	10.8	2.7	100.0 (37)
기타	19.5	10.3	31.0	25.3	13.8	100.0 (6)
시설운영형태						
시·도 위탁운영	-	5.3	15.8	36.8	42.1	100.0 (19)
시·군·구 위탁운영	10.9	13.0	41.3	28.3	6.5	100.0 (46)
기타(시·군·구 직영)	54.6	9.1	22.7	9.1	4.5	100.0 (22)
시설규모						
1,000㎡ 미만	35.0	20.0	25.0	15.0	5.0	100.0 (20)
1,000㎡~1,500㎡ 미만	23.8	9.5	52.4	9.5	4.8	100.0 (21)
1,500㎡~2,000㎡ 미만	11.8	11.8	41.2	35.3	-	100.0 (17)
2,000㎡ 이상	10.3	3.4	13.8	37.9	34.5	100.0 (29)

주: 1) 무응답 15개소 제외

별로 살펴보면 시·도 위탁시설은 5억 이상이 약 80%정도인데, 시·군·구 위탁은 2억~5억미만이 41.3%이며, 시·군·구 직영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시설은 1억 원 미만의 시설이 54.6%이다. 시설규모가 클수록 세입예산도 대체로 증가하는 편이다. 즉, 일반특성별 총세입예산액 규모는 일반세입예산과 비슷한 경향이다

〈표 4-35〉 지역별 총예산내역별 평균예산(2001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b>세입액</b>				
정부보조	70,819.2	31,125.3	25,314.7	36,727.6
국고	7,636.2	3,282.2	2,956.2	4,048.5
시·도	42,442.4	8,593.8	13,232.5	18,048.0
시·군·구	20,740.6	19,249.4	9,126.1	14,631.2
사업수입	11,373.8	6,688.9	4,535.0	6,634.4
후원금	2,888.7	1,608.4	1,162.2	1,663.0
법인지원	5,981.6	3,692.8	2,538.4	3,616.4
기타	2,259.2	4,784.9	1,123.8	2,463.4
세입합계	93,322.5	47,900.3	34,674.1	51,104.8
(N)	(17)	(24)	(39)	(80)
<b>세출액</b>				
인건비	50,697.5	26,501.2	18,986.9	27,979.7
재산조성비(시설비)	6,606.8	2,190.7	3,639.0	3,835.2
사업비	30,352.6	15,490.8	11,182.2	16,548.5
기타	5,439.0	2,639.0	809.8	2,342.3
세출합계	93,095.9	46,821.6	34,617.9	50,705.6
(N)	(17)	(24)	(39)	(80)

주: 1) 세입·세출 항목별 무응답 시설 제외

시설 총예산액은 평균 5억 1105만원이며, 정부보조금이 3억 6728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4049만원, 시·도보조금이 1억 8048만원, 시·군·구 1억 4631만원이다(표 4-35 참조). 총세입액 대비 정부보조금의 비율은 71.8%이며, 법인지원 10.1%, 사업수입 10.0%, 후원금 3.3% 등이며, 총 세출액 중 인건비 비율이 54.8%이며, 사업비 33.1%, 재산조성비(시설비) 7.9%, 기타 4.2% 등이다(표 4-36 참조).

〈표 4-36〉 시설총예산액 대비 세입·세출 항목별 평균 비율(2001년 기준)  
(단위: %)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sup>1)</sup>
<b>세입액</b>				
정부보조	75.2	65.5	74.3	71.8
국고	9.9	6.1	8.3	8.0
시·도	45.8	13.5	31.6	29.2
시·군·구	19.5	45.8	34.2	34.6
사업수입	10.5	9.2	10.2	10.0
후원금	2.9	4.0	3.1	3.3
법인지원	9.3	15.8	7.0	10.1
기타	2.0	5.5	5.5	4.8
<b>세출액</b>				
인건비	54.6	57.9	52.9	54.8
재산조성비(시설비)	8.2	5.4	9.4	7.9
사업비	30.8	33.3	34.1	33.1
기타	6.4	3.4	3.7	4.2
계	100.0	100.0	100.0	100.0
(N)	(17)	(24)	(39)	(80)

주: 1) 세입·세출 항목별 무응답 시설 제외

정부보조금 중 국고는 주로 재가복지시설의 병행 실시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 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또는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시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시설당 국고 예산지원기준액을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7950만원, 주간보호사업은 5350만원, 단기보호사업은 6400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37 참조).

〈표 4-37〉 단위사업별 국고 예산지원기준액(2002년)  
(단위: 천원)

구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기준	79,500	53,500	64,000	20,000
우수시설	82,000	56,000	66,500	20,000
신규시설	77,000	51,000	51,500	20,000

자료: 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2.

## 第 6 節 職員現況

### 1. 老人福祉會館의 職員現況

#### 가. 직원규모 및 근로형태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를 살펴보면 시설당 평균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6.3명, 6대 광역시는 11.7명, 9개 도지역은 8.9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서울의 18개 시설 중 14개 시설은 20~29명이며, 2개의 시설은 35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그 규모가 전국평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광역시 단위에 있어서는 7~9명, 10~14명의 시설이 각각 8개소로 모두 16개소로 나타났으며, 20명을 넘는 시설은 4곳에 불과하였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지역은 전체 56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직원이 없는 곳이 3개소, 5명 이하가 21개소, 7~9명이 9개소로 50% 이상의 시설이 9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명 이상의 시설은 56개 시설 중 5개소에 불과하였다.

조사된 노인복지회관 102개소 중 직원이 6명 이하인 시설이 전체시설의 29.4%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의 최소 직원수 7명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그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복지회관 30개소이며, 직원이 없는 시설도 있었다.

또한 서울과 광역시, 도 지역간에는 직원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서울의 경우는 대부분이 20명 이상의 시설이며, 광역시의 경우는 6명 이하의 시설부터 30명인 시설까지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지만 14명 이하의 시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도 지역 또한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9명 이하 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노인복지회관이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원 수준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38〉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전체직원수 분포

(단위: %, 개소, 명)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없음	-	-	5.4	2.9
1~ 6명	-	21.4	37.5	26.5
7~ 9명	-	28.6	16.1	16.7
10~14명	11.1	28.6	17.9	19.6
15~19명	-	7.1	14.3	9.8
20~24명	33.3	3.6	5.4	9.8
25~29명	44.4	3.6	1.8	9.8
30~34명	-	7.1	1.8	2.9
35명 이상	11.2	-	-	2.0
계	100.0	100.0	100.0	100.0
(N)	(18)	(28)	(56)	(102)
1개소당 평균직원수	26.3	11.7	8.9	12.7

정규직원의 비율은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안정성을 반영한다. 전체직원 중 정규직원의 평균 비율은 82.3%로 정규직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5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93.0%가 정규직으로 전국수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정규직원 비율을 보이며 광역시는 88.4%, 도지역은 75.4%로 나타난다. 서울의 노인복지회관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정규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광역시와 도지역의 경우는 서울에 비해 직원의 근로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지역의 경우 전체직원 중 직원모두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5개소로 나타나며, 직원 중 정규직 비율이 50%미만인 시설은 8개소로 나타났다.

시설의 정규직 분포 또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경우는 직원의 규모가 비교적 대규모인 시설이 많고 정규직 비율도 높지만 광역시와 도지역은 직원의 규모가 15명 미만의 소규모의 시설이 많으며 또한 서울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안정성은 서울시가 광역시와 도지역에 비해 더 안정적임을 반영한다.

〈표 4-39〉 지역별 전체직원 대비 정규직원 비율<sup>1)</sup>

(단위: %, 개소)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없음	-	-	9.4	5.1
10% 미만	-	-	-	-
10~20% 미만	-	-	1.9	1.0
20~30% 미만	-	7.1	-	2.0
30~40% 미만	-	-	1.9	1.0
40~50% 미만	-	-	1.9	1.0
50~60% 미만	-	-	3.8	2.0
60~70% 미만	5.6	-	7.5	5.1
70~80% 미만	-	7.1	11.3	8.1
80~90% 미만	16.7	17.9	22.6	20.2
90~100% 미만	50.0	17.5	3.8	16.2
100%	27.8	50.0	35.8	38.4
계 <sup>1)</sup>	100.0	100.0	100.0	100.0
(N)	( 18)	( 28)	( 56)	(102)
평균 정규직원비율	93.0	88.4	75.4	82.3

주: 1) 무응답 3개소 제외

나. 직원의 일반적 특성<sup>13)</sup>

노인복지회관의 1,131명 직원의 성·학력·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4-40>과 같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59.9%로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은 여자가 63.1%, 광역시는 55.7%, 도지역은 59.2%로 서울지역 노인복지회관의 여직원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회관의 여직원이 많은 것은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의 실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은 71.9%이며, 대학교 이상의 학력은 55.9%로 나타났다. 지역별 직원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대학교 이상이 63.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이 18.0%로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지역 또한 대학 이상이 60.7%로 서울에

13) 노인복지회관 시설조사 내용 중 전체직원수는 기록하였으나 직원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시설(미기록비율 14.5%)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나머지 시설의 1,131명의 직원에 대한 분석결과임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16.2%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지역은 대학 이상이 45.5%로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 약 15%포인트 가량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비율도 12.1%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노인복지회관 직원은 지역별로 볼 때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대학 이상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도지역의 경우 약 45%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이는 도지역으로 갈수록 고급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우며,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28.6%이며, 30대가 26.0%로 20~30대의 젊은 직원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40대의 직원은 18.1%로 나타나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은 20~40대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직원이 13.7%로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이하게 발견된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20대 직원이 35.7%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30대가 25.8%로 나타나 약 60% 이상이 20~30대의 젊은 직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40대의 직원은 18.8%로 나타나며, 70세 이상의 직원은 5.6%이다. 광역시의 경우 또한 20~40대의 직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50~60대는 13.3%이며 70세 이상은 10.6%로 서울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도지역의 경우 가장 특이한 점은 70세 이상의 직원이 23.1%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50~60대 직원이 12.9%로 50대 이상의 직원이 36.0%로 직원의 연령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도지역의 경우 대한노인회가 운영주체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한노인회와의 운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노인복지회관이 많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지역의 경우 직원이 고령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4-40〉 지역별 직원의 성·학력·연령 분포

(단위: %, 명)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성 <sup>1)</sup>				
남자	36.9	44.3	40.8	40.1
여자	63.1	55.7	59.2	59.9
학력 <sup>2)</sup>				
무학	-	0.4	-	0.1
초등학교	1.2	1.6	2.1	1.6
중학교	4.3	3.6	5.1	4.5
고등학교	21.1	16.2	26.2	22.0
전문대학교	10.0	17.4	21.0	16.0
대학교	45.5	44.5	32.7	40.3
대학원 이상	18.0	16.2	12.1	15.3
기타	-	-	0.7	0.3
연령				
19세 이하	-	-	0.2	0.1
20~29세	35.7	26.7	23.1	28.6
30~39세	25.8	29.8	24.0	26.0
40~49세	18.8	19.6	16.7	18.1
50~59세	8.5	9.4	8.0	8.5
60~69세	5.6	3.9	4.9	5.0
70세 이상	5.6	10.6	23.1	13.7
계	100.0	100.0	100.0	100.0
(N)	( 426)	( 255)	( 450)	(1,131)

주: 1) 무응답 1명 제외

2) 무응답 34명 제외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봉수준을 살펴보면 1000~1500만원 미만이 42.9%이며, 1500~2000만원 미만의 직원은 22.3%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의 연봉은 정부기준에 의해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이 20~30대의 젊은 직원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연봉수준 또한 2000만원 미만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연봉수준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1000만~2000만원의 비율이 75.1%이며, 광역시는 59.7%, 도지역은 58.9%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20~30대의 젊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의 직원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1%, 광역시는 14.9%, 도지역은 17.1%로 도지역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봉체계는 대부분 연령에 의한 호봉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도지역일수록 연령이 높은 직원이 많음으로 인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4-41> 지역별 직원의 연봉수준

(단위: %, 명)

연봉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500만원 미만	4.2	2.0	3.8	3.5
500만 ~ 999만원	6.6	10.6	12.7	9.9
1,000만 ~ 1,499만원	48.6	37.3	40.7	42.9
1,500만 ~ 1,999만원	26.5	22.4	18.2	22.3
2,000만 ~ 2,499만원	7.0	9.4	5.1	6.8
2,500만 ~ 2,999만원	4.9	3.5	2.4	3.6
3,000만원 이상	2.1	14.9	17.1	11.0
계	100.0	100.0	100.0	100.0
(N)	(426)	(255)	(450)	(1,131)

노인복지회관 직원 인건비의 출처에 따른 비율을 국고와 지방비 법인지원별로 살펴보면 <표 4-42>와 같다.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지원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설에서 국고지원사업인 재가복지사업 또는 취업알선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를 받는 직원의 경우는 이와 같은 별도의 단위사업 담당자이다. 노인복지회관 직원 중 전액국고보조를 받는 직원은 전체의 3.9%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4.3%, 광역시가 1.4%, 도지역은 4.8%로 나타났다. 전체직원의 약 90%는 국고보조를 전혀 받지 않으며 서울시는 93.6%, 광역시는 86.5%, 도지역은 87.9%로 이는 전체직원 중에서 단위사업 담당직원의 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경우는 단위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자체의 지원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평균 이상의 직원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광역시와 도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지원예산이 적기 때문에 단위사업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고보조를 지원받는

직원의 비율이 서울시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직원인건비의 지방비 지원율을 살펴보면 지방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직원의 비율은 서울시가 12.5%, 광역시가 17.7%, 도지역이 12.8%로 나타났으며, 전액 또는 90% 이상이 지방비에서 지원을 받는 비율은 서울시가 78.0%, 광역시는 50.7%, 도지역은 65.9%로 나타났다.

인건비의 법인지원이 전혀 없는 시설의 비율은 전체 56.3%이며, 서울시는 40.9%, 광역시 57.7%, 도지역은 71.4%로 나타났다. 전액법인지원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비율은 서울시가 6.4%, 광역시가 15.8%, 도지역이 7.7%로 광역시의 노인복지회관 직원중 법인지원금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비율이 높다. 노인복지회관 인건비의 법인지원금은 대부분 4대보험이나 퇴직적립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10%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역별 노인복지회관의 인건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 경우 지방비 지원에 의한 인건비의 비율이 높았으며 도지역의 경우는 타지역보다 지방비 지원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국고보조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서울시와 도지역과는 달리 법인지원에 의한 인건비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회관의 인건비는 직원의 업무내용에 따라 그 재원이 국고지방비, 법인지원 등으로 나뉘어지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표 4-42〉 지역별 인건비의 국비·지방비·법인지원의 비율

(단위: %, 명)

구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국고지원률				
없음	93.6	86.5	87.9	89.9
50% 미만	-	6.9	4.1	3.1
50~90% 미만	2.1	5.1	3.1	3.2
전액지원	4.3	1.4	4.8	3.9
지방비지원율				
없음	12.5	17.7	12.8	13.7
50% 미만	-	1.9	0.5	0.6
50~70% 미만	1.1	14.4	5.3	5.5
70~90% 미만	8.3	14.4	15.5	12.6
90~100% 미만	41.6	4.7	6.3	20.2
전액지원	36.4	46.0	59.6	47.5
법인지원율				
없음	40.9	57.7	71.4	56.3
10% 미만	39.2	1.9	1.0	16.6
10~20% 미만	10.4	5.1	5.6	7.4
20~30% 미만	2.1	14.4	13.1	8.9
30~90% 미만	1.0	5.1	1.2	2.0
전액지원	6.4	15.8	7.7	8.8
계	100.0	100.0	100.0	100.0
(N)	( 423)	( 215)	( 413)	(1,051) <sup>1)</sup>

주: 1) 무응답 80명 제외

현 시설에 근무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직원이 27.8%이며, 1~3년 미만의 직원이 48.1%로 3년 미만의 직원이 75.9%로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유는 노인복지회관이 최근에 급격하게 그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현재 시설에 근무한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1년 미만이 25.0%, 1~3년 미만이 52.0%로 나타난다. 이 또한 최근 서울에 노인복지회관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1년 미만의 직원이 33.7%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3〉 지역별 현시설 근무기간

(단위: %, 명)

근무기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1년 미만	25.0	33.7	26.9	27.8
1~3년 미만	52.0	42.8	47.5	48.1
3~5년 미만	14.0	15.2	13.9	14.3
5~7년 미만	5.5	5.0	8.0	6.0
7~9년 미만	2.1	3.3	2.3	2.4
9년 이상	1.5	-	1.5	1.2
계	100.0	100.0	100.0	100.0
(N)	( 400)	( 243)	( 398)	(1,041) <sup>1)</sup>

주: 1) 무응답 90명 제외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직원이 34.1%로 높게 나타나며, 1~3년 미만의 직원이 26.6%로 나타난다. 노인복지회관의 현 시설 근무기간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직원이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이 첫 번째 근무시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의 연령이 젊은것을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역시 지역의 노인복지회관 직원들의 1년 미만의 사회복지 관련시설 근무기간의 비율이 44.3%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노인복지회관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이 첫 번째 직장생활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직원관리에 있어 직장생활에 대한 적응훈련과 사회복지관련 지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이다

〈표 4-44〉 지역별 사회복지관련시설 근무기간

(단위: %, 명)

관련시설근무기간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1년 미만	28.4	44.3	33.7	34.1
1~3년 미만	29.8	16.6	29.3	26.6
3~5년 미만	20.3	12.4	16.4	17.0
5~7년 미만	8.3	8.5	7.0	7.9
7~9년 미만	4.9	6.2	4.7	5.2
9년 이상	8.3	11.9	8.8	9.3
계	100.0	100.0	100.0	100.0
(N)	(349)	(210)	(341)	(900) <sup>1)</sup>

주: 1) 무응답 231명 제외

노인복지회관의 직원들의 자격증별 소지율을 살펴보면 전체직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비율은 42.3%이며, 물리치료사는 6.2%, 간호(조무)사는 5.8%로 나타났다. 자격증이 없는 비율은 31.2%이며, 지역별로 볼 때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 도지역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 비율이 36.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에서도 급수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1급 자격증이 44.1%인 반면 광역시는 41.8%, 도지역은 30.2%로 도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6.4%, 광역시는 5.3%, 도지역은 5.5%로 서울시가 높게 나타난 반면 물리치료사의 비율은 서울시에 비해 광역시와 도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전문인력의 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하고 이는 학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울시는 고학력의 직원들이 많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도 지역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비율이 낮으며, 기타 전문직 자격증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은 직원의 학력과 연령을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고학력의 비율이 낮고 고연령의 비율이 높음으로 인하여 전문인력의 비율이 낮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4-45〉 지역별 직원 자격증 소지율

(단위: %, 명)

자격증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없음	27.4	28.7	36.4	31.2
사회복지사 1급	44.1	41.8	30.2	38.1
사회복지사 2급	1.9	6.1	4.1	3.7
사회복지사 3급	-	0.8	0.7	0.5
의사	2.8	1.2	0.9	1.7
간호사	5.2	4.1	4.6	4.7
간호조무사	1.2	1.2	0.9	1.1
물리치료사	5.0	6.1	7.4	6.2
영양사	2.8	1.6	2.3	2.4
조리사	3.5	3.7	4.4	3.9
전기기사	0.9	2.5	2.3	1.8
소방자격증	5.0	1.2	3.0	3.4
보육교사	0.2	-	1.2	0.5
미용사	-	0.8	1.4	0.7
상담사	-	-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N)	( 424)	( 244)	( 434)	(1,102) <sup>1)</sup>

주: 1) 무응답 29명 제외

2. 老人福祉會館 職員의 勤務特性<sup>14)</sup>

## 가. 업무 시간 투여비율 및 근무시간

직원의 직책별 업무시간 평균 투여비율을 살펴보면 부장과 과장의 경우 행정적 업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각각 평균33.3%와 26.2%이며, 지원업무는 21.3%와 20.1%로 나타난다. 또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여하는 비율은 부장은 18.7%이며, 과장은 18.8%이며, 선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의 경우

14)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1,300명 중 사무원 생활보조원 간병인, 조리·취사원, 관리인, 운전기사, 보일러 기사 등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개별조사로 총 572명의 응답자에 대한 근무시간과 직무만족도, 개선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분석결과 성, 연령, 최종학력, 자격증, 결혼, 종교, 근로형태 등의 독립변수에 따른 차이가 무의미하게 나타남으로 직책에 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음

는 19.1%와 15.8%로 나타났다. 서비스와 관련된 시간의 투여비율을 보면 부장과 과장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선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의 경우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지역사회연계사업과 관련해서는 선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비율이 다른 직책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직책별 업무내용의 비율을 살펴보면 부장이나 과장의 경우 행정적 업무와 지원업무에 투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선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프로그램 관련 업무와 서비스, 지역사회연계사업과 관련한 비율이 높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서비스에 투여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46〉 직책별 업무시간 평균 투여비율

(단위: %,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간호사	기능교사	기타	전체
프로그램	18.7	18.8	19.1	15.8	8.4	13.9	27.5	14.8	15.9
서비스	12.9	20.6	33.1	42.0	50.4	49.9	27.5	30.1	36.5
지역사회연계	10.8	11.0	13.3	15.4	5.7	9.5	16.3	10.7	12.8
지원업무	21.3	20.1	9.3	5.4	4.7	6.3	5.3	7.6	8.5
행정적업무	33.3	26.2	24.1	17.7	11.9	12.2	19.8	26.6	20.6
기타	3.1	3.3	1.0	3.6	18.9	8.3	3.8	10.2	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sup>1)</sup>	(34)	(55)	(35)	(255)	(35)	(36)	(4)	(82)	(536)

주: 1) 무응답 제외

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전체직원의 근무시간이 평균 50.1시간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근무시간을 비교할 때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비율이 17.0%로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직책별 주평균 근무시간

(단위: %,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간호사	기능교사	기타	전체
40시간 미만	6.3	1.9	3.1	2.0	2.5	2.6	-	6.4	3.1
40~45시간 미만	31.3	21.2	21.9	13.0	37.5	33.3	-	29.5	21.2
45~50시간 미만	15.6	13.5	34.4	24.0	35.0	33.3	25.0	25.6	24.9
50~55시간 미만	21.9	30.8	25.0	31.3	17.5	23.1	25.0	28.2	28.1
55~60시간 미만	12.5	19.2	6.3	12.6	7.5	7.7	25.0	1.3	10.5
60~65시간 미만	6.3	11.5	3.1	12.6	--	--	-	5.1	8.4
65~70시간 미만	3.1	1.9	3.1	1.6	-	-	-	2.6	1.9
70시간 이상	3.1	-	3.1	2.8	-	-	25.0	1.3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 32)	( 52)	( 32)	(246)	( 40)	( 39)	( 4)	( 78)	(523)
주평균근무시간	49.4	51.0	48.5	51.7	47.1	47.7	55.8	47.8	50.1

#### 나. 업무만족도

직원의 업무만족도를 살펴보면 1~5점으로 5점은 매우 불만족이며, 1점은 매우 만족하는 것이다.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이며, 복리후생은 3.3점으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동료·상사·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 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급여와 복리후생과 같은 근로조건에 불만족하고 있는 결과를 반영한다. 직책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의한 업무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급여에 만족하는 수준이 낮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복리후생에 만족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남자가 가정에서 대부분 가정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급여의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자의 경우는 출산이나 휴가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과 근로형태에서는 업무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8〉 직책별 업무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	물리	간호사	기능교사	기타	전체
			사회복지사	복지사	치료사				
급여	3.9	3.6	3.6	3.8	3.7	3.4	2.8	3.1	3.6
업무내용	2.4	2.6	2.6	2.6	2.4	2.6	2.3	2.6	2.5
업무량	2.7	2.9	3.0	3.1	2.8	2.9	2.8	2.8	3.0
복리후생	3.2	3.2	3.4	3.4	3.2	3.3	3.3	2.9	3.3
동료와의 관계	2.1	2.2	2.2	2.2	2.2	2.2	2.5	2.2	2.2
상사와의 관계	2.3	2.3	2.5	2.5	2.5	2.4	3.3	2.3	2.4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2.1	2.2	2.1	2.1	2.1	2.1	2.5	2.3	2.1

〈표 4-49〉 성·연령·근로형태별 업무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성		연령				근로형태					전체
	남자	여자	30세	30~40세	40~50세	50세	정규	계약	임시	일용	기타	
			미만	미만	미만	이상						
급여	3.7	3.6	3.7	3.6	3.4	3.4	3.7	3.4	2.5	3.7	3.0	3.6
업무내용	2.5	2.6	2.6	2.5	2.5	2.7	2.5	2.5	2.5	2.3	2.5	2.5
업무량	3.0	2.9	3.0	2.9	2.8	3.0	3.0	2.9	2.0	2.8	3.0	2.9
복리후생	3.2	3.3	3.7	3.3	3.0	3.3	3.3	3.3	2.5	3.4	3.0	3.3
동료와의 관계	2.2	2.2	2.2	2.2	2.1	2.3	2.2	2.0	2.0	2.7	2.0	2.2
상사와의 관계	2.4	2.5	2.5	2.4	2.3	2.5	2.4	2.4	2.0	2.3	2.5	2.4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2.1	2.1	2.1	2.1	2.1	2.4	2.1	1.9	2.0	2.0	2.5	2.1

다. 이직관련 사항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는 것과 시설차원에서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손실이다.

노인복지회관 직원의 이직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면 이직을 하고 싶은 비율은 전체의 52.9%로 절반가량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약 10%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직을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저임금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망이 없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업무만족도에서도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이직을 생각한 적이 없는

비율이 부장, 과장과 간호사의 경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교적 높은 직책에 자리를 잡았거나, 비교적 시설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선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의 경우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는 급여보다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과 전망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저임금, 물리치료사의 경우 또한 저임금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전망이 없는 이유를 들고 있다

〈표 4-50〉 직책별 이직희망률과 이유

(단위: %,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기능 교사	간호사	기타	전체
이직									
생각한적 없음	45.7	46.3	31.4	39.5	37.8	50.0	46.5	63.9	44.2
이직하고 싶으나 구체적 실천없음	51.4	44.4	51.4	44.6	40.0	-	41.9	32.5	42.7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2.9	7.4	17.1	12.8	11.1	50.0	9.3	2.4	10.2
기타	-	1.9	-	3.1	11.1	-	2.3	1.2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5)	(54)	(35)	(258)	(45)	(4)	(43)	(83)	(557)
이직 이유									
업무과중	-	3.8	13.6	9.1	-	-	-	4.0	6.7
저임금	69.2	46.2	13.6	31.8	35.3	100.0	9.1	36.0	33.8
업무내용 불만족	7.7	11.5	4.5	13.6	-	-	18.2	16.0	11.6
전문성 인정못받음	-	11.5	22.7	11.8	29.4	-	36.4	24.0	16.0
전망이 없음	7.7	19.2	31.8	11.8	29.4	-	27.3	16.0	16.9
자기계발위해	7.7	3.8	9.1	3.6	5.9	-	-	-	4.0
조직운영불만족	7.7	-	-	3.6	-	-	-	-	2.2
기타	-	3.8	4.5	14.5	-	-	9.1	4.0	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	(26)	(22)	(110)	(17)	(1)	(11)	(25)	(225)

## 라. 교육·훈련

노인복지회관 직원의 지난1년간 교육·훈련경험은 전체의 65.1%가 훈련경험이 있으며, 부장급은 66.7%, 과장급은 82.0%, 선임사회복지사는 74.3%, 사회복지사는 68.3%이며, 물리치료사는 61.0%, 간호사는 59.5%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이 높을수록 교육경험률이 높으며, 또한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의 경우 타 전문직책에 비해 교육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직책별 교육·훈련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기능 교사	간호사	기타	전체
<b>교육경험</b>									
있음	66.7	82.0	74.3	68.3	61.0	25.0	59.5	46.9	65.1
없음	33.3	18.0	25.7	31.7	39.0	75.0	40.5	53.1	3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 36)	( 50)	( 35)	(249)	( 41)	( 4)	( 42)	( 81)	(538)
<b>교육경험 없는 이유</b>									
과중한 업무	57.1	44.4	42.9	19.7	14.3	-	6.3	11.1	19.6
정보부재	14.3	-	14.3	14.1	7.1	66.7	18.8	8.3	12.9
시설지원 미비	14.3	33.3	14.3	29.6	35.7	33.3	37.5	30.6	30.1
자격미비	-	-	-	22.5	35.7	-	25.0	27.8	21.5
교육내용이 없음	14.3	11.1	14.3	7.0	-	-	6.3	13.9	8.6
기타	-	11.1	14.3	7.0	7.1	-	6.3	8.3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 7)	( 9)	( 7)	(71)	( 14)	( 3)	( 16)	( 36)	(163)
<b>교육훈련 받은 총횟수</b>									
5회 미만	55.6	63.6	71.4	55.8	37.8	25.0	52.3	39.3	53.1
5~9회	8.3	5.5	-	4.6	6.7	-	4.5	3.6	4.6
10~14회	2.8	-	2.9	1.2	-	-	-	-	0.9
15~19회	-	-	-	-	-	-	-	1.2	0.2
20회 이상	33.3	30.9	25.7	38.5	55.6	75.0	43.2	56.0	4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 24)	( 38)	( 26)	(161)	( 22)	( 1)	( 25)	( 37)	(334)
<b>도움이 된 프로그램</b>									
정보처리/통계	6.7	10.5	11.1	18.8	-	-	-	7.7	12.7
노인복지관련	33.3	10.5	-	11.8	7.1	-	30.0	15.4	13.9
시설운영	33.3	42.1	55.6	30.6	14.3	-	-	30.8	30.1
프로그램개발	6.7	10.5	-	5.9	-	100.0	-	-	5.4
임상교육	-	-	22.2	15.3	57.1	-	70.0	30.8	20.5
직원세미나	20.0	26.3	11.1	11.8	-	-	-	15.4	12.7
기타	-	-	-	5.9	21.4	-	-	-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 15)	( 19)	( 9)	( 85)	( 14)	( 1)	( 10)	( 13)	(166)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시설지원의 미비로 인한 경우가 30.1%이며, 자격미비 21.5%, 과중한 업무와 정보의 부재가 19.6%와 12.9%로 나타났다. 또한 적당한 교육내용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8.6%로 나타났다. 부장이나 과장급,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 과중한 업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반면,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사의 경우는 시설지원의 미비로 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교육받은 총횟수는 5회 미만이 53.1%이며, 20회 이상인 경우 또한 41.2%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내용 중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시설운영관련과 임상적 교육내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복지 전반에 관련된 내용과 정보처리와 통계에 관한 내용의 비율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1년간 교육의 횟수를 살펴보면 20회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참석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직원들이 '교육'의 개념을 직원세미나 또는 일회적인 모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어 가시적으로 교육에 참석한 횟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적인 보수교육이 아닌 일회적인 교육내용이 주를 이루므로써 직원들의 자질개발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정도는 알 수 없다.

교육·훈련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영역별 교육내용과 교육기회 확충이 전체의 82.4%이며, 교육지원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24.3%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서 시설지원의 미비와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과 관련해서 교육지원환경의 확충을 통해 교육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의 교육내용은 일회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이 부족한 현실로서 영역별 다양한 교육내용을 구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직책별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부장과 과장,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 영역별 교육내용과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으며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교육지원환경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책별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이유를 고려해 볼 때 일선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가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교육비지출장발령, 대체 인력 지원 등의 여건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표 4-52〉 직책별 교육·훈련 개선사항(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간호사	기능교사	기타	전체
영역별 교육내용/기회확충	100.0	100.0	90.0	96.9	47.4	87.5	-	70.4	82.4
교육지원환경 마련	8.7	10.7	40.0	23.1	68.4	4.2	-	37.0	24.3
정보제공	8.7	10.7	20.0	13.1	-	-	-	-	9.6
교육방법 개발	13.0	7.1	10.0	3.1	-	-	-	7.4	4.8
기타	17.4	14.3	35.0	7.7	5.3	12.5	100.0	14.8	12.1
(대상자수)	( 23)	( 28)	( 20)	(130)	( 19)	( 24)	( 1)	( 27)	(272)

마. 업무수행의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노인복지회관 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46.2%가 과중한 업무를 지적하였으며 열악한 근무여건이 27.5%, 인력·자원봉사·기자재 등 자원부족의 비율이 18.7%로 차지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인 노인과 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이 15.1%로 나타났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부족 기관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문제 지역연계의 부족, 행정지침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족과 직원간 인간관계의 어려움 과중한 행정처리와 교육기회 부족, 예산 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부장과 과장급,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 업무의 과중과 열악한 근무여건, 예산부족에 대한 어려움의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사는 업무 과중과 열악한 근무여건, 자원의 부족과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의 경우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은 근무여건과 업무의 과중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느끼는 어려움의 내용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업무의 과중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노인과 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노인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직원의 소진을 초래할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에게 있어 업무의 량과 근무여건의 개선과 함께 직원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표 4-53〉 직책별 업무수행의 어려운 점(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간호사	기능 교사	기타	전체
노인과의 관계	11.1	16.7	17.9	16.2	13.8	12.5	100.0	8.7	15.1
업무과중	40.7	28.6	57.1	52.0	51.7	31.3	-	45.6	46.2
열악한 근무여건	29.6	26.2	17.9	27.4	62.1	28.1	-	13.0	27.5
자원부족	18.5	11.9	10.7	17.9	13.8	28.1	50.0	30.4	18.7
전문직 인식부족	11.1	16.7	10.7	17.9	2.8	3.1	-	6.5	14.0
기관운영의 비효율성	18.5	19.1	10.7	8.9	-	3.1	-	4.3	9.1
지역연계부족	7.4	14.3	25.0	12.3	6.9	6.2	-	8.7	11.7
행정지침부족	7.4	7.1	3.6	3.4	-	6.2	-	4.3	4.2
프로그램 부족	7.4	2.4	10.7	3.7	-	6.2	-	-	3.9
인간관계	-	2.4	3.6	6.1	6.9	15.6	-	2.2	5.5
행정처리 간소화	7.4	-	3.6	1.1	6.9	-	-	-	1.8
교육부족	7.4	-	-	4.5	-	-	-	2.2	2.9
예산부족	29.6	23.8	32.1	8.9	6.9	3.1	50.0	15.2	14.0
기타	11.1	7.1	3.6	5.0	-	-	-	17.4	6.2
(대상자수)	( 27)	( 42)	( 28)	(179)	( 29)	( 32)	( 2)	( 46)	(385)

성별에 따라 업무수행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여직원들이 남자에 비해 노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기관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어려움은 남자직원들이 관리직에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직책에서 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자직원들이 근무여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업무만족도에 서 여직원에 비해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결과와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54〉 성·연령·근로형태별 업무수행의 어려운 점(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근로형태				전체
	남자	여자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정규	계약	임시	일용	
노인과의 관계	8.9	17.9	10.1	18.9	20.5	20.0	15.0	11.5	-	33.3	15.1
업무과중	43.5	47.1	54.8	42.0	31.8	13.3	46.8	3.8	100.0	-	46.2
열악한 근무여건	30.6	25.7	28.8	26.6	25.0	6.7	28.1	11.5	-	66.7	27.5
자원부족	13.7	21.1	14.9	20.3	27.3	26.7	18.9	15.4	-	33.3	18.7
전문직 인식부족	12.9	14.3	16.0	14.0	6.8	6.7	14.2	11.5	-	-	14.0
기관운영의 비효율성	14.5	6.4	10.1	9.8	2.3	20.0	8.6	15.4	-	-	9.1
지역연계부족	11.3	12.1	13.8	11.2	6.8	13.3	11.7	15.4	-	-	11.7
행정지침부족	4.8	4.5	3.2	7.0	2.3	6.7	4.7	3.8	-	-	4.2
프로그램 부족	-	6.4	4.8	2.8	6.8	6.7	4.7	-	-	-	3.9
인간관계	4.0	6.0	5.9	4.9	6.8	-	4.5	19.2	-	-	5.5
행정처리 간소화	3.2	1.5	1.1	2.8	2.3	-	19	-	-	-	1.8
교육부족	1.6	3.4	3.2	1.4	6.8	-	2.7	3.8	-	-	2.9
예산부족	21.8	10.9	8.5	18.2	22.7	26.7	14.5	11.5	-	-	14.0
기타	8.1	5.7	4.8	5.6	9.1	26.7	6.4	7.7	-	-	6.2
(대상자수)	(124)	(265)	(188)	(143)	(44)	(15)	(359)	(26)	(1)	(3)	(385)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직원처우개선이30.4%,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나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22.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예산관련 사항이 20.8%이며, 인력지원의 필요성 16.8%, 행정간소화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이 14.1%, 시설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15.7%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업무양식의 표준화 예산확대와 지역사회연계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직원들의 시설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에 비해 건의사항은 시설 전반적인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부 장급에서는 위탁과 관련 건의가 5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관련 개선사항 또한 30.8%로 높게 나타났다. 과장급에서는 위탁관련 사항이 30.0%, 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이 27.5%이며, 업무양식의 표준화와 행정간소화 및 효율화에 대한 건의가 25.0%로 나타났다. 선임 사회복지사의 경우 예산관련 사항과 행정간소화, 위탁관련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았으며 일선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물리치료사와 간호사의 경우 인력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물리치료사와 간호사가 1명밖에 없는 관계로 과중한 업무와 훈련 등이 부족하기 때

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5〉 직책별 건의 및 개선사항(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간호사	기능 교사	기타	전체
행정간소화 및 효율화	15.4	25.0	27.3	14.6	4.0	9.1	-	5.7	14.1
업무양식 표준화	15.4	25.0	18.2	10.2	4.0	4.5	-	11.4	12.1
직원 처우개선	15.4	27.5	27.3	38.7	48.0	18.1	-	17.1	30.4
인력지원	7.7	10.0	4.5	13.9	36.0	31.8	-	20.0	16.8
시설운영관련	3.8	7.5	13.6	19.7	24.0	27.3	-	5.7	15.7
예산관련	30.8	20.0	31.8	18.2	20.0	4.5	100.0	22.9	20.8
지역사회연계	19.2	7.5	13.6	10.2	4.0	9.1	-	20.0	10.9
전문적 서비스	15.4	15.0	4.5	14.6	4.0	4.5	50.0	5.7	10.9
교육	7.7	5.0	9.1	2.2	8.0	13.6	-	-	5.1
위탁관련	53.8	30.0	22.7	19.8	12.0	4.5	-	17.1	22.4
시설 및 설비	30.8	20.0	4.5	17.5	32.0	18.1	-	34.3	21.1
기타	23.1	17.5	9.1	10.9	4.0	18.1	-	17.1	16.2
(대상자수)	( 26)	( 40)	( 22)	(137)	( 25)	( 2)	( 2)	( 35)	(313)

## 第 7 節 運營實態分析의 示唆點

노인복지회관 102개소와 그 직원조사에 대한 조사내용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설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일관된 규칙없이 여러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노인복지회관의 정체성 확립을 약화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94.4%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6대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은 노인복지회관 명칭을 각각 53.6%, 55.4%의 시설이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시설 및 인력 규모, 서비스제공 현황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시설규모가 2,000㎡ 이상인 시설이 서울시의 경우는 83.3%인데 반하여, 광역시는 28.6%, 도지역은 19.6%로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노인복지회관이 타지역에 비하여 규모가 크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기준인 연면적 1,000㎡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도지역은 약 1/3정도이다.

시설내 개별공간확보에서 서울시는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주간보호실이 대부분 확보되어 기능회복훈련과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광역시와 도지역은 매우 낮은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지역사회내의 관련시설현황을 고려할 때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재가복지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 더 절실하다직원수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평균 26.3명이며,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11.7명, 8.9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세 번째, 시설운영비 보조금에 국고의 지원없이 운영됨으로써 지역간 재정적 격차가 더욱 심하다.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지원이 원칙적으로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역시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지방비 보조금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법인보조금 단위사업비에 의한 시설운영비 부담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세입예산에 대한 세입항목별 비율에서 정부보조금 비율이 서울시는 74.1%, 광역시는 59.5%, 도지역은 73.1%이다.

마지막으로 인력지원문제이다 노인복지회관의 최소 직원수를 7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복지회관이 29.4%이다. 그러나 기준인력 7명으로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도록 제시된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복지회관 직원의 업무수행상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과중한 업무(46.2%), 열악한 근무여건(27.5%), 인력·자원 봉사·기자재 등의 자원부족(18.7%), 클라이언트인 노인과과의 관계에서 어려움(15.1%) 등 전반적으로 업무의 과중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현황, 재정 및 인력현황 등에서 나타난 서울과 지방간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의 국고지원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第5章 老人福社會館의 類型別 事例研究

본 장에서는 실태조사 분석과 동일하게 지역별 유형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으로 구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전반적 시설운영에 관한 현황을 사례로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기타사례로 운영형태·주체에 따른 기관운영상의 문제점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 第1節 特別市 老人綜合福祉館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에 의해 서울시가 건립하였다. 1997년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재위탁을 체결하여 약 6년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설립목적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문제 개별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노인복지서비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다. 「배우는 노인, 건강한 노인,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밝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관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1. 位置 및 서비스 對象

대도시형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주택과 아파트 혼합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노인을 회원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A구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7%로 고령인

구 비율이 대체로 낮은 편이나, 회원자격기준인 60세 이상 인구는 30,860명(7.9%)이다. A노인종합복지관의 연평균 등록인원은 약 6,000명(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369명)이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800명으로 이용노인의 65.6%는 A구에 거주하는 회원이다 서비스별 요금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무료이며 일반노인의 경우 식사와 아미용은 실비부담이다.

## 2. 管理運營現況

A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대지면적은 1,157㎡, 연건평 2,505㎡로 시설규모는 종합사회복지관 가형(2,000㎡ 이상)의 수준이다.

시설공간현황은 <표 5-1>과 같이 1층에는 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실과 기능회복실이 있으며, 2층은 사무실과 사회교육실 3층은 강당과 사회교육실, 4층은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 종합노인복지관으로 시설규모가 큰 편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로 교육실과 경로식당, 상담실 등의 공간 부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표 5-1>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층별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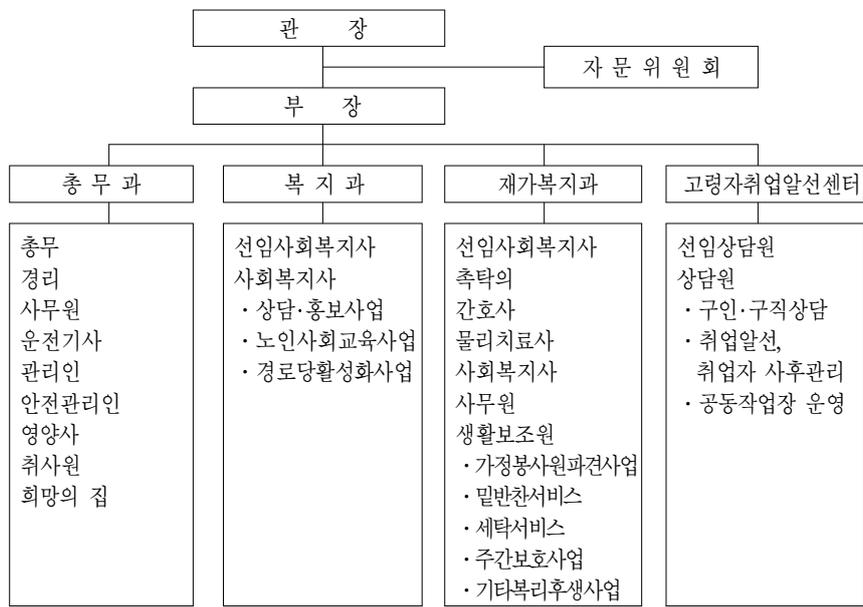
구분	면적(㎡)	시설배치
지하1층	800.0	소강당, 탁구장, 무용반실, 한방진료실, 목욕실, 탁구실, 방송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공동작업장, 창고, 기계실, 전기실, 화장실
1층	460.2	주간보호실, 상담 및 취업알선센터, 물리치료실, 간호실, 기능회복실, 화장실
2층	519.0	사회교육실, 서예실, 정보화교실, 클럽지도실, 종합사무실, 총무과, 관장실, 슈퍼비전실, 이·미용실, 화장실
3층	519.0	대강당, 외국어교실, 문화교실, 장기바둑실, 연출실, 화장실
4층	207.0	경로식당, 주방, 화장실

자료: A노인종합복지관 『A노인종합복지관 사업총람, 2002.』

A노인종합복지관의 기구조직은[그림 5-1]과 같이 총무과, 복지과, 재가복지과,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을 두고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29명으로 관장, 부장, 총무,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6명),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보조원(2명), 사무원 2명, 촉탁의, 취사원(2명), 기타 3인과 추가사업을 담당하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상담원(2명), 경로당활성화사업(1명), 희망의 집(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규모와 직원규모가 모두 큰 기관으로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촉탁의 등 전문인력을 골고루 배치하고 있는 편이다

[그림 5-1]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기구조직도



구 분	계	관 장	부 장	총 무	선 임 복 지 사	사 회 복 지 사	물 리 치 료 사	간 호 사	영 양 사	생 활 보 조 원	사 무 원	운 전 기 사	보 일 리 기 사	취 사 원	관 리 인	촉 탁 의	고 령 자 취 업 알 선 원	경 활 성 화 사 업 당 업	희 망 의 집
인 원	29	1	1	1	1	6	1	1	1	2	2	1	1	2	1	1	2	1	3

자료: A노인종합복지관 『A노인종합복지관 사업총람, 2002.』

A노인종합복지관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총세입이 20억 9032만원(단위사업 1억 7192만원 포함)으로 수입별 구성비는 정부 보조금수입이 90.9%이며, 사업수입 2.3%, 법인전입금 4.7%, 후원금 1.5%, 기타 0.6% 등이다. 그러나

자본적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액으로 구성비를 재계산하면 정부보조금이 81.7%이며, 자부담 비율이 18.3%이다.

한편 지출액은 20억 9032만원으로 기관운영비 27.7%이며, 시설비(재산조성비)로 52.8%, 사업비 15.8% 등으로 지출되었다. 지출현황에서 재산조성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시설증축에 의한 것이므로 세입항목액의 자본적 보조금의 금액을 시설비의 항목에서 빼고 총지출액을 10억 3632만원으로 환산하여 세출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기관운영비 비율이 55.8%이며, 시설비는 4.8%, 사업비는 31.8%, 기타 7.6% 등으로 기관조사에서 나타난 총예산의 세출항목별 구성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기본사업을 위한 총액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지원되어야 사업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5-2〉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2001년도 재정현황

(단위: 만원)

수입현황			지출현황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세입합계	209,032	100.0	세출합계	209,032	100.0
지방비보조금		90.9		(103,632)	
복지관운영비	68,000		기관운영비	57,859	27.7
고령자취업	4,246		재산조성비(시설비)		52.8
희망의집	4,379		시설비Ⅰ	4,973	
자본적보조금	105,400		시설비Ⅱ	105,400	
노인급식비	2,988		사업비		15.8
도시락배달사업	1,305		사업비	29,227	
미급식지원사업	774		실비사업비	3,743	
경로당활성화사업	2,000		기타	7,831	3.7
컴퓨터사업	1,000				
사업수입	4,735	2.3			
법인전입금	9,836	4.7			
후원금	3,072	1.5			
기타	1,298	0.6			

3. 事業現況

주요 기본사업으로는 상담사업 기능회복사업, 결연·후원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노인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으로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단위사업으로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의 집 사업 특화사업(결연사업), 희망의 집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표 5-3 참조).

<표 5-3>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별 주요업무내용

구 분	내 용	
기본사업	상담사업	이용상담, 생활고충상담, 건강상담, 전화상담, 가정상담
	기능회복사업	건강상담, 물리치료, 한방진료, 체력단련, 순회방문진료서비스·간호사정,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 실시
	복리후생사업	아·미용, 세탁서비스, 경로식당운영, 밀반찬배달, 도시락서비스 등
	무료급식사업	무의탁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
	지역복지협동사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로서의 역할 수행함
	결연후원사업	결연전산망을 통해 후원자와 대상자를 1 : 1로 연결하여 후원금·물품지원
	노인사회교육사업	교양 취미·여가, 건강증진, 교육·정서·문화, 특활프로그램, 노인사회참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우애방문, 가사원주, 안부전화, 반찬도시락배달, 후원금 및 물품지급, 차량지원 등 청소년 학생 봉사대 사랑나눔이 운영
	주간보호사업	낮동안 노인보호와 일상 편의제공, 보행 등 간호사정과 일상동작훈련, 물리치료, 산책·오락등 집단활동, 가족보호교육, 상담치료 등
	조사연구사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홍보사회조사 프로그램 평가·개발, 직원재교육 등
단위사업	고령자취업 알선센터	구인자·구직자 상담 및 구인처 알선, 공동작업장 일거리 운영
	경로당활성화사업	선정된 지역내 경로당의 작은 노인복지관 정착화를 마련
	노인의 집 사업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 노인 및 저소득노인에게 주택제공과 가정봉사원 파견 보건의료서비스, 결연후원 등 자활기회 제공
	특화사업 (공동모금회지원사업)	학생봉사대(섬김이)를 결성하여 무의탁 독거노인 1 : 1 연결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사업
	희망의 집	노숙자를 입소시켜 단·장기 자활상담을 비롯한 일상생활 훈련과 개별상담을 실시해 나감

앞장의 시설조사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간보호사업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서울시 전체시설에서 각각83.3%와 94.4%가 실시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으로 실시중인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88.9%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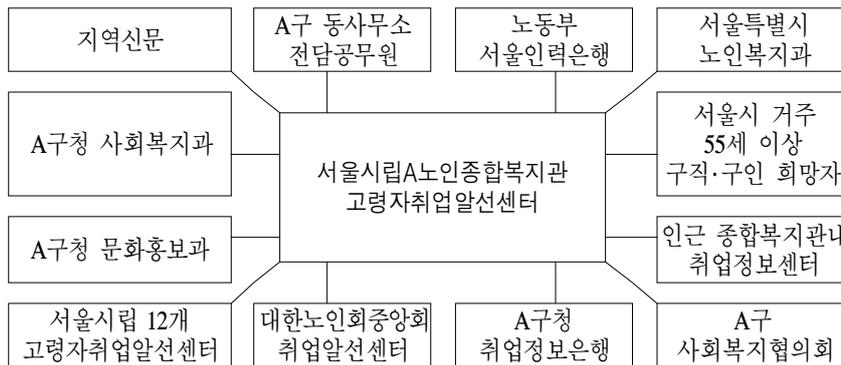
경로당활성화사업은 기존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노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로당을 새로운 노인문화의 장으로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A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8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당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함께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 후원사업을 통하여 여가시설로서의 경로당 자리매김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건강서비스(보건소 순회진료, 방문진료, 치매예방체조), 사회서비스(세탁서비스, 환경미화서비스, 방역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사회교양정보(노래교실, 민요교실, 댄스체조, 토론하기), 어르신 능력개발/지역사회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업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신체적 조건 및 적당한 수익성을 고려한 다양한 부업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담 취업알선기관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난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을 발굴하여 취업을 알선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보람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부의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서 1992년부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운영 중인 13개소는 서울시가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에 의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 관련시설에 우선 설치를 하며 노인복지관이 설치된 구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은 전액 서울시비로 하고 있으며, 1개 센터에 2명의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총 예산액은 4000만원 전후로 주로 인건비에 사용되며 기타 운영비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규정상으로 보면 고령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와 고령자(55세 이상)로 분류되어 있으

15)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사업은 ① 기본사업으로 상담사업, 재가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지역복지협조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② 별도 단위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단기보호사업, 노인그룹홈, 장례지원서비스, 치매주간보호사업, 치매노인상담사업, 기타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③ 서울시 지원사업 외에 타기관 지원 특수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음(2001, 서경석).

며, 본 센터에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A노인종합복지관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사업을 위한 업무체계도는[그림 5-2]와 같이 관련기관들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고령자 취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성과가 저조하며 노인공동작업장도 영세한 부업의 형태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고령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노인의 개인 성취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므로 생산적 복지측면에서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2]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업무체계



사회교육 프로그램에는 취미·여가·문화 프로그램 I, II(표 5-4 참조)와 교육 프로그램(한글반, 영어반, 서예반, 일어반, 중국어반, 한문반, 컴퓨터교실)이 수준별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외 수학반, 역사탐방반, 수지침이 있으며, 교양·건강강좌, 가요교실이 매주 1회 실시되고 있다. 컴퓨터 교실은 그린실버컴퓨터교실 등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의 재취업에 필요한 취업적응교육이나 전직훈련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지역노인들의 기본욕구를 충족

하고 복지관의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나 획일적이고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보다는 지역특성 지역노인복지자원 운영자의 전문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4〉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의 취미/여가/문화 프로그램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취미/여가/문화 프로그램 I						
9:00~ 9:20	새아침인사, 상담, 광고, 안내					
10:00~10:40	우리춤체조	오십견예방체조	건강체조	스트레칭체조	민속체조	새내기회합마당
11:00~12:00	맷돌체조	민요교실	그린실버밴드	쌍쌍에어로빅	한국무용I	청춘노래방
13:00~14:00	가요교실	청춘노래방	믹스체조	건강과 친목	유행행사	-
14:10~15:10	청춘노래방	스포츠댄스I	청춘노래방	청춘노래방	청춘노래방	-
15:20~16:30	청춘노래방	스포츠댄스II	차밍웰리스	한국무용II	단비합창단	-
취미/여가/문화 프로그램 II						
9:00~ 9:20	-	단비무용반	단비무용반	특별반연습	단비무용반	특별반연습
9:20~ 9:50	-	가락장구	-	-	-	-
10:00~10:40	요가	새바람농악대	단전호흡	(한방진료)	새바람농악대	-
11:00~12:00	사물놀이	-	-	-	-	-

## 第 2 節 廣域市 老人福社會館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은 1999년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에 의해 당초 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000년 9월부터 B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설립목적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개발 증진은 물론 사회적·정서적 안정 도모로 건전한 노후생활을 갖게 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

### 1. 位置 및 서비스 對象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은 주택단지에 위치하여 도로에서 걸어서 접근하기 쉬

우며, 해당 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으나 70~80%가 시설이 소속된 B구(區) 거주노인이며 직장퇴직 노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광역시 B구의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0%로 대체로 낮은 편이나 회원자격 기준인 60세 이상의 인구수는 15,170명이다. 현재 등록회원은 약 1,300명정도 (남자: 30.0%, 여자: 70.0%)이며, 1일 이용인원은 400명 정도이다.

## 2. 管理運營現況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대지면적은 791.6㎡, 연건평 1,653㎡로 시설규모는 종합사회복지관 나형(1,500㎡~2,000㎡ 미만)의 수준이다. 층별 시설현황은 지하 1층에 경로식당, 오락실, 클럽활동실이 있으며, 1층은 안내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및 기능회복실 2층은 주간보호실, 서예실, 상담실, 시조실, 바둑·장기실, 이·미용실, 세탁실, 샤워실, 3층은 관장실, 사무실, 강사대기실, 강당이 있으며, 옥외 활동공간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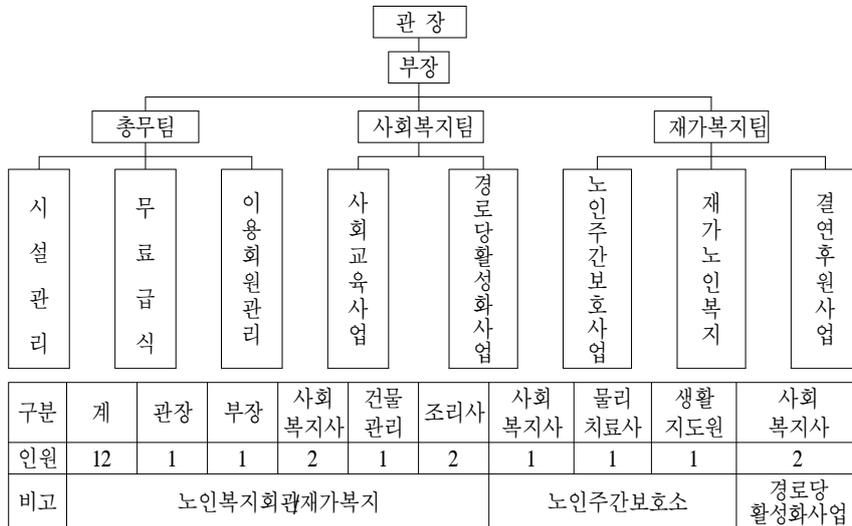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공간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실내공간, 신체적 활동 및 여가공간으로서의 공원, 운동장이 필요하다. 한편 광역시 또는 도지역의 경우 전체적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교육실(프로그램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노인회사무실뿐 아니라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표 5-5〉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의 층별 시설현황

구분	시설배치
지하1층	경로식당, 오락실, 클럽활동실, 창고, 기계실, 화장실
1층	안내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화장실
2층	주간보호실, 서예실, 상담실, 시조실, 바둑·장기실, 이·미용실, 세탁실, 샤워실, 화장실
3층	강당, 관장실, 사무실, 강사대기실, 강당, 대한노인회사무실

직원현황은 노인복지회관의 직원(7명)과 병설 노인주간보호소 직원(3명), 경로당활성화 사업(2명)을 합하여 12명이다. 즉, 관장, 부장, 사회복지사(5명),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관리인, 조리사(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광역시와 도지역의 지방비보조에 의한 최소의 직원구성으로는 다양화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위한 인건비지원이 기본사업이 아닌 단위사업에 의해 지원됨으로써 직원의 근로형태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과 예산운영에 있어 서로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그림 5-3]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의 기구조직도



자료: B광역시노인복지회관 『B광역시 노인복지육구조사 및 위탁1주년 기념 사업실적보고』, 2001.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총세입이 4억 1494만원(단위사업 8535만원 포함)으로 수입별 구성비는 정부 보조금수입이 83.5%이며, 사업수입 4.8%, 법인전입금 0.7%, 후원금 7.2%, 기타 3.8% 등이다. 지출액은 4억 1494만원으로 기관운영비가 57.2%이며, 사업비는 32.8%, 재산조성비로 5.6%, 기타 4.4%가 지출되었다. 광역시 또는 시·도의 위탁일 경우는 단위사업비 외에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보조금이 일반운영비로 보조가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지원 수준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부족한 운영비 보충을 위해 단위사업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사업 운영비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국고지원 운영비로는 경로당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한다

〈표 5-6〉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의 2001년도 재정현황

(단위: 만원)

수입현황			지출현황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세입합계	41,494	100.0	세출합계	41,494	100.0
지방비보조금		64.6	기관운영비	23,736	57.2
복지관운영비	26,810		재산조성비(시설비)	2,325	5.6
단위사업		18.9	사업비	13,599	32.8
주간보호사업	4,850		기타	1,834	4.4
경로당활성화사업	3,000				
사업수입	2,000	4.8			
법인전입금	300	0.7			
후원금	2,967	7.2			
기타	1,567	3.8			

### 3. 事業現況

기본사업으로 상담사업, 재가복지사업, 기능회복사업(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운영), 사회교육사업(건강, 취미, 교양, 클럽활동), 복리후생사업(경로식당, 이·미용실), 탁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사업으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와 경로

당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가복지서비스 보다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탁노사업은 주간보호사업과 사업내용상 유사하므로 주간보호사업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B광역시의 경우 <표 2-1>에서와 같이 재가복지시설이 노인인구수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정봉사원과견사업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5-7> B광역시노인복지회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구분	과 목
취미프로그램	가요, 민요, 시조, 장고, 서예(기초, 심화), 바둑, 장기, 고전무용, 포크댄스, 한지공예
건강프로그램	운동, 단전, 노인건강체조
교양프로그램	교양대학, 한글(기초, 심화), 영어, 한문, 일어
클럽활동	사물놀이패, 합창단, 판소리

### 第 3 節 道地域 老人福社會館

C군노인복지회관은 1999년에 ‘C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법인 C복지재단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 1999년 5월에 최초 위탁(2년 단위)이 이루어졌으며, 2001년 재위탁을 받았다. 그러나 위탁계약기간이 짧아서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 1. 位置 및 서비스 對象

C군노인종합복지회관은 도로에서 걸어서 접근하기는 쉬우며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군지역의 먼 거리에서도 모든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C군의 노인인구수는 12,362명으로 전체인구 중 22.8%로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회원자격은 C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현재 이용노인의 평균 연령이 76세로 매우 높은 편이다.

## 2. 管理運營現況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대지면적은 3,240㎡, 연건평 1,113㎡로 시설규모는 종합사회복지관 나형(1,000㎡~2,000㎡ 미만)의 수준이다. 층별 시설현황은 지하층에 샤워실, 이·미용실, 세탁실, 사회교육실, 서예실, 1층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2층은 강당, 바둑·장기실, 할머니방, 휴게실, 대한노인회사무실이 있으며 야외에 게이트볼장, 야외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직원현황은 노인복지회관의 직원(7명)과 가정봉사원과견사업(2명), 경로당활성화사업(1명)을 합하여 10명이다. 관장, 주임, 사회복지사(3명), 물리치료사, 사무원, 취사원, 운전기사, 관리인 등으로 일반운영비 지원에 의한 직원 7명과 단위사업비 지원에 의한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총세입이 3억 4,999만원(단위사업 1억 5,730만원 포함)으로 수입별 구성비는 정부 보조금수입이 97.3%이며, 사업수입·법인전입금·후원금·기타 등 자체 부담금이 2.7% 등이다. 총세입 중 단위사업에 의한 예산 지원비율이 45.0%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세입예산과 지출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위사업비를 일반예산 항목으로 합쳐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출액은 기관운영비가 60.9%이며, 사업비는 34.6%, 재산조성비로 1.2%, 기타 3.3%가 지출되었다(표 5-8 참조).

C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5%에 불과하지만, 노인비율이 높으므로 노인복지사업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중앙(국비)에서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지역별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개별사업별 지원이 아닌 일정한 단위사업의 내용을 묶어서 일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단위사업에 의한 예산지원방식으로 단위사업담당자와 일반직원간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표 5-8〉 C군노인복지회관 2001년도 재정현황

(단위: 만원)

수입현황			지출현황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세입합계	34,999	100.0	세출합계	34,999	100.0
일반보조금		52.3	기관운영비	21,329	60.9
복지관운영비	18,300		재산조성비(시설비)	427	1.2
단위사업		45.0	사업비	12,099	34.6
경로식당운영비	4,350		기타	1,144	3.3
경로당활성화사업	2,000				
식사배달사업	1,200				
가정봉사원파견사업	7,700				
노인일거리마련사업	480				
사업수입	255	0.7			
법인전입금	-	-			
후원금	659	1.8			
기타	55	0.2			

### 3. 事業現況

지역기관들과 특별한 연계사업은 없으며 기본사업 이외에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일 1식 저녁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식당운영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간 계획으로 C노인학교를 운영하여 1주일에 1회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교육사업 프로그램으로는 서예, 바둑·장기, 가요, 국악, 한글, 산수, 체조, 게이트볼, 단전호흡, 시조, 기초영어, 한문, 수지침 등 12개 과목을 운영하는 등 군지역이지만 프로그램운영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동일 건물내의 대한노인회에서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상태이다.

## 第 4 節 其他 運營形態·主體에 따른 事例

### 1. 市·郡·區 直營 老人福祉會館

#### 가. D노인복지회관

시에서 직영을 하는 노인복지회관인 이 곳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지 않아서 노인복지회관 본연의 기능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D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시로부터 공무원 3명이 파견 나와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분담을 살펴보면 1명이 팀장으로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1명은 사무를, 1명은 건물관리를 하고 있다. 형식상 관장은 시청의 사회복지과장이나 현장에 나와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담당자는 건물 건립 시 노인들과 기존노인복지회관을 견학하였으며 그 때 노인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본인들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여 시에서 위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시 공무원의 파견을 통하여 시청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시 홍보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여가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목욕탕 운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목욕탕의 경우 주 4회 운영하며 150~180명이 사용하는데 1회 사용인원이 15명 내외이므로, 매우 바빠 공공근로자들이 없다면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여가프로그램으로 고전무용, 체조(60명), 스포츠 댄스(80명), 국악(20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가프로그램과 목욕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시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컴퓨터 교실), 보건소(치매교육 등)에 의존하고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즉,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업내용 중 각종 상담서비스의 제공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목욕탕으로 대표되는 복리후생서비스만을 실시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회관 본연의 기능수행보다는 시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시 보조금 3억과 경로식당운영비(7500만원)가 총수입으로 주로 시설보강(방화 처리한 브라인트로의 교체, 노래방기기 설치 등에 소요되고 있을 뿐 강사료(시간당 2만 5천원)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사무실, 상담실, 이·미용실, 자원봉사자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자원봉사자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는 남자이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리치료실 또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수지침 실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층에는 휴게실, 강당, 폐백실이 있는데 이러한 배치를 갖고 있는 이유는 시조례에 의하여 강당(250명 이용가능한 규모)은 주말에 결혼식장(1시간에 1만원)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결혼식장이 많아서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당과 폐백실은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의 연관성이 낮은 공간이라고 판단된다. 3층은 서예실(25인 이용가능), 공동작업장(지회에서 관리), 소강당(영어수업, 수지침), 노인교실, 도서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하에는 식당(144명 이용 가능)과 체력단련실(기기 미미한 상태임)이 마련되어 있고 외부에는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다. D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722.5㎡로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의 본연의 기능에 부응하는 공간구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 나. E종합복지센터

군단위에서 직영하고 있는 E종합복지센터는 노인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노인과 여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종합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의에서 벗어나는 운영형태로 노인복지(회)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노인복지(회)관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공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여성단체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공동묘지였던 지역을 개발하여 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원래 계획은 요양시설 등 장기입소시설, 주택 등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센터화 할 계획이었다 확보된 대지는 총 4천평으로 1만 4천평은 노인요양시설을 계획하였으나 민간기업 유치가 용이하지 않아서 현재 보류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입지로 인하여 본 종합복지센터는 거주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따라서 셔틀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상태이다 또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때 노년여성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운영형태를 보면 군청 복지시설계에서 파견나와 운영중이다(2001.12월 현재로는 4명, 2002년 7월 현재는 행정6급 1인, 기능직 1인, 청경 2인에 기사가 추가배치되어 5명임).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전무하며 주로 건물관리를 위한 직원과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가 어려우며 법에서 정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과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는 약 6100만원으로 과에서 예결산처리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종이공예(주1회 2시간), 단전호흡, 농악(주2회), 서예(지역주민)가 실시되고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찜질방을 운영(1일 50~80명 이용)하고 있다.

대지 13,505㎡, 건평 2,965㎡로 도단위에서는 큰 규모이나 그러한 건물의 공간구성이 노인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실제적인 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층별 구성을 보면 지하는 공동작업장 용도인 교육실을 농악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이·미용실이나 물리치료실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생활체조실은 단전호흡실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다 1층은 휴게실, 상담실, 노인회 사무실, 식당(어린이집, 직원 대상)으로, 2층은 컴퓨터 교실, 여성단체사무실, 자원봉사실, 소비자 고발센터, 교육실, 전시실, 조리교실, 노래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 교실은 컴퓨터가 없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조리교실의 경우는 환기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유사프로그램이 농업연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어 요리강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노래교실의 경우는 별도로 위

탁을 준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있다. 3층에는 120석 회의실이 있는데 예식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노인대학에서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예법지도실은 청소년 지도의 공간 및 폐백실로 활용하고 있다. 외부에는 생활체조를 위한 체육관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다. 즉, 마련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데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두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시·군·구 직영 노인복지(회)관은 공통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부족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과 같은 다른 대상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E종합복지센터의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분류하지 않던가 아니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구성을 바꾸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시·군·구 직영 노인복지(회)관의 가장 큰 문제로는 전문인력의 부재가 지적될 수 있다. 직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이 어렵다.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는 위탁 및 재위탁 과정에서 사업실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나 시·군·구 직영의 경우는 그러한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 2. 大韓老人會 運營 老人福祉會館

군에 소재하고 있는 F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대한노인회에서 3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군청에서 계획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노인회에 전문인력이 없어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군청의 담당공무원이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자 측에서는 대한노인회 지회 사무실만 관리하는 것에 비하여 많은 예산소요관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에 따르는 권리와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서 자율권과

예산지원 증대가 없으면 위탁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적 특성상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 없어서 위탁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전담공무원 인건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직영도 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운영형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군청의 설명이다 F노인복지회관은 1998년부터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월 100만원 외에 시설관리인 인건비(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간 560만원)가 지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관련한 강사료(시간당 1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군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준직영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운영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규적인 프로그램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날에 프로그램(노인학교, 게이트볼, 노래자랑, 시조화)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군청에서 점심제공)이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행사(여성단체 모임, 자원봉사단체 모임 등)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의 불만 사항이다.

건평은 1,059m<sup>2</sup>이며 공간배치를 보면 1층에 사무실, 식당(경로식당 운영, 각종 모임시 식사제공),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은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실은 대한노인회 지회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2층에는 대회의실 이·미용실, 강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대회의실은 노래방 교실로 활용하고 있다. 물리치료실의 경우 여성단체협의회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노인 복지(회)관 본연의 프로그램이 부재하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지역사회 의 각종 단체모임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한노인회 지회사업으로 노인학교를 연 17회(48시간) 약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에 설치되어 있는 F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대한노인회가 운영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운영비(3천 2백만원)만을 보조하고 있을 뿐 위탁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건물면적이 622m<sup>2</sup>에 불과하며 1층에 사무실과 식당이 있고 2층에 서예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대한노인회 사업인 노인대학을 할 수 있는 강당만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서예, 향토노인문화대학(남자노인 위주, 2년제, 월

1회, 80명), 노인학교(여자노인 위주, 1년제, 월 4회, 120명)가 운영되고 있다.

예산을 살펴보면 운영비 3200만원과 경로식당 1960만원(1일 40명분×1,520원), 경로식당 인건비 2인(1인당 1500만원)으로 총 7977만원이다. 대한노인회 지회입장에서는 경로당회비와 기금 1억(관선군수가 지회에 지원한 것)의 이자수입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사무국장퇴임 공무원)이 노인복지회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소극적이며, 자치단체에서 2명을 파견하여 계획서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행사계획은 군청에서 하고 실시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직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이 없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단지 지역 사회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즉, 노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성 등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행사공간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결과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대한노인회 지회 차원에서의 노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第6章 老人福祉會館 機能 및 役割 定立에 관한 調査資料 分析<sup>16)</sup>

### 第1節 老人福祉會館의 名稱

현재 법적 명칭이 노인복지회관이지만 지역별로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제도적 일관성을 위해서 명칭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회관 명칭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시설에서는 다수가 명칭의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명칭으로 통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27.2%, 노인복지관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25.0%이며, 노인복지회관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16.3%로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용시설을 대표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라서 '종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26.1%이다.

시설조사결과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재정이나 인력구성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41.2%가 규모에 따라 '종합'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하여 광역시 소재 시설의 경우는 노인복지관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아 33.3%이다. 반면 도지역에서는 기존대로 혼용하자는 의견이 10.4%로 타지역에서는 없던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6-1 참조).

한편 공무원의 경우 27.9%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공식명칭인 노인복지회관으

16) 노인복지(회)관 전수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시설의 견해를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와 노인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직원조사중 노인복지(회)관의 기능 및 역할정립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임

로 통일, 21.3%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통일 13.1%는 노인복지관으로 통일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어 어떤 명칭이 되었던 명칭의 통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규모에 따라서 ‘종합’이라는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자는 의견도 14.8%, 기존대로 혼용하자는 의견도 16.4%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기존대로 혼용하자는 의견은 시설관리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11.8%만이 현재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이며 41.2%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의 통일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명칭의 통일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며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떠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정책입안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표 6-1〉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시설 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소계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노인복지관으로 통일	25.0	29.4	33.3	18.8	13.1	29.4
노인복지회관으로 통일	16.3	-	18.5	20.8	27.9	5.9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통일	27.2	29.4	29.6	25.0	21.3	41.2
규모에 따라 ‘종합’명칭 사용	26.1	41.2	18.5	25.0	14.8	5.9
기존대로 혼용	5.4	-	-	10.4	16.4	11.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2) <sup>1)</sup>	(17)	(27)	(48)	(61) <sup>2)</sup>	(17)

주: 1) 무응답 10시설 제외

2) 무응답 2명 제외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하며, 62.2%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의 명칭통일을 희망하고 있고 18.2%는 노인복지관으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통일을 원하는 직원의 비율은 직책별로 보면 과장이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6-2 참조). 또한 직원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젊은 직원일수록 노인종합복지관으로의 명칭통일을 원하고 있

고 명칭의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급감한다 근로형태별로는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의 명칭통일을 더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표 7 참조).

〈표 6-2〉 직원의 직책별 노인복지회관 명칭에 관한 의견(직원조사)<sup>1)</sup>

(단위: %,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기능 교사	간호사	기타	전체
노인복지회관	22.2	5.5	-	3.1	11.1	50.0	2.3	17.5	7.4( 41)
노인종합복지회관	5.6	-	5.7	5.4	11.1	-	11.4	8.8	6.3( 35)
노인종합복지관	41.7	70.9	77.1	68.5	51.1	25.0	63.6	46.3	62.2(346)
노인복지관	22.2	16.4	17.1	18.3	22.2	-	20.5	15.0	18.2(101)
통일필요없음	5.6	1.8	-	4.3	4.4	25.0	2.3	11.3	4.9( 27)
기타	2.8	5.5	-	0.4	-	-	-	1.3	1.1( 6)
계 (명)	100.0 ( 36)	100.0 ( 55)	100.0 ( 35)	100.0 (257)	100.0 ( 45)	100.0 ( 4)	100.0 ( 44)	100.0 ( 80)	100.0 (556)

주: 1) 무응답 16명 제외

## 第2節 老人福社會館의 機能

법적으로는 노인여가시설이지만 실제 지역사회거주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정립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으로 보는 견해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연계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되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32.2%이며, 서비스 연계가 일차적 기능이라는 의견도 18.9%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경우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연계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되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며, 광역시의 경우는 서비스의 제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도지역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연계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되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6-3 참조).

한편, 공무원은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보는 견

해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연계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되 서비스 제공을 우선 시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주가 되고 서비스 연계가 부차적 기능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차적인 기능이라는 응답이 52.9%이며, 서비스 제공과 연계의 역할을 동일한 비중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29.4%이다.

<표 6-3>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시설 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소계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서비스 제공	32.2	23.5	40.0	31.3	41.9	52.9
서비스 연계	18.9	11.8	24.0	18.8	6.5	17.6
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7.8	-	8.0	10.4	1.6	29.4
2가지 모두 수행하되 서비스 제공이 우선	32.2	52.9	20.0	31.3	45.2	-
2가지 모두 수행하되 서비스 연계가 우선	6.7	5.9	8.0	6.3	4.8	-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능	2.2	5.9	-	2.1	-	-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0)	(17)	(25)	(48)	(62)	(17)

주: 1) 무응답 12시설 제외  
2) 무응답 1명 제외

직원조사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연계 기능의 비중을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서비스 제공이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인 기능이라는 의견이 16.8%, 연계기능이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인 기능이라는 응답이 13.0%이다. 이러한 응답유형은 직원의 직책별로 다른데 부장과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사의 경우 대다수가 직접적인 서비스제공과 서비스 연계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물리치료사나 기능교사는 이러한 응답률이 낮은 편이다(표 6-4 참조). 직원의 성, 연령, 근로형태별 응답유형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부표 8 참조). 한편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연계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비중을 동일하게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6-5 참조).

〈표 6-4〉 직원의 직책별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에 대한 태도(직원조사)  
(단위: %,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기능 교사	간호사	기타	전체
직접서비스 제공기관	22.9	16.7	5.7	13.2	22.7	-	9.5	32.5	16.8
연계기능	17.1	13.0	2.9	10.5	15.9	50.0	11.9	21.3	13.0
직접서비스제공 +연계기능	60.0	70.4	91.4	75.6	59.1	50.0	78.6	46.3	69.6
기타	-	-	-	0.8	2.3	-	-	-	0.6
계 (명)	100.0 ( 35)	100.0 ( 54)	100.0 ( 35)	100.0 (258)	100.0 ( 44)	100.0 ( 4)	100.0 ( 42)	100.0 ( 80)	100.0 (552)

주: 무응답 20명 제외

〈표 6-5〉 직책별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제공과 서비스 연계 기능 중 우선기능  
(직원조사)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기능 교사	간호사	기타	전체
직접서비스 제공기관	47.6	39.5	37.5	30.6	23.1	50.0	27.3	43.2	33.5
연계기능	19.0	15.8	9.4	24.9	26.9	-	15.2	16.2	20.7
비중을 동일하게	33.3	36.8	50.0	44.0	50.0	50.0	54.5	40.5	44.2
기타	-	7.9	3.1	0.5	-	-	3.0	-	1.6(6)
계 (명)	100.0 ( 21)	100.0 ( 38)	100.0 ( 32)	100.0 (193)	100.0 ( 26)	100.0 ( 2)	100.0 ( 33)	100.0 ( 37)	100.0 (382)

### 第3節 老人福社會館의 서비스 提供方向

#### 1. 基本方向

공무원과 시설조사 연구자 조사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전문화보다 응답률이 높는데 이는 노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시점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도지역에 비하여 대도시 지역의 경우 특정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다.

〈표 6-7〉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제공방향

(단위: %, 명)

구분	시설 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소계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다양한 서비스 제공	61.8	64.7	61.5	73.5	75.0	70.6
특정서비스에 초점	27.5	35.3	38.5	26.5	25.0	29.4
전체 (명)	100.0 (92)	100.0 (17)	100.0 (26)	100.0 (49)	100.0 (60)	100.0 (17)

주: 1) 무응답 10시설 제외  
2) 무응답 3명 제외

## 2. 서비스 優先順位

공무원과 시설조사, 연구자 조사 결과 모두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서비스로는 노인복지회관의 법적 분류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가장 기본기능인 사회교육서비스를 언급하고 있다 즉, 시설의 40.9%, 공무원의 37.1%, 연구자의 26.7%가 사회교육서비스를 가장 우선시해야 할 서비스로 언급하고 있다.

사회교육서비스 다음으로 언급한 서비스는 공무원 조사의 경우 복리후생서비스로 17.7%, 상담서비스 16.1%, 재가복지서비스 12.9%, 보건의료서비스 11.3%로 다양한데 비하여, 시설관리자는 재가복지서비스라는 응답이 25.8%로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광역시나 도지역에 비하여 사회교육이라는 응답률이 낮은 반면 재가복지서비스라는 응답이 높다 상대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공무원은 복리후생서비스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의 경우는 사회교육서비스 26.7%, 상담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각각 20.0%, 경제관련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각각 13.3%로 나타났다.

〈표 6-8〉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시설 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소계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상담서비스	15.1	23.5	3.8	18.0	16.1	20.0
재가복지서비스	25.8	35.3	34.6	18.0	12.9	20.0
사회교육서비스	40.9	29.4	46.2	42.0	37.1	26.7
취업 등 경제관련서비스	5.4	5.9	7.7	4.0	3.2	13.3
보건의료서비스	6.5	-	3.8	10.0	11.3	13.3
기능회복서비스	2.2	5.9	3.8	-	1.6	-
복리후생서비스	4.3	-	-	8.0	17.7	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3) <sup>1)</sup>	(17)	(26)	(50)	(62) <sup>2)</sup>	(15) <sup>3)</sup>

주: 1) 무응답 9시설 제외

2) 무응답 1명 제외

3) 무응답 2명 제외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서비스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의 1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사회교육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로 응답률이 27.6%와 27.4%로 비슷한 수준이며, 다음으로 상담서비스가 15.8%, 보건의료서비스가 12.6%이다. 2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된 서비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25.3%)와 사회교육서비스(20.8%)이다. 즉, 직원들은 사회교육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서비스의 중요 2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3순위로 지적된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직원의 직책별로는 부장이나 과장의 경우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비하여 사회교육서비스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선임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는 사회교육서비스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나 간호사와 같은 보건의료관련 직책의 직원은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우선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제시하고 있다(표 6-9 참조).

직원의 성별로는 남자직원에 비하여 여자직원이 상담서비스와 복리후생서비스를 남자직원엔 여자직원엔 비하여 사회교육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군별로는 50세 이상군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보다는

사회교육서비스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근로형태별 응답유형의 차이는 크지 않다(부표 10 참조).

〈표 6-9〉 직원의 직책별 노인복지회관의 우선 제공서비스(직원조사)  
(단위: %, 명)

구분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기능 교사	간호사	기타	전체
<b>1순위</b>									
상담서비스	11.8	4.0	9.4	20.0	20.0	25.0	12.2	13.0	15.8
재가복지서비스	14.7	30.0	62.5	31.6	22.2	-	9.8	16.9	27.4
사회교육서비스	38.2	42.0	18.8	27.6	17.8	-	14.6	31.2	27.6
취업 등 경제관련 서비스	5.9	8.0	-	4.8	4.4	-	2.4	7.8	5.1
보건의료서비스	17.6	12.0	6.3	6.4	22.2	25.0	43.9	10.4	12.6
기능회복서비스	-	-	-	3.6	8.9	25.0	7.3	3.9	3.8
복리후생서비스	11.8	4.0	3.1	5.6	4.4	25.0	9.8	16.9	7.7
기타	-	-	-	0.4	-	-	-	-	0.2
계 (명)	100.0 ( 34)	100.0 ( 50)	100.0 ( 32)	100.0 (250)	100.0 ( 45)	100.0 ( 4)	100.0 ( 41)	100.0 ( 77)	100.0 (533)
<b>2순위</b>									
상담서비스	-	2.1	15.6	7.9	-	-	7.3	12.2	7.2
재가복지서비스	32.4	29.8	12.5	27.6	18.2	33.3	31.7	17.6	25.3
사회교육서비스	14.7	21.3	34.4	19.2	25.0	33.3	14.6	23.0	20.8
취업 등 경제관련 서비스	20.6	8.5	18.8	15.1	2.3	-	9.8	8.1	12.5
보건의료서비스	14.7	21.3	6.3	15.5	27.3	-	24.4	23.0	18.1
기능회복서비스	-	4.3	6.3	7.1	18.2	-	7.3	4.1	6.8
복리후생서비스	14.7	12.8	6.3	7.1	9.1	-	4.9	12.2	8.8
기타	2.9	-	-	0.4	-	33.3	-	-	0.6
계 (명)	100.0 ( 34)	100.0 ( 47)	100.0 ( 32)	100.0 (239)	100.0 ( 44)	100.0 ( 3)	100.0 ( 41)	100.0 ( 74)	100.0 (514)
<b>3순위</b>									
상담서비스	12.1	10.6	12.5	12.6	4.5	-	15.0	6.8	10.9
재가복지서비스	15.2	17.0	9.4	15.1	13.6	-	10.0	18.9	14.8
사회교육서비스	24.2	10.6	18.8	18.0	13.6	66.7	25.0	9.5	17.0
취업 등 경제관련 서비스	15.2	23.4	9.4	15.9	13.6	-	7.5	20.3	15.8
보건의료서비스	12.1	14.9	12.5	19.2	20.5	-	12.5	9.5	16.0
기능회복서비스	12.1	17.0	18.8	9.2	20.5	33.3	10.0	9.5	11.9
복리후생서비스	9.1	6.4	18.8	8.4	13.6	-	20.0	25.7	12.7
기타	-	-	-	1.6	-	-	-	-	0.8
계 (명)	100.0 ( 33)	100.0 ( 47)	100.0 ( 32)	100.0 (239)	100.0 ( 44)	100.0 ( 3)	100.0 ( 40)	100.0 ( 74)	100.0 (512)

한편, 전문가조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필수서비스와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조사되었다(표 6-10, 표 6-11 참조). 필수서비스로 가장 많이 언급된 서비스는 사회교육서비스로 절반 이상이 언급하고 있으며(63.6%), 다음이 재가복지서비스로 47.7%, 보건의료서비스 34.1%, 상담서비스 30.7%의 순이다. 공무원의 경우도 사회교육서비스가 59.0%, 재가복지서비스 44.3%, 상담서비스 31.1%, 보건의료서비스 24.6%, 복리후생서비스로 비슷한 응답유형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의 경우 응답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 80.0%가 재가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회관의 주요기능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 6-10〉 노인복지회관의 필수 서비스별 비율(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시설 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계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상담서비스	30.7	50.0	23.1	28.3	31.1	33.3
재가복지서비스	47.7	68.8	50.0	39.1	44.3	80.0
사회교육서비스	63.6	81.3	57.7	60.9	59.0	53.3
취업 등 경제관련서비스	22.7	31.3	15.4	23.9	23.0	20.0
보건의료서비스	34.1	37.5	23.1	39.1	24.6	46.7
기능회복서비스	15.9	37.5	3.8	15.2	16.4	26.7
복리후생서비스	21.6	37.5	15.4	19.6	24.6	33.3
(대상자수)	(88) <sup>1)</sup>	(16)	(26)	(46)	(61) <sup>2)</sup>	(15) <sup>3)</sup>

주: 1) 무응답 14시설 제외

2) 무응답 2명 제외

3) 무응답 2명 제외

시설관리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중인 서비스 중 부적합한 것은 없다는 응답이 47.1%인 반면, 불필요한 서비스가 있기는 하다는 응답이 52.8%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는 불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는 응답이 68.3%, 연구자의 경우 76.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부표 11 참조).

전문가 조사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부적합한 서비스로 지적이 가장 많이 된 서비스는 취업 등 경제관련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이다 보건의료서비스가 우선시 되어야 할 서비스로도 지적이 된 반면 부적합한 서비스로도 언급된 것은

서비스 제공시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보건소와의 역할 구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방향설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 등 경제관련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공무원의 경우28.6%, 시설 조사의 19.6%, 연구자 조사의 35.3%에 달하고 있어 취업알선센터 등과 같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기능중복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11〉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별 비율(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시설 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소계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상담서비스	1.0	-	-	1.8	-	11.8
재가복지서비스	6.9	-	7.1	8.9	4.8	5.9
사회교육서비스	1.0	-	-	1.8	1.6	5.9
취업 등 경제관련서비스	19.6	22.2	21.4	17.9	28.6	35.3
보건의료서비스	20.6	27.8	17.9	19.6	33.3	29.4
기능회복서비스	5.9	5.6	3.6	7.1	6.3	23.5
복리후생서비스	8.8	-	3.6	14.3	7.9	-
(대상자수)	(102)	( 18)	( 28)	( 56)	( 63)	( 17)

#### 第 4 節 老人福祉會館의 서비스 對象者 및 運營主體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대다수가 연령기준을 언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65세를 언급하고 있지만, 60세 또는 55세라는 응답도 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다. 생활수준에 의하여 서비스의 일차적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낮은 편으로 공무원 조사시 9.7%, 시설조사에서는 12.1%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경우는 23.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 전반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12〉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서비스 대상자 선별기준

(단위: %, 명)

구분	시설 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소계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연령기준	84.6	94.1	84.6	81.3	85.5	47.1
건강한 노인	1.1	-	-	2.1	3.2	29.4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1.1	-	-	2.1	-	-
생활수준	12.1	5.9	11.5	14.6	9.7	23.5
서비스 내용별 상이한 대상자	1.1	-	3.8	-	1.6	-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1)	(17)	(26)	(48)	(62)	(17)

주: 1) 무응답 11시설 제외

2) 무응답 1명 제외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시설조사는 72.8%, 공무원 조사는 72.6%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공무원 조사의 경우 19.4%, 시설조사의 경우 19.6%이다. 시설조사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은 편인데, 이는 이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운영을 바람직한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은 운영비가 국고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데서 오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하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6-13〉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주체

(단위: %, 명)

구분	시설 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소계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	19.6	11.8	19.2	22.4	19.4	17.6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	72.8	76.5	76.9	69.4	72.6	29.4
학교법인에 위탁운영	3.3	5.9	-	4.1	3.2	-
기타	4.4	5.9	3.8	4.1	4.8	52.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2)	(17)	(26)	(49)	(62)	(17)

주: 1) 무응답 10시설 제외  
 2) 무응답 1명 제외

### 第5節 老人福社會館의 運營上 어려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14.7%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부표 12 참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노인복지회관 수의 부족, 예산부족,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부적절한 위탁법인의 선정 이용계층의 편중, 직원자질부족 등을 언급하고 있다(표 6-14 참조).

노인복지회관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 시설과 공무원이 모두 예산의 부족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이나 행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모두 가장 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시설에서는 예산부족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즉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노인들의 욕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들은 예산부족 다음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 못지 않게 노인복지회관의 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지역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를 행정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욕구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노인복지회관의 공급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연구자들은 프로그램의 부

재라고 하는 전문성의 저하를 노인복지회관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6-14〉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 어려움(중복응답)

구분	(단위: %, 명)		
	시설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대상자수)	85.3 (102)	88.8 (63)	88.2 (17)
노인복지회관 수의 부족	2.3	14.3	6.7
예산부족	44.8	48.2	20.0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17.2	21.4	26.7
부적절한 위탁법인의 선정	1.1	10.7	-
이용계층의 편중	3.4	5.4	13.3
직원자질 부족 등	5.7	5.4	-

## 第 7 章 老人福社會館 運營 活性化 方案

노인복지회관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즉,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더불어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즉, 노인복지회관의 인적기준(직원 수, 자격기준 등) 또는 물적기준(설비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노인복지회관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마련의 미비는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가 전혀 없다는 사실과 엮물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표준화된 운영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과 다수의 노인복지회관이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존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 第 1 節 機能과 役割의 再定立

#### 1. 地域社會의 老人福祉 求心點으로서의 機能과 役割 定立

노인복지회관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해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육·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즉, 기존의 노인

복지회관은 법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여가중심의 사회교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상태에 따른 지역노인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 교육,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현재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는 법적 규정이 노인복지회관의 실제적 기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성을 자아내게 되므로 법적인 명칭과 분류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노인복지회관을 노인교실이나 경로당과 같은 종류의 여가복지시설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와 지역사회자원의 연계성을 통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의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명칭과 분류체계를 개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 개정 시 노인복지회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복지회관은 지역 내 노인복지의 종합센터로서 건강한 노인부터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의 노인까지 다양한 건강상태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여가중심의 프로그램인 건강한 노인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부터 의존상태의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까지 서비스 내용의 확대를 요구한다. 더불어, 건강한 노인이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인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 또는 고령자 재취업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와 동료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아실현 및 소속감을 갖도록 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내 노인복지 관련서비스 연계성을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역할로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역할에 노인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의 역할을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단위에서 노인복지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 2. 必須事業의 明確化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상담 지도, 취업 상담 및 알선, 기능회복훈련, 교양강좌 등을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기능으로서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주요사업내용으로 기본사업 이외에 재가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7)</sup>.

본 연구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기본사업으로 제시된 상담사업 실시율은 83.2%이며, 기능회복사업 중 물리치료 제공률이 75.3%, 교양교실사업 중 일반 교양강좌 실시율은 83.7%, 정보화 교실의 운영률은 62.9%, 취미·여가프로그램 중

17)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사업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2)

- ① 상담·지도: 노인의 생활 주태, 신상 등에 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 ②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 ③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및 훈련의 실시
- ④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노인정보화교육실시 등
- ⑤ 각종 여가 및 오락프로그램 운영
- ⑥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주간보호시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병행 운영하여일정기간 보호 후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⑦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식사배달서비스 등
- ⑧ 경로당 등 지역노인 여가활동 지원경로당활성화사업
- ⑨ 이·미용실, 목욕탕, 경로식당 운영 등

건강증진관련내용으로 체조·에어로빅·요가 프로그램의 실시율은 93.9%, 가요교실(가요, 가곡, 노래방 등) 실시율은 90.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 45.9%이며, 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실시율은 각각 39.2%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취업상담서비스와 공동작업장 운영을 각각 66.7%가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알선서비스는 61.1%, 노인봉사대 활동은 67.7%가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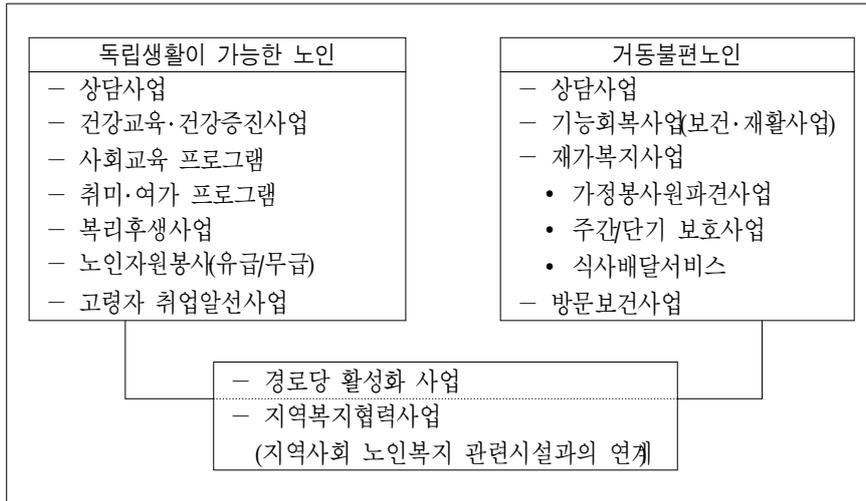
추가사업 또는 단위사업으로는 전체의 40% 이상 시설이 가정봉사원과견사업(서울시 83.3%)과 주간보호사업(서울시 94.4%)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 지역노인 여가활동지원사업도 50% 이상의 시설이 참여(서울시 88.9%)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가사업실시율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지역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실시율이 90% 내외에 달하고 있다.

한편 시설조사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프로그램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 이외에 재가복지사업 지역복지협력, 경로당연계사업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전문조사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 서비스로 사회교육서비스재가복지서비스, 상담서비스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사업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대상 우선제도로써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사업도 필수사업에 추가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수행에 필요한 지역복지협력사업노인복지 관련시설과의 연계<sup>18)</sup>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되어야 할 주요 사업을 제시하면 [그림 7-1]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노인복지회관의 규모가 각 지자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지역노인의 복지욕구에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복지회관의 유형을 지역 및 시설직원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기관의 특성을 살려 선택적 사업이 개발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8)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에 의하면 기본사업으로 가정봉사원과견사업주간보호사업 교육사업, 정서함양사업, 복리후생사업, 기능회복사업, 자원봉사활동 육성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노인소득증대사업 등을 실시함부록 3 참조.

[그림 7-1]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사업내용



## 第 2 節 老人福祉會館의 運營模型

앞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은 상담건강의 증진, 교육,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자료의 분석결과와 사례연구에서 서울지역의 노인복지회관과 기타지(중대광역시와 9개 도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은 시설현황 인력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등 특성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유형을 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대도시형인 노인종합복지관(가형, 나형)과 중소도시형의 노인복지관으로 구분하여 수행해야 할 사업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sup>19)</sup>

### 1. 老人福祉會館 運營의 基本原則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중심의 서비스뿐 아니라 거동

19) 사회복지관은 시설규모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조직은 종사자 수에 따라 4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짐

이 불편한 노인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에서 재가복지사업의 대상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당면한 문제를 경감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사업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현행법의 재가복지사업 대상을 광의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시설구분에서 이용시설로 재분류되어 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명칭 또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규모에 따라서 ‘종합’이라는 표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組織 및 事業內容

노인종합복지관 가형의 경우는 대도시형으로 노인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규모와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2,000㎡ 이상의 규모와 직원 26명으로 규정하였다<sup>20)</sup>. 조직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의 사례에서 제시된 조직을 바탕으로 총무과, 사회복지과, 재가복지과 등 3과로 구분하였다. 사업내용은 크게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수사업과 시설의 운영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 사업내용은 [그림 7-1]에 제시된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였다. 필수사업으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본사업뿐만 아니라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노인복지회관의 주요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20) 서울시립A노인종합복지관은 기구조직도에서 직원현황이 29명이지만 특별사업희망의 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3명을 제외하였음. 서경석(2001)의 연구에서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기본인력이 23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변재관(2002)의 연구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가형의 직원 수는 25명임. 그러나 경로당활성화사업을 기본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정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가형의 직원 수 26명을 기준으로 제시함

관련자원의 연계업무를 포함하는 지역복지협력사업(노인복지 관련시설과의 연계) 등을 추가하였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재가복지과 등 3개 과에는 사업부서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며, 총무과를 제외한 사업부서의 과장은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고, 종사자도 해당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총무과는 조직 및 인사, 예산·결산, 회계·경리, 시설 및 재산관리, 복리후생사업 기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과는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복지 관련자원의 연계업무를 포함하는 지역복지협력사업, 기능회복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의 업무내용이다. 재가복지과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수행이다.

노인종합복지관 나형은 대도시형으로 가형에 비하여 시설규모 1,500㎡~2,000㎡ 미만)와 직원수(21~25명)가 약간 적은 시설로서 총무과 복지과 등 2과로 구분하고 복지과에는 사회복지팀과 재가복지팀의 2팀으로 나눈다. 총무과는 조직 및 인사, 예산·결산, 회계·경리, 시설 및 재산관리, 복리후생사업 기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과의 사회복지팀은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복지 관련자원의 연계업무를 포함하는 지역복지협력사업, 기능회복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의 업무이다. 재가복지팀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인복지관은 중소도시형으로 1,000㎡~1,500㎡ 미만의 시설규모와 직원 12~20명을 갖춘 시설이다. 광역시 및 도(道)지역의 사례에서 제시된 조직을 바탕으로 구성하면 총무팀, 사회복지팀, 재가복지팀으로 구분된다. 총무팀은 조직 및 인사, 예산·결산, 회계·경리, 시설 및 재산관리, 복리후생사업 기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팀은 상담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복지 관련자원의 연계업무를 포함하는 지역복지협력사업, 기능회복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의 업무이다. 특히 서울지역에 비하여 지방의 경우 노인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관련자원의 연계사업을 활발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재가복지팀은 가정봉사원과

건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표 7-1〉 노인복지관의 유형(案) 및 사업내용

구분	규모 <sup>1)</sup>	조직	필수사업	선택사업
노인종합 복지관(가형)	2,000㎡ 이상 (직원 26명)  관장, 부장, 과장 3명, 사회복지사 7명, 축탁의, 간호 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기타 10 명 등	총무과		복리후생사업 <sup>2)</sup>
		사회복지과	상담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기능회복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복지협력사업 (노인복지 관련시설과 연계) 경로당활성화사업	
		재가복지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방문보건사업
노인종합 복지관(나형)	1,500㎡ ~ 2,000㎡ 미만 (직원 21명)  관장, 부장, 과장 2명, 사회복지사 7명, 축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기타 5명 등	총무과		복리후생사업
		복지과 (사회복지팀, 재가복지팀)	상담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기능회복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복지협력사업 (노인복지 관련시설과 연계) 경로당활성화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방문보건사업
노인복지관	1,000㎡ ~ 1,500㎡ 미만 (직원 12명)  관장, 과장, 사회복지사 4명,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영양사, 기타 4명 등	총무팀		복리후생사업
		사회복지팀	상담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기능회복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복지협력사업 (노인복지 관련시설과 연계) 경로당활성화사업	
		재가복지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방문보건사업

주: 1)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최소 시설규모를 1,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회원의 자격은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2)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 3. 老人福祉會館의 類型(案)에 따른 分類

제시한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라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을 분류하여보면 조사대상시설 102개의 38.2%에 해당하는 39개 시설만이 제시된 3개의 유형에 속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는 동비율이 94.4%이며, 대부분이 대도시형인 노인종합복지관 가형 나형에 대부분 분류되고 있다. 6대 광역시와 9개 도지역의 경우는 3개의 유형에 속하는 시설이 각각 28.6%인 8개 시설과 25.0%인 14개 시설에 불과하며 이들 22개 시설의 대부분이 노인복지관 유형이다(표 7-2 참조).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 중 제시된 노인종합복지관 가형 및 나형 노인복지관에 속하는 39개 시설의 예산과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9개 시설의 평균 시설총예산은 2001년도 현재 8억 3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가형에 속하는 노인복지회관의 평균 총예산은 약 12억원이며, 노인종합복지관 나형에 속하는 시설은 약 8억원, 노인복지관 유형의 시설은 약 6억이다. 한편 인력은 노인종합복지관 가형에 속하는 시설의 경우 평균 직원수가 31.4명, 노인종합복지관 나형 시설은 24.7명, 노인복지관형 시설은 1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른 현(現) 노인복지회관의 구분

(단위: 개소, 만원, 명)

구분	서울 특별시	6대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2001년 평균 시설총예산 <sup>1)</sup>	평균 직원수
노인종합복지관(가형)	8	1	1	10	122,973	31.4
노인종합복지관(나형)	8	-	3	11	83,186	24.7
노인복지관	1	7	10	18	59,467	17.6
계	17	8	14	39	83,045	23.1
(전체 분석대상 시설수)	(18)	(28)	(56)	(102)	(50,706)	(12.7)

주: 1) 2001년 평균 시설총예산은 정규사업예산과 단위사업비를 합한 예산이며 무응답 시설은 제외함

제시된 노인복지관 유형(案)에 따른 현(現) 노인복지회관의 단위사업실시율을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약 70%, 주간보호사업은 약 80%, 경로당활성화사

업은 약 65%, 취업알선사업은 약 55% 등 거의 모든 시설이 단위사업실시를 통하여 국고보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3 참조).

〈표 7-3〉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른 현(現) 노인복지회관 단위사업실시율  
(단위: %, 개소)

구분	노인종합복지관 (가형)	노인종합복지관 (나형)	노인복지관	전체 <sup>1)</sup>
가정봉사원파견사업	80.0	63.6	66.7	69.2
주간보호사업(중풍·치매)	90.9	90.9	66.7	79.5
단기보호사업	20.0	-	5.9	7.9
경로당활성화사업	90.9	81.8	38.9	64.1
취업알선사업	70.0	45.5	50.0	53.8
(대상시설수)	(10)	(11)	(18)	(39)

주: 1) 39개소 시설 중 가정봉사원파견사업주간보호사업경로당활성화사업 3개의 단위사업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19개소이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주간보호사업 2개를 실시하는 시설이 5개소이며, 주간보호사업경로당활성화사업 2개를 실시하는 시설이 3개소, 가정봉사원파견사업만 실시하는 시설이 2개소, 주간보호사업만 실시하는 기관이 4개소, 경로당활성화사업만 실시하는 시설이 3개소임.

### 第3節 制度的 整備 方案

#### 1. 財政支援의 擴大 및 支援方式의 改善

#####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복지회관별로 실제 서비스제공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 결과 노인의 비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운영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노인의 비율이 14% 전후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는 군부 지역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노인복지회관은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위사업에 관심과 서비스 제공의 초점을 두게 된다. 본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시설총세입액 중 국고보조금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많은 노인복지회관이 재가복지사업 등 단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단위사업별 국고지원은 자칫 노인복지회관에서의 균형잡힌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하고 인력관리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이 정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설운영비를 국고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용시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운영경(서울 이외의 지방)가 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로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국고 40%, 지방비 60%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방안

### 1) 기본방향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의 지역별 편차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필수사업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실제적으로는 시설운영비 국고보조가 없던 것에서 시설운영비 국고보조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개별적인 서비스 단위별 국고보조에서 기관단위 보조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모든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시설표 7-1 참조)에만 운영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시설은 대부분 단위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

사업이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표 7-3 참조). 현재와 같은 단위사업별 국고보조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지역사회 노인복지거점 기관에 대한 통합적 재정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2) 경과조치

본 보고서 제4장의 실태분석 대상기관 102개 중 제시된 노인복지관 유형(案)에 포함된 39개소 이외 시설의 경우는 일정기간 내에 표준화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시설규모 및 조직을 갖추 수 있도록 시설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제시한 3개 유형(案)에 해당하는 시설만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간주하고 정부지원을 할 경우 지역간 노인복지의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는(표 7-4 참조), 또한 현실적으로 법적인 규정을 지키고 있는 시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시한 3가지 유형(案)의 제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회관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원이 7명 이상~11명인 노인복지회관 33개 시설(시설규모가 1,000㎡ 이상이면서 직원이 7~11명인 시설이 22개소, 시설규모가 1,000㎡ 이하이면서 직원이 7~11명인 시설이 11개소 포함)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통하여 제시한 3개 유형의 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33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제공되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까지 제시한 수준에 미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노력을 촉구하도록 한다.

<표 7-4> 시·도별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른 현(現) 노인복지회관 분포  
(단위: %, 개소)

시·도	노인복지회관수 <sup>1)</sup>	노인복지관 유형(案)별 분포 <sup>2)</sup>				소계
		노인종합복지관(가형)	노인종합복지관(나형)	노인복지관	기타(직원 7~11명)	
서울특별시	20	8	8	1	1	18
부산광역시	6	0	0	1	4	5
대구광역시	4	1	0	0	2	3
인천광역시	9	0	0	0	3	3
광주광역시	5	0	0	3	2	5
대전광역시	5	0	0	2	3	5
울산광역시	2	0	0	1	0	1
경기도	25	1	1	5	8	15
강원도	3	0	1	0	1	2
충청북도	3	0	0	1	2	3
충청남도	5	0	1	1	1	3
전라북도	7	0	0	1	3	4
전라남도	9	0	0	1	1	2
경상북도	2	0	0	1	1	2
경상남도	4	0	0	0	1	1
제주도	5	0	0	0	0	0
전국	114	10	11	18	33	72

주: 1) 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2002. 4.

2) <표 7-1>의 기준에 의한 본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임

### 3) 소요예산 추계

노인복지회관이 일정수준의 종합적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고보조가 필요하다고 정책제언을 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의 시설이 단위사업비로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추정예산과 국비지원 방법과 수준에 따른 소요비용을 비교해보았다(표 7-5~표 7-8 참조). 제시한 3개의 유형(案)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의 현(現) 노인복지회관(39개소)에만 국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한다면 10% 수준에서 지원할 경우는 약 32억이 소요되어 현재 단위사업비로 지출되는 액수보다 오히려 예산규모가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국비지원 수준인 20%를 지원할 경우는 약 64억 정도가 소요되어 단위사업비로 지급

될 액수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장애인 복지관의 국비지원 수준인 40%에서 지원할 경우는 약 129억이 소요될 것이다. 국비지원 지역을 서울시 외로 제한할 경우, 지원대상 시설수는 22개소이며 추계액수는 국비지원 수준에 따라 각각 15억, 30억, 59억의 규모로 나타났다.

한편, 경과조치를 고려하여 7인 이상의 직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現) 노인복지회관(72개소)에 시설에 노인복지회관을 단위로 한 국비지원을 할 경우 소요예산은 10% 수준의 경우는 약 42억, 20% 수준의 경우는 약 85억, 40% 수준의 경우는 170억으로 추계된다. 2002년 현재 이들 72개 시설에 단위사업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액은 59억이다. 국비지원 지역을 서울시 외로 제한할 경우 지원대상 시설수는 54개소이며 추계액수는 국비지원 수준에 따라 각각 24억, 49억, 98억의 규모로 나타났다. 이들 54개 시설에 단위사업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액은 36억 규모이다.

위에서 실시한 재정추계에 기초해본다면 제시된 3개의 노인복지관 유형(案)에 속하는 노인복지회관과 이러한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노인복지법상 명 이상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제시된 노인복지관 유형(案)에서 제시된 수준까지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국고보조를 하는 것으로 할 경우 20% 정도의 국고보조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액의 규모가 10% 지원의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의 현(現)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한 국고 재정부담능력은 적어도 10%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소한 10% 정도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7-5>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른 단위사업비와 국비예산추계 비교(전국)  
(단위: 개소, 만원)

구분	2002년 추정 단위사업비 <sup>1)</sup>				국비(10%) 예산추계 <sup>2)</sup>			국비(20%) 예산추계 <sup>2)</sup>	국비(40%) 예산추계 <sup>2)</sup>
	가과	주간	경로당	금액	2001년 시설예산	개소수	금액	금액	금액
노인종합복지관 (가형)	8	9	9	129,750	122,973	10	122,973	245,946	491,892
노인종합복지관 (나형)	7	10	9	127,150	83,186	11	91,505	183,010	366,020
노인복지관	12	12	7	173,600	59,467	18	107,041	214,082	428,164
소계	27	31	25	430,500	82,441	39	321,519	643,038	1,286,076

주: 1) 2002년 추정 단위사업비는 現現) 노인복지회관 단위사업별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실시기관수에 <표 4-37>에서 제시된 단위사업별 국고 예산지원기준액을 곱하여 계산함.  
2) 국비 예산추계는 2001년 평균시설총예산(정규예산+단위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10%, 20%, 40%로 가정하여 유형별 시설수를 곱하여 계산함

<표 7-6> 노인복지관의 유형(案)에 따른 단위사업비와 국비예산추계 비교  
(서울시 제외)

(단위: 개소, 만원)

구분	2002년 추정 단위사업비 <sup>1)</sup>				국비(10%) 예산추계 <sup>2)</sup>			국비(20%) 예산추계 <sup>2)</sup>	국비(40%) 예산추계 <sup>2)</sup>
	가과	주간	경로당	금액	2001년 시설예산	개소수	금액	금액	금액
노인종합복지관 (가형)	2	2	1	28,600	121,298	2	24,260	48,520	97,040
노인종합복지관 (나형)	1	2	2	22,650	67,062	3	20,119	40,238	80,476
노인복지관	11	11	7	160,300	61,183	17	104,011	208,022	416,044
소계	14	15	10	211,550	67,449	22	148,390	296,780	593,560

주: <표 7-5> 참조

〈표 7-7〉 노인복지관의 유형(案) 및 직원 7명 이상인 시설의 단위사업비와 국비 예산추계 비교(전국)

(단위: 개소, 만원)

구분	2002년 추정 단위사업비 <sup>1)</sup>				국비(10%) 예산추계 <sup>2)</sup>			국비(20%) 예산추계 <sup>2)</sup>	국비(40%) 예산추계 <sup>2)</sup>
	가과	주간	경로당	금액	2001년 시설예산	개소수	금액	금액	금액
노인종합복지관 (가형)	8	9	9	129,750	122,973	10	122,973	245,946	491,892
노인종합복지관 (나형)	7	10	9	127,150	83,186	11	91,505	183,010	366,020
노인복지관	12	12	7	173,600	59,467	18	107,041	214,082	428,164
기타 (직원 7~11명)	10	9	16	159,650	31,054	33	102,478	204,956	409,912
소계	37	40	41	590,150	58,888	72	423,997	847,994	1,695,988

주: <표 7-5> 참조

〈표 7-8〉 노인복지관의 유형(案) 및 직원 7명 이상인 시설의 단위사업비와 국비 예산추계 비교(서울시 제외)

(단위: 개소, 만원)

구분	2002년 추정 단위사업비 <sup>1)</sup>				국비(10%) 예산추계 <sup>2)</sup>			국비(20%) 예산추계 <sup>2)</sup>	국비(40%) 예산추계 <sup>2)</sup>
	가과	주간	경로당	금액	2001년 시설예산	개소수	금액	금액	금액
노인종합복지관 (가형)	2	2	1	28,600	121,298	2	24,260	48,520	97,040
노인종합복지관 (나형)	1	2	2	22,650	67,062	3	20,119	40,238	80,476
노인복지관	11	11	7	160,300	61,183	17	104,011	208,022	416,044
기타 (직원 7~11명)	9	9	15	149,700	29,930	32	95,776	191,552	383,104
소계	23	24	25	361,250	45,216	54	244,166	488,332	976,664

주: <표 7-5> 참조

## 2. 委託基準의 明確化 및 期間延長

현재 위탁법인 선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위탁과 관련한 기준이 명시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위탁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위탁 이후 평가제도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위탁운영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연장하는 곳이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기간을 짧게 정하는 경향이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직원들이 시설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나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법인 선정의 기준 및 평가제도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대신 위탁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안정성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 3. 적절한 運營主體의 選定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복지법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근무 또는 노인복지담당공무원이 겸직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이유로는 적당한 지역 법인이 없다는 점과 충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예산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운영주체 선정 시 지역성을 벗어나 인근지역의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에게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 4. 評價制度의 導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가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팽배하여 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는 평가를 통한 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이끄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도 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정기적인 평가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단,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국고보조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수준으로 국고보조를 실시한 후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틀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수행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노인복지회관 전체, 즉 사업 및 시설전반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5. 老人福祉會館 設立委員會 設置

노인복지회관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지역노인단체, 노인 등이 포함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내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에 적합한 운영전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지역노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복지관을 설립하는 준비단계를 갖는 것은 계속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성격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복지회관 설립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설립될 때부터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6. 段階的 整備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이 모두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설의 경우는 「노인복지관」(가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관」(가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제시한 노인복지관 운영모형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구체적인 시설설비 규정 인적 규정을 비롯한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만들고 그러한 근거에 의거하여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관」(가칭)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단계적으로는 현재 존재하고 있으나 구축성이 낮은 인적 기준의 법적 구속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다 즉,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복지회관의 직원배치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의 기본요건으로 인적기준의 준수 여부를 제시함으로써 인적 기준의 실제적인 준수를 촉진하도록 한다 또한, 인적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노인복지회관 중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현재 30개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는 지역자치단체별로 그러한 시설을 지역실정에 맞게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가 시설의 절대적인 부족과 지역 편중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인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지역편중은 극복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관의 확대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의 경우 「노인복지관」(가칭)이 추가 건립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 參 考 文 獻

- 경상북도 예천군, 홈페이지 「자치법규」, <http://www.yecheon.go.kr>
- 김범수·김통원,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제2권 1호, 1995.
- 김성경, 『여성회관의 발전적 운영방안 운영 현황 및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8.
- 나상희·구재관, 「노인복지관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998년 겨울호
- 변재관 외,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00.
- 보건복지부, 2002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2002.
- \_\_\_\_\_, 『2002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2.
- \_\_\_\_\_, 『2002년 사회복지관 현황』, 2002.
- \_\_\_\_\_, 『2002년 장애인복지관 현황』, 2002.
- \_\_\_\_\_,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2002. 4.
- 서경석, 「노인복지관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노인복지시설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자료, 서울특별시노인복지시설협회 2001.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집」, <http://www.metro.seoul.kr>
- 서울특별시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사업총람』, 2002.
- 오경석·서미경, 『노인종합복지타운의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육구조사 및 위탁1주년 기념 사업실적보고』, 2001.

- 원영희·모선희, 『노인복지관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18권2호, 1997.
- 임춘식,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여가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연구』, 제2권1호, 1995.
- 정경희 외, 『노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최경석·송정부 공편, 『현대노인복지정책』, 1990.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2001』, 2001.
- 三浦文夫 編, 『圖說高齡者白書2000』, 中央社會福祉協會, 2000.
- 社會福祉の動向編集委員會 編集, 『社會福祉의 動向』, 中央法規, 2000.
- 財團法人 長壽社會開發센터, 『老人福祉關係法令通知集(平成6年度版)』, 平成6年.
- 厚生統計協會, 『國民の福祉の動向』, 株式會社 廣濟堂, 2002.
- Cohen, M., *Senior centers: A focal point for delivery of services to older people*. Washington, D C: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1972.
- Cohen, M., *Senior Centers: A Focal Point for Delivery of Services to Older People*,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1972.
- Donald E. Gelfand, *The Ageing Netw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93.
- Flowler, T., *Alternatives to the Single Site Center*,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1974..
- Gelfand, D., & Gelfand, J. Senior centers and support networks, In D. Biegel & A. Naparstek (Eds.), *Community support systems and mental health*,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1982.
- Gelfand, D., Bechill, W., & Chester, R. *Maryland senior centers: Pro-grams, services and linkages*. Baltimore: School of Social Work, Univ. of Maryland, 1989.

Krout, J., Rural-urban differences in senior center activities and services. *Gerontologist*, 27, 92-97. Taietz, P. (1976). Two conceptual models of the senior center. *Journal of Gerontology*, 31, 1987, 29~222.

Lowy, L. The senior center: A major community facility today and tomorrow. *Perspective on Aging*, 3(2): 5~9, 1974.

Lowy, L. and Doolin. J. , 「Multipurpose Senior Centers」, pp. 342~376, in Monk, A.(Ed.), *Handbook of Gerontological servic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Monk, A.(Ed.), *Handbook of Gerontological servic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http://www.nbparks.org/html/seniors.html>

---

---

## 附 錄

---

---

附錄 1. 市·道別 財政自立度 및 老人福祉豫算의 比率

附錄 2. 實態 調査 關聯 附表

附錄 3. 關聯 老人福祉會館設置 및 運營條例

附錄 4. 調査票(3種)

附錄 1. 市·道別 財政自立度 및 老人福祉豫算의 比率

(단위: 명, %)

시·도	노인인구수	노인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노인복지 예산의 비율
서울특별시	535,053	5.4	94.8	1.4
부산광역시	225,414	6.2	75.9	1.96
대구광역시	147,118	6.0	73.8	1.8
인천광역시	136,654	5.5	72.6	1.54
광주광역시	75,442	5.6	62.8	1.8
대전광역시	74,734	5.5	72.6	1.76
울산광역시	40,846	4.0	70.3	0.98
경기도	519,256	5.8	73.4	3.0
강원도	146,842	9.9	31.1	2.0
충청북도	141,792	9.7	39.7	1.94
충청남도	221,937	12.1	33.2	5.2
전라북도	211,579	11.2	30.8	3.1
전라남도	270,708	13.6	25.5	2.8
경상북도	314,068	11.6	34.4	3.1
경상남도	267,459	9.0	39.9	3.3
제주도	42,924	8.4	34.1	1.73
전국	3,371,806	7.3	57.7	2.25

자료: 1)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2)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2001』, 2001.

3) 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2002. 4.

## 附錄 2. 實態 調查 關聯 附表

〈부표 1〉 시설명칭별 노인복지회관 시설공간별 확보율

(단위 %)

구분	노인종합 복지관	노인 복지관	노인종합 복지회관	노인 복지회관	기타 <sup>1)</sup>	전체
법적기준시설						
사무실	96.6	100.0	100.0	95.7	75.0	95.1
식당	93.1	100.0	100.0	84.8	75.0	89.2
상담실	96.6	88.9	100.0	60.9	75.0	78.4
강당	96.6	77.8	100.0	93.5	87.5	93.1
교육실	86.2	100.0	90.0	69.6	62.5	78.4
물리치료실	100.0	88.9	90.0	67.4	50.0	79.4
법적기준시설 이외 공간						
소강당	34.5	55.6	30.0	37.0	50.0	38.2
관장실	96.6	66.7	70.0	52.2	50.0	67.6
자원봉사자실	75.9	55.6	60.0	32.6	37.5	50.0
간호실	75.9	33.3	10.0	10.9	12.5	31.4
경로의원	24.1	22.2	-	19.6	-	17.6
공동작업장	55.2	44.4	50.0	23.9	50.0	39.2
취업센터 사무실	17.2	11.1	10.0	10.9	12.5	12.7
주간보호실	93.1	55.6	70.0	17.4	25.0	48.0
단기보호실	6.9	11.1	20.0	2.2	25.0	7.8
컴퓨터실	93.1	66.7	50.0	45.7	50.0	61.8
탁구실	79.3	44.4	60.0	28.3	37.5	48.0
장기바둑실	96.6	77.8	90.0	52.2	62.5	71.6
독서실	55.2	22.2	30.0	21.7	37.5	33.3
서예실	93.1	66.7	80.0	50.0	75.0	68.6
종교활동실	10.3	11.1	10.0	2.2	12.5	6.9
세탁실	62.1	33.3	40.0	30.4	37.5	41.2
목욕탕	82.8	77.8	80.0	58.7	62.5	69.6
이·미용실	93.1	77.8	80.0	80.0	63.0	74.5
경로당	-	11.1	30.0	8.7	12.5	8.8
대한노인회 사무실	10.3	44.4	40.0	65.2	62.5	45.1
기계실	93.1	88.9	80.0	80.4	75.0	84.3
창고	89.7	77.8	90.0	80.4	100.0	85.3
기타 교육실	20.7	-	-	2.2	12.5	7.8
기타 여가시설	20.7	-	10.0	8.7	-	10.8
기타 체육관련시설	37.9	22.2	10.0	15.2	-	20.6
기타 보건·의료관련시설	13.8	-	10.0	-	-	4.9
기타 시설	17.2	22.2	50.0	19.6	25.0	22.5
(대상시설수)	(29)	(9)	(10)	(46)	(8)	(102)

〈부표 2〉 시설규모별 노인복지회관 시설공간별 확보율

(단위 %)

구분	1,000㎡ 미만	1,000㎡~ 1,500㎡ 미만	1,500㎡~ 2,000㎡ 미만	2,000㎡ 이상	전체
<b>법적기준시설</b>					
사무실	85.0	100.0	95.0	97.1	94.8
식당	80.0	95.5	75.0	97.1	88.7
상담실	70.0	72.7	80.0	91.4	80.4
강당	85.0	95.5	85.0	100.0	92.8
교육실	65.0	68.2	85.0	91.4	79.4
물리치료실	60.0	86.4	70.0	91.4	79.4
<b>법적기준시설 이외 공간</b>					
소강당	40.0	31.8	50.0	40.0	40.2
관장실	45.5	64.0	71.4	82.4	67.6
자원봉사자실	31.8	40.0	42.9	73.5	50.0
간호실	-	12.0	47.6	55.9	31.4
경로의원	9.1	24.0	23.8	14.7	17.6
공동작업장	40.9	28.0	19.0	58.8	39.2
취업센터 사무실	13.6	12.0	4.8	17.6	12.7
주간보호실	9.1	44.0	47.6	76.5	48.0
단기보호실	-	4.0	9.5	14.7	7.8
컴퓨터실	45.5	52.0	66.7	76.5	61.8
탁구실	27.3	44.0	23.8	79.4	48.0
장기바둑실	45.5	76.0	66.7	88.2	71.6
독서실	18.2	24.0	38.1	47.1	33.3
서예실	40.9	60.0	61.9	97.1	68.6
종교활동실	9.1	4.0	4.8	8.8	6.9
세탁실	22.7	32.0	38.1	61.8	41.2
목욕탕	54.5	68.0	52.4	91.2	69.6
이·미용실	54.5	76.0	66.7	91.2	74.5
경로당	13.6	12.0	9.5	2.9	8.8
대한노인회 사무실	59.1	48.0	52.4	29.4	45.1
기계실	54.5	88.0	90.5	97.1	84.3
창고	81.8	80.0	85.7	91.2	85.3
기타 교육실	-	4.0	9.5	14.7	7.8
기타 여가시설	9.1	8.0	9.5	14.7	10.8
기타 체육관련시설	31.8	12.0	19.0	20.6	20.6
기타 보건·의료관련시설	-	-	4.8	11.8	4.9
기타 시설	31.8	12.0	23.8	23.5	22.5
(대상시설수)	(22)	(25)	(21)	(34)	(102)

〈부표 3〉 노인복지회관 등록노인의 성·교육수준·연령별 비율

(단위: %)

구분	성 <sup>1)</sup>		교육수준 <sup>2)</sup>			
	남자	여자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상	기타
10% 미만	2.3	-	2.7	9.5	24.3	97.3
10~19%	3.5	-	2.7	43.2	35.1	1.4
20~29%	16.3	3.5	8.1	23.0	17.6	1.4
30~39%	29.1	5.8	6.8	8.1	12.2	-
40~49%	25.6	11.6	14.9	8.1	8.1	-
50~59%	11.6	19.8	17.6	1.4	2.7	-
60~69%	8.1	33.7	14.9	2.7	-	-
70~79%	3.5	15.1	14.9	-	-	-
80~89%	-	8.1	10.8	2.7	-	-
90% 이상	-	2.3	6.8	1.4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86)	(74)	(74)	(74)	(74)
평균비율	39.6	60.4	56.4	24.5	18.8	0.5

구분	연령 <sup>3)</sup>				
	64세 이하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10% 미만	30.8	2.6	5.1	24.4	71.8
10~19%	32.1	12.8	16.7	46.2	17.9
20~29%	19.2	21.8	47.4	19.2	10.3
30~39%	12.8	44.9	21.8	6.4	-
40~49%	3.8	7.7	7.7	1.3	-
50~59%	-	3.8	1.3	1.3	-
60~69%	1.3	2.6	-	-	-
70~79%	-	1.3	-	-	-
80~89%	-	1.3	-	1.3	-
90% 이상	-	1.3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78)	(78)	(78)	(78)	(78)
평균비율	16.9	32.9	25.5	16.9	8.0

주: 1) 무응답 시설 16개소 제외

2) 무응답 시설 28개소 제외

3) 무응답 시설 24개소 제외

〈부표 4〉 노인복지회관 명칭별 기본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구분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기타	전체
상담사업	97.4	73.7	83.2
취업알선(소득보장) <sup>1)</sup>			
취업상담	59.0	37.3	45.9
취업알선	53.8	29.3	39.2
공동작업장	59.0	25.9	39.2
기타(프로그램명)	10.3	1.7	5.2
기능회복			
물리치료	92.3	63.8	75.3
작업치료	38.5	17.5	26.0
운동치료	59.0	36.2	45.4
건강상담	89.7	53.4	68.0
진료	84.6	42.1	59.4
한방치료	69.2	43.1	53.6
검진사업	66.7	29.8	44.8
방문간호(방문재활)	61.5	19.3	36.5
기타(기치료, 수지침)	68.4	38.6	50.5
기타	20.5	6.8	12.2
복리후생			
경로식당 운영	97.4	81.4	87.8
이·미용서비스	100.0	78.3	86.9
목욕탕 운영	61.5	34.5	45.4
차량서비스	73.7	37.9	52.1
기타(프로그램명)	10.3	1.7	5.1
지역복지협력			
출판홍보(팸플렛, 홍보지)	92.3	60.0	72.7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97.4	65.0	77.8
노인봉사대 활동	87.2	55.0	67.7
경로행사	97.4	76.3	84.7
자문위원회 운영	82.1	43.3	58.6
지역사회 연계사업	92.3	55.9	70.4
후원사업	87.2	51.7	66.0
편의시설 제공	84.6	80.0	81.8
시설 견학 및 실습교육	94.9	58.3	72.7
푸드뱅크	43.6	10.0	23.2
기타	12.8	10.0	11.1
(대상시설수)	(39)	(63)	(102)

주: 각 프로그램별 무응답 제외

## 〈부표 4〉 계속

구분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기타	전체
교양강좌			
교양교실			
일반교양강좌	92.3	78.0	83.7
한글 교육	92.1	75.9	82.3
영어 교육	91.9	45.6	63.8
일어 교육	72.7	22.2	46.4
한자 교육	78.4	35.1	52.1
숫자 교육	42.1	26.3	32.6
역사탐방	34.2	22.8	27.4
건강교육			
일반건강 (보건)교육	81.1	51.8	63.4
질병중심의 (보건)교육	76.3	35.7	52.1
정보화교실			
컴퓨터 교실	84.2	49.2	62.9
취미여가프로그램			
건강증진(체조, 에어로빅, 요가 등)	97.4	91.7	93.9
가요교실(가요, 가곡, 노래방 등)	100.0	84.5	90.7
전통문화교실(민요, 시조)	94.9	69.5	79.6
체육(탁구, 게이트볼, 포켓볼 등)	92.3	67.8	77.6
무용(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89.7	60.3	72.2
사물놀이(장구, 가야금, 풍물, 창 등)	87.2	67.2	75.3
씨클반(합창반, 연극반, 영화감상반 등)	76.9	43.9	57.3
미술활동(그림, 도자기, 색종이접기 등)	64.1	29.8	43.8
서예반(한글, 한문, 서화, 사군자)	94.9	78.0	84.7
장기, 바둑	89.7	65.5	75.3
다도, 꽃꽂이, 채소가꾸기 등	33.3	16.1	23.2
종교활동	15.4	12.3	13.5
지역사회봉사활동	76.9	44.8	57.7
기타	34.2	20.7	26.0
(대상시설수)	(39)	(63)	(102)

주: 각 프로그램별 무응답 제외

〈부표 5〉 노인복지회관 명칭별 추가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구분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기타	전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sup>1)</sup>			
가정봉사원파견	68.4	30.4	45.7
식사배달서비스	50.0	26.8	36.2
밀반찬배달서비스	73.0	28.1	45.7
세탁서비스	42.1	24.6	31.6
주거환경개선사업	60.5	28.1	41.1
기타(프로그램명)	10.3	-	4.2
주간보호사업 <sup>1)</sup>	76.9	17.2	41.2
단기보호사업 <sup>1)</sup>	7.7	3.4	5.2
교육사업			
보호자교육	41.0	12.1	23.7
경로당 연계 사업 <sup>1)</sup>	74.4	39.7	53.6
(대상시설수)	(39)	(63)	(102)

주: 각 프로그램별 무응답 제외

〈부표 6〉 노인복지회관 명칭별 단위사업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제공 비율

구분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기타	전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61.5	29.6	43.0
중풍 및 허약노인 주간보호사업	59.0	16.7	34.4
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	46.2	7.4	23.7
단기보호사업	7.7	1.9	4.3
노인의집 운영사업	12.8	1.9	6.5
경로당 활성화 사업	64.1	45.5	53.2
장례서비스	10.3	7.4	8.6
취업알선사업	41.0	30.9	35.1
기타	15.4	8.9	11.6
(대상시설수)	(39)	(63)	(102)

주: 각 프로그램별 무응답 제외

〈부표 7〉 성·연령·근로형태별 노인복지회관 명칭에 관한 의견<sup>1)</sup>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근로형태					전체
	남자	여자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정규	계약	임시	일용	기타	
노인복지회관	9.2	6.9	5.3	3.6	20.0	35.0	7.4	7.9	-	16.7	-	7.6(43)
노인종합복지회관	2.2	8.4	6.4	6.2	8.6	-	6.0	13.2	-	-	-	6.4(36)
노인종합복지관	65.2	60.7	65.8	63.2	51.4	40.0	64.0	47.4	-	50.0	-	62.2(350)
노인복지관	15.2	19.3	17.8	19.7	17.1	5.0	17.5	21.1	100.0	16.7	-	17.9(101)
통일필요없음	7.1	3.7	3.9	6.2	-	20.0	4.1	7.9	-	16.7	100.0	4.8(27)
기타	1.1	1.1	0.7	1.0	2.9	-	1.0	2.6	-	-	-	1.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4)	(379)	(281)	(193)	(70)	(20)	(514)	(38)	(2)	(6)	(2)	(563)

주: 1) 무응답 16명 제외

〈부표 8〉 직원의 성·연령·근로형태별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에 대한 태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성		연령				근로형태					전체
	남자	여자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정규	계약	임시	일용	기타	
직접적 서비스제공기관	20.0	16.1	14.5	14.6	34.8	26.3	17.3	13.5	50.0	40.0	-	17.4(97)
연계기능	15.0	12.1	9.2	17.2	13.6	26.3	12.6	16.2	-	20.0	100.0	13.1(73)
직접서비스 제공 +연계기능	63.3	71.8	45.6	67.7	51.5	47.4	69.5	70.3	50.0	40.0	-	69.1(386)
기타	1.8	-	0.8	0.5	-	-	0.6	-	-	-	-	0.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0)	(379)	(283)	(192)	(66)	(19)	(514)	(37)	(2)	(5)	(1)	(559)

주: 무응답 9명 제외

〈부표 9〉 성·연령·근로형태별 서비스제공과 서비스 연계 기능 중 우선 기능

(단위: %, 명)

구분	성		연령				근로형태					전체
	남자	여자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정규	계약	임시	일용	기타	
직접적서비스 제공기관	31.0	34.7	28.8	40.0	38.2	33.3	33.2	38.5	100.0	-	-	33.6
연계 기능	24.8	19.2	23.1	18.5	14.7	33.3	20.8	19.2	-	50.0	-	20.8
비중을 동일하게	42.5	44.6	47.2	38.5	47.1	33.3	44.2	42.3	-	50.0	-	44.0
기타	1.8	1.4	1.0	3.1	-	-	1.7	-	-	-	-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3)	(271)	(212)	(130)	(34)	(9)	(355)	(26)	(1)	(2)	-	(384)

〈부표 10〉 노인복지회관 직원의 성·연령·근로형태별 우선 제공서비스  
(단위: %, 개소, 명)

특성	성		연령				근로형태					전체
	남자	여자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정규	계약	임시	일용	기타	
1순위												
상담서비스	13.1	17.5	17.6	14.7	13.8	14.3	15.7	15.8	-	33.3	50.0	16.1
재가복지서비스	28.0	26.8	32.0	22.8	23.1	19.1	27.0	31.6	100.0	-	-	27.2
사회교육서비스	30.9	26.5	26.5	30.4	24.6	33.3	28.3	26.3	-	16.7	50.0	27.9
취업 등 경제관련서비스	6.3	4.4	3.7	7.1	3.1	9.5	5.5	-	-	-	-	5.0
보건의료서비스	14.3	11.5	8.5	13.6	23.1	19.1	13.0	5.3	-	16.7	-	12.4
기능회복서비스	3.4	3.8	3.3	3.8	6.2	-	3.7	5.3	-	-	-	3.7
복리후생서비스	4.0	9.3	8.5	7.1	6.2	4.8	6.7	15.8	-	33.3	-	7.6
기타	-	0.3	-	0.5	-	-	0.2	-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5)	(366)	(272)	(184)	(65)	(21)	(492)	(38)	(2)	(6)	(2)	(541)
2순위												
상담서비스	5.3	7.9	8.4	5.1	6.3	9.5	7.4	-	-	33.3	-	7.1
재가복지서비스	27.2	24.9	25.5	27.4	23.4	19.0	26.2	24.3	-	-	-	25.7
사회교육서비스	22.5	19.8	19.4	21.7	25.0	14.3	20.5	24.3	-	16.7	50.0	20.7
취업 등 경제관련서비스	15.4	10.8	14.8	10.3	6.3	14.3	13.1	5.4	-	-	-	12.3
보건의료서비스	16.6	19.0	17.9	20.0	12.5	28.6	17.1	27.0	-	50.0	50.0	18.2
기능회복서비스	5.9	7.1	7.2	4.6	10.9	4.8	6.3	8.1	-	-	-	6.7
복리후생서비스	6.5	9.9	6.8	9.7	15.6	4.8	8.9	10.8	100.0	-	-	8.8
기타	0.6	0.6	-	1.2	-	4.8	0.6	-	-	-	-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69)	(353)	(263)	(175)	(64)	(21)	(474)	(37)	(2)	(6)	(2)	(522)
3순위												
상담서비스	11.4	10.8	9.5	10.4	15.6	25.0	11.0	11.1	-	16.7	-	11.0
재가복지서비스	13.8	15.3	16.3	16.2	9.4	-	15.2	8.3	-	16.7	50.0	14.8
사회교육서비스	18.0	16.1	16.3	17.3	15.6	20.0	17.5	11.1	-	-	-	16.7
취업 등 경제관련서비스	13.2	17.3	17.0	16.8	14.1	-	15.4	25.0	-	-	-	16.0
보건의료서비스	20.4	13.6	18.2	13.3	14.1	10.0	15.6	19.4	-	16.7	-	15.8
기능회복서비스	9.6	13.3	9.8	14.5	12.5	20.0	12.3	13.9	-	-	-	12.1
복리후생서비스	13.8	12.5	11.4	11.6	18.8	25.0	12.5	5.6	100.0	50.0	50.0	12.9
기타	-	1.2	1.6	-	-	-	0.4	5.6	-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67)	(353)	(264)	(173)	(64)	(20)	(473)	(36)	(2)	(6)	(2)	(520)

## 〈부표 11〉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수

(단위: %, 명)

구분	시설 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소계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없음	47.1	50.0	53.6	42.9	31.7	23.6
1개	43.1	44.4	39.3	44.6	58.7	52.9
2개	7.8	5.6	7.1	8.9	4.8	17.6
3개 이상	2.0	-	-	3.6	4.8	5.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2)	( 18)	( 28)	( 56)	( 63)	( 17)

## 〈부표 12〉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 어려운 점 유무

(단위: %, 명)

구분	시설 관리자				공무원	연구자
	소계	서울시	광역시	도지역		
없음	14.7	5.5	7.1	11.4	11.2	11.8
1개	34.3	38.9	42.9	38.6	60.3	23.5
2개	29.4	16.7	32.1	32.1	19.0	47.1
3개 이상	21.6	38.9	17.9	17.9	9.5	17.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2)	( 18)	( 28)	( 56)	( 63)	( 17)

## 附錄 3. 關聯 老人福社會館設置및運營條例

### 1.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1989.11.14 규칙 제2309호 (제정)

1995.11.30 규칙 제2722호 (개정)

2002.03.25 규칙 제3244호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3.25)

#### 제2조(운영원칙)

①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재조 내지 제17조에서 사업대상자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2.03.25)

#### 제3조(직제 등)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관장은 다음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 사항
3. 기타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2.03.25)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03.25)

③위원회의 위원은 복지관을 관할하는 구청의 소관국장과 대한노인회 서울 특별시연합회 구지회장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학계, 종교계, 의료계, 여성계, 경제계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03.25)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개정 2002.03.25)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2.03.25)

1. 6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⑥위원회는 매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3.25)

제5조(개관 시간 등)

①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구 분		시 간
3월 ~ 10월	평 일	09:00 ~ 18:00
	토 요 일	09:00 ~ 13:00
11월 ~ 2월	평 일	09:00 ~ 17:00
	토 요 일	09:00 ~ 13:00

②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상담사업)

①관장은 노인의 제반 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2.03.25)

② 상담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 가족으로 한다

③ <삭제 2002.03.25>

④ <삭제 2002.03.25>

⑤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3.25)

제7조<삭제 2002.03.25>

제8조(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개정 1995.11.30)

① 관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게 대하여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2.0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파견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노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노인이 아닌 저소득 노인에게도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2.03.25)

③ 가정봉사원은 노인에게에 대한 우애방문 상담, 전화문안과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안내 및 노인을 위한 청소 세탁, 조리, 심부름 등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1.30)

④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호서식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03.25)

제9조(주간보호사업)

관장은 복지관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심신허약, 치매 또는 중풍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03.25)

제10조(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 그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적응 노인건강, 노인간

호, 노인특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02.03.25)

②복지관은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정서함양사업)

①관장은 노인의 유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독서서예, 체조, 레크리에이션·장기·바둑 등 다양한 취미활동실 교양활동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03.25)

②또한 노인의 기능 특기·취미별로 그룹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지도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2.03.25)

#### 제12조(복리후생사업) (개정 2002.03.25)

관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목욕실 및 이·미용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료는 실비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03.25)

#### 제13조(기능회복사업)

①관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기능회복실 목욕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2.03.25)

②<삭제 2002.03.25>

③기능회복실에서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기능훈련치료 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훈련 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④<삭제 2002.03.25>

#### 제14조<삭제 2002.03.25>

#### 제15조(자원봉사활동 육성사업) (개정 2002.03.25)

①관장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03.25)

②<삭제 2002.03.25>

③교육받은 자원봉사자는 가정봉사원 등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수행의 각 분야에 활용한다. (개정 1995.11.30)

제16조(지역복지협동사업)

관장은 결연·후원사업 및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복지협동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지역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5)

제17조(노인소득증대사업)

①관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2.03.25).

②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2.03.25).

부 칙 (198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예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1999.04.10 조례제15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회관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예천읍 서본리 24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각종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군수는 복지회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성환자
2. 정신이상자
3. 시설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군수는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군수는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회관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복지회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 예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999.04.10 규칙제9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8]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의장(이하 "회관의 장"이라 한다) 1명을 비롯한 사무원 1명, 상담지도원 2명, 물리치료사 1명, 취사부 1명, 관리인 1명 등 7명의 정원을 둔다

제4조(직제) 회관의 장은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약정 체결) ①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계약기간 만료3월전에 종합평가하여 계속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운영관련규정집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기간) ①복지회관의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구	분	시 간
하 절 기 (3월~10월)	평 일	09:00 ~ 18:00
	토 요 일	09:00 ~ 16:00
동 절 기 (11월~2월)	평 일	09:00 ~ 17:00
	토 요 일	09:00 ~ 15:00

② 복지회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회관의 장은 식당 및 이·미용실 이용자에 한하여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용료의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2. 노인공동작업장, 취미오락실 등 이용희망자는 별지 제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3. 재가봉사사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4. 노인대학 운영시 입교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호서식에 의하여 입학 신청

제9조(상담사업) ①회관의 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상담대상자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③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회관 이용, 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회복사업) ①회관의 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

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이용대상자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신청자수가 시설 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의 순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 등의 물리 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 훈련 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④물리치료사가 기능회복 치료를 실시할 경우는 관할 보건소의사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회교육사업) ①회관의 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예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노인간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서예, 무용 등 취미교실과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후생사업) ①회관의 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당 이·미용실 및 샤워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관의 장은 노인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업부업, 정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과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지원사업) ①회관의 장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무의탁 노인과의 결연사업 등 노인복지 제고와 자체교육을 통한 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회관의 장은 생활·환경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주간보호사업 가정파견봉사 사업 등 시기와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 ①회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새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매분기 개시 5일전까지 다음 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익월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비) ①군수는 복지회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를 지급하되 운영비 지급액은 수탁법인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회관의 장이 제출하여 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제16조(예산안 제출등) ①회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다음해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회관의 장은 분기별 예산청구와 예산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임용, 보수) ①회관의 장은 직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자중에 임용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지급기준)에 준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錄 4. 調查票(3種)

# 노인복지(회)관 시설조사

지 역	시 설

(위의 네모란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시 설 명				시설장 성명		
설립형태	<input type="checkbox"/> 1. 재단설립형(대지 및 건축비 재단부담) <input type="checkbox"/> 4. 임대형(민간단체 또는 건물임대) <input type="checkbox"/> 2. 기부채납형(재단의 대지 기부에 건축비 정부지원) <input type="checkbox"/> 5. 기타_____					
운영형태	<input type="checkbox"/> 1. 직접운영 <input type="checkbox"/> 2. 위탁운영(위탁기간: _____) <input type="checkbox"/> 3. 기타_____					
	↳ 위탁주체 ( _____ )(예: 서울시, 영등포구, 고양시, 전라남도 등)					
지역유형 I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형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형 <input type="checkbox"/> 3. 농어촌형 <input type="checkbox"/> 4. 도시와 농어촌 복합형 <input type="checkbox"/> 5. 기타_____					
지역유형 II	<input type="checkbox"/> 1. 주택밀집지역 <input type="checkbox"/> 2. 아파트지역 <input type="checkbox"/> 3. 주택과 아파트 혼합지역 <input type="checkbox"/> 4. 상가/사무실 지역 <input type="checkbox"/> 5. 기타_____					
시설운영 개시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현 시 설 이주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소재지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_____번지					
전화번호	(    )    —    _____		Fax번호	(    )    —    _____		
홈페이지 주소						
응답자 성명				응답자 직위		
작성일자	2002년 _____월 _____일					

※ 다음사항을 반드시 조사표와 함께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 ② 2002년 사업계획서
- ③ 실적보고서 포함 2001년 운영평가보고서(조직표 포함)
- ④ 리플렛, 팸플렛, 조사 보고서, 평면도 등의 기타 시설관련 참고자료
- ⑤ 노인복지회관 관련 해당 관할 조례 및 운영지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전국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조사와 직원 조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조사표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에 관한 조사로서 시설 일반현황 및 법인의 관리·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시설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과 향후 노인보건·복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저희 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자료로만 활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입 완료된 조사표는 동봉한 우표를 이용하시어 오는 **2002. 6. 8(토)까지** 당 연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정 경 배

추 신: 조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팀

전화: (02) 380-8330(이윤경), 380-8242(오영희)

FAX: (02) 382-4583(노인복지팀)

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우편번호: 122-705)

※ 각 질문 항목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기입하거나 체크(V) 표시를 해주십시오.

**I. 시설 일반현황**

※ 2001년 12월 31일 현재 상태를 기재해 주십시오.

1. 시설 규모

1-1. 대지: \_\_\_\_\_ m<sup>2</sup>      1-2. 건평: \_\_\_\_\_ m<sup>2</sup>

2. 귀 시설 건물의 층수 및 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_\_\_\_\_층 \_\_\_\_\_동, \_\_\_\_\_층 \_\_\_\_\_동

3. 귀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2개 이상의 용도로 중복사용할 경우 가장 주된 기능을 하는 시설로 표시하여 주십시오(시설이 없는 경우는 0 으로 표시).

구 분	3-1. 시설 개소수	구 분	3-1. 시설 개소수	구 분	3-1. 시설 개소수
( 1 ) 강당	개	(11) 별도의 취업센터 사무실	개	(21) 경로당	개
( 2 ) 소강당	개	(12) 식당	개	(22) 기계실	개
( 3 ) 교육실(프로그램실)	개	(13) 주간보호실	개	(23) 창고	개
( 4 ) 상담실	개	(14) 단기보호실	개	(24) 세탁실	개
( 5 ) 사무실	개	(15) 탁구실	개	(25) 목욕탕	개
( 6 ) 관장실	개	(16) 장기바둑실	개	(26) 이미용실	개
( 7 ) 물리치료실	개	(17) 컴퓨터실	개	(27) 자원봉사자실	개
( 8 ) 간호실	개	(18) 독서실	개	(28) 대한노인회지회 사무실	개
( 9 ) 경로의원	개	(19) 서예실	개	(29) 기타(_____)	개
(10) 공동작업장	개	(20) 종교활동실	개	(30) 기타(_____)	개

3-2. 이상의 시설 중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입예: 소강당과 교육실을 함께 사용할 경우: 1+2)

1) \_\_\_\_\_      2) \_\_\_\_\_      3) \_\_\_\_\_

3-3. 귀 시설은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체적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충분하다 ( 질문 3-4번으로 가시오)
- 2. 적당하다 ( 질문 3-4번으로 가시오)
- 3. 부족하다 ( 질문 3-3-1번으로 가시오)

3-3-1. 공간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부족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3.4. 귀 시설에서 이용중인 시설(공간) 중에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_\_\_\_\_

4. 귀 시설은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각각의 편의시설에 대해 시설유무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편의시설의 종류	시설 유무	
4-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4-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4-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4-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4-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4-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승강기 등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4-7. 장애인용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0. 없음	<input type="checkbox"/> 1. 있음

\* 주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및 그 설치기준임

5. 귀 시설의 이용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 역에서 시설에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1.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2. 걸어서 10~30분 정도 소요된다  
 3. 걸어서 30분 이상 소요된다

**II. 이용 노인 현황**

6. 귀 시설의 이용 어르신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원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200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구 분	인원수(명)	구 분	인원수(명)
년평균 등록실인원	_____명	6-3) 연령별	
6-1) 성별		59세 이하	_____명
남자	_____명	60~64세	_____명
여자	_____명	65~69세	_____명
6-2) 교육수준별		70~74세	_____명
초교졸 이하	_____명	75~79세	_____명
중졸 이하	_____명	80세 이상	_____명
고졸 이상	_____명	6-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_____명

6-5. 귀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1일 평균 몇 명입니까? 1일 평균 인원수: \_\_\_\_\_명

7. 귀 시설은 어르신이 이용하는데 연령기준이 있습니까?

1. 연령 제한 없다       2. 등록에 필요한 공통된 연령 제한이 있다 (\_\_\_\_\_세 이상)  
 3. 기타 (\_\_\_\_\_)



## IV. 재정실태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10. 2001년도 정규예산내역을 기록하여 주십시오(단위사업비 비포함).

구분	세입액	구분	세출액
① 국고보조(중앙정부)	만원	① 기관운영비(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만원
② 지방비보조	만원		
	만원	② 재산조성비(시설비)	만원
③ 사업수입	만원	③ 사업비(운영비, 교육비, OO사업비 등)	만원
④ 후원금	만원		
⑤ 법인지원	만원	④ 기타(이월금 포함)	만원
⑥ 기타	만원	세출합계	만원
세입합계	만원		

10-1. 2001년도 부설, 단위(특별)사업 예산내역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분	세입액	구분	세출액
① 국고보조(중앙정부)	만원	① 사무비(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만원
② 지방비보조	만원		
	만원	② 재산조성비(시설비)	만원
③ 사업수입	만원	③ 사업비(운영비, 교육비, OO사업비 등)	만원
④ 후원금	만원		
⑤ 법인지원	만원	④ 기타	만원
⑥ 기타	만원	세출합계	만원
세입합계	만원		

주: 1) 복지관의 예산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하며 별도의 예산을 지원 받는 경우는 단위사업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예산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의 형태가 어떻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고보조금이 필요 없다
- 2.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비율로 집행되어야 한다
- 3. 전액 국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 4. 기타(\_\_\_\_\_)

12. 귀 시설은 현재 재원이 시설운영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충분하다  2. 적당하다
- 3. 부족한 편이다( 질문 12-1번으로 가시오)

12-1. 추가적인 재원을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1. 인건비  2. 사업운영비  3. 시설보강비  4. 기타\_\_\_\_\_

## VI.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현황

13.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실비 또는 유료로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1. 월 단위 정액제 (월 \_\_\_\_\_ 원)
2. 서비스별 요금제 (질문 14~14-2번의 각 서비스별 이용료를 적어주십시오)
3. 기타(\_\_\_\_\_)
14. 다음과 같은 서비스 중 귀 복지회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각 항목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되고 있는 경우는 월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이며 유료(실비)대상자의 경우 평균 1일(1회) 이용료(원)는 얼마인지 기록하여 주십시오

사업구분	실시 여부 및 월평균 이용 인원수(명)	유료(실비)대상자의 이용료
상담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지역복지협력		
출판홍보(팜플렛, 홍보지)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노인봉사대 활동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경로행사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자문위원회 운영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지역사회 연계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후원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편의시설 제공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시설 견학 및 실습교육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푸드뱅크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기타(프로그램명)	(무엇: _____ )	
취업알선(소득보장) <sup>1)</sup>		
취업상담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취업알선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공동작업장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기타(프로그램명)	(무엇: _____ )	
복리후생		
경로식당 운영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1회: _____ 원
이·미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1회: _____ 원
목욕탕 운영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1회: _____ 원
차량서비스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1회: _____ 원
기타(프로그램명)	(무엇: _____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sup>1)</sup>		
가정봉사원파견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식사배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밀반찬배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세탁서비스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주거환경개선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기타(프로그램명)	(무엇: _____ )	
주간보호사업 <sup>1)</sup>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1회: _____ 원
단기보호사업 <sup>1)</sup>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1회: _____ 원
교육사업		
보호자교육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경로당 연계 사업 <sup>1)</sup>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	

주: 1) 복지관의 예산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하며 별도의 예산을 지원 받는 경우는 다음페이지 질문13-2의 단위 사업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분	실시 여부 및 월평균 이용 인원수(명)	유료대상자의 이용료(원)
기능회복		
물리치료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작업치료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운동치료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건강상담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진료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한방치료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검진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방문간호(방문재활)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기타(기치료, 수지침)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기타(사업명)	(무엇: _____ )	

14-1. 다음의 사회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유료대상자인 경우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무료대상자인 경우는 교육비에 ○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	실시 여부 및 월평균 이용 인원수(명)	유료대상자의 교육비(원)
교양교실		
일반교양강좌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한글 교육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영어 교육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한자 교육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숫자 교육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역사탐방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건강교육		
일반건강 (보건)교육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질병중심의 (보건)교육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1회 _____원
정보화교실		
컴퓨터 교실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취미여가프로그램		
건강증진(체조, 에어로빅, 요가 등)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가요교실(가요, 가곡, 노래방 등)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전통문화교실(민요, 시조)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체육(탁구, 게이트볼, 포켓볼 등)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무용(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사물놀이(장구, 가야금, 풍물, 창 등)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씨클반(합창반, 연극반, 영화감상반 등)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미술활동(그림, 도자기, 색종이접기 등)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서예반(한글, 한문, 서화, 사군자)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장기, 바둑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다도, 꽃꽂이, 채소가꾸기 등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종교활동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지역사회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명)	월 _____원
기타(프로그램명)	(무엇: _____ )	
기타(프로그램명)	(무엇: _____ )	

※ 기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4.2. 단위사업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되고 있는 경우는 월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이며 유료(실비)대상자의 경우 평균 1일(1회) 이용료(원)는 얼마인지 기록하여 주십시오

구분	실시 여부 및 월 평균 이용인원수(명)	유료대상자의 월이용료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월_____원
2) 중풍 및 허약노인 주간보호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월_____원
3) 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월_____원
4) 단기보호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월_____원
5) 노인의집 운영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월_____원
6) 경로당 활성화 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월_____원
7) 장례서비스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월_____원
8) 취업알선사업	<input type="checkbox"/> 0.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1. 실시(_____명)	월_____원
9) 기타(프로그램명)	(무엇: _____ )	

15. 귀 시설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의 노인교실 또는 노인대학 노인학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6. 귀 시설의 프로그램 또는 사업 중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상담사업                       2. 지역복지협력                       3. 취업알선  
 4. 재가복지사업                       5. 경로당 연계사업                       6. 기능회복사업  
 7. 사회교육프로그램                       8. 기타(\_\_\_\_\_)

17. 귀 시설의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중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명과 내용, 잘 운영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7-1. 프로그램명: \_\_\_\_\_

17-2. 프로그램 내용: \_\_\_\_\_

17-3. 운영이 잘되는 이유: \_\_\_\_\_

18. 귀 시설에서 필요성은 인식되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1. 프로그램(서비스): \_\_\_\_\_

18-1.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 \_\_\_\_\_

19. 귀 시설은 이용노인들의 의견과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0. 아니오 → (질문 20으로 가시오)                       1. 예 → (질문 19-1로 가시오)

19-1. <input type="checkbox"/> 1. 정기적: _____년 _____회
<input type="checkbox"/> 2. 비정기적: 최근실시 _____년 _____월

## V. 지역사회와의 관계

20. 귀 시설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0. 없다 → (질문 21으로 가시오)

1. 있다 → (질문 20-1로 가시오)

20-1. 등록 자원봉사자수: \_\_\_\_\_명

20-2. 1일 평균 자원봉사활동자 수: \_\_\_\_\_명

20-3. 자원봉사 자원을 얻는 주된 통로는 어디입니까

1. 시·군·구청의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

2. 지역내 여성자원봉사센터를 통해

3. 종교단체 및 지역내의 사회단체들을 통해

4. 지역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5. 자원봉사자들의 직접적인 방문 또는 신청을 통해

6. 기타(무엇: \_\_\_\_\_)

21. 귀 시설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보건 또는 복지관련 협의체가 있습니까

1. 공식적인 협의체가 있으며, 작동중이다

2. 협의체는 있으나 거의 활동이 없다

3. 협의체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4. 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

5. 협의체에 대한 논의도 준비도 없다

→ (질문 23번으로 가시오)

→ (질문 22번으로 가시오)

22. 협의체 형태는 아니지만 지역내 일선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질문 24번으로 가시오)

23. 협의체나 모임이 지역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에 어느정도 도움이 됩니까

1. 연계 및 협력에 큰 도움이 된다

2. 연계 및 협력에 약간 도움이 된다

→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3.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도움도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

→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4. 귀 시설이 지난 1년간 지역사회내에서 가장 빈번히 연계한 순서대로 기관3군데를 적어주십시오. 또한 연계방법, 연계내용은 무엇인지 각각에 대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24-1) 연계방법: ① 전화    ② 공문    ③ 면담    ④ 회의    ⑤ 공식적 협의체/모임

24-2) 연계내용: ① 프로그램이나 사업관련 정보교환    ② 서비스 대상 개인 정보 또는 서비스 수급관련 정보교환

③ 인력의 교환

④ 클라이언트 의뢰

⑤ 클라이언트 공동관리

⑥ 공동사업 추진

⑦ 기관내 프로그램 이용 ⑧ 기타(\_\_\_\_\_)

관련 기관	24-1. 연계방법	24-2. 연계내용
1)		
2)		
3)		

## VI. 노인복지(회)관 기능 및 역할정립

### 25.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명칭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두 기관간의 제공되어야 할 사업을 달리함으로써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어떻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대로 혼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노인복지관으로 통일/ 노인복지회관으로 통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통일/ 규모에 따라서 '종합'명칭을 사용하여 구분/ 기존의 명칭으로 사용 등)

---

---

---

---

---

### 26.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상 ①각종 상담에 응하고, ② 건강의 증진, ③ 교양, ④ 오락, ⑤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을 노인의 여가생활을 풍요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 및 현장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의사항은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을 ① 지역사회내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할 것인가 ②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서비스간의 연계역할을 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의 논의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어떻게 비중을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연계의 중심역할(서비스 코디네이터)/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지만 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지만 서비스 연계가 우선적 역할/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

---

---

---

---

---

27.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제공방향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상담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취업서비스, 사회교육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과 인력,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이와같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이 현재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28. 노인복지회관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서비스 및 적합지 않은 서비스

【예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중인 서비스

- |                  |            |            |
|------------------|------------|------------|
| 1) 상담서비스         | 2) 재가복지서비스 | 3) 사회교육서비스 |
| 4) 취업 등 경제관련 서비스 | 5) 보건의료서비스 | 6) 기능회복서비스 |
| 7) 복리후생서비스       | 8) 기타      |            |

28-1. 이상의 서비스 중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28-2.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중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또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

---

---

---

28.3. 이상의 서비스 또는 사업 중 노인복지회관의 필수사업을 선정한다면 어떤 서비스(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29.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대상자

노인복지회관의 목적은 노인의 여가생활을 풍요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이용하는 노인은 연령, 경제, 건강측면에서 다양하여 모든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하는 노인이 증가하며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차적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측면에서 6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인가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대상자를 정의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제공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대상자를 어떻게 정의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65세 이상 노인, 건강한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등)

---

---

---

---

---

30. 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학교법인, 대한노인회 등에 위탁운영하거나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운영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 학교법인에 위탁운영 등)

---

---

---

---

---

3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회관의 모델제시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은 규모와 인력,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내에서의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나며, 그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또는 소도시에서 각각 노인복지회관의 모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32.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

---

---

---

---

---

※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신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노인복지(회)관 직원 조사

지 역		시 설	

(위의 네모란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인보건·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조사와 직원 조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조사는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서 업무 및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등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노인복지(회)관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더 나아가 노인복지(회)관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은 향후 노인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저희 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표는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상근직원 및 계약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단, 생활보조원, 간병인, 조리취사원, 사무원, 관리인, 운전기사, 보일러 기사 등은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아울러 통계자료로만 활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완료된 조사표는 동봉한 우표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오는 **2002. 6. 8(토)까지** 당 연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정 경 배

※ 조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80-8330(이윤경), 380-8242(오영희)

FAX: (02)382-4583(노인복지팀)

이메일: kpil@kihasa.re.kr

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팀 (우편번호:122-7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 I. 업무 및 근무환경

1. 귀하께서는 **1주일 동안** 다음의 각 업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십니까?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영역의 비율을 기록해 주십시오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1-1. 프로그램 개발, 기획, 평가 (사회조사/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프로그램 평가 등)	%
1-2. 서비스 제공 (상담/사회교육프로그램/재가서비스/고령자 취업/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등)	%
1-3. 지역사회 연계 활동 (자원봉사자 관리/후원자 관리/홍보 등)	%
1-4. 지원업무 (수퍼비전/직원보수교육/각종 회의 주최 등)	%
1-5. 행정적 업무 (예산 및 문서행정/인사관리/ 장비관리/관련 행정당국과의 업무 등)	%
1-6. 기타1(무엇:_____)	%
1-7. 기타2(무엇:_____)	%
총 비율	100%

2. 귀하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 평균 \_\_\_\_\_시간

3. 다음은 귀하의 업무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표를 해 주십시오.

항 목	1. 매우 만족	2. 만족	3. 그저그렇다	4. 불만족	5.매우불만족
3-1. 급여					
3-2. 업무내용					
3-3. 업무량					
3-4. 복리후생제도(휴가, 연수등)					
3-5. 동료와의 관계					
3-6. 상사와의 관계					
3-7.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4.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1. 이직을 생각한 적이 없다(→5번으로 가십시오)
- 2. 이직하고 싶으나 구체적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다
- 3.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 4. 기타(\_\_\_\_\_)

4-1. 이직을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업무가 과중하다
- 2. 임금이 너무 낮다
- 3. 담당업무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
- 4.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 5. 전망이 없다
- 6. 동료 또는 상사와 관계가 나쁘다
- 7. 기타(\_\_\_\_\_)

II. 지원환경

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0. 없다 →
 

5-1.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과중한 업무 때문에
  - 2. 정보부재로
  - 3. 시설 지원의 미비(시설에서 지원 없음)
  - 4. 자격미비로
  - 5. 기타 (무엇:\_\_\_\_\_)

- 1. 있다 →
 

5-2.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1. 교육·훈련 총 횟수 연 \_\_\_\_\_회
  - 2.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십시오 \_\_\_\_\_

6. 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앞으로 개선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



---

III. 노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7.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회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명칭으로는 어떤 것이 적합하겠습니까?

- 1. 노인복지회관
- 2. 노인종합복지회관
- 3. 노인종합복지관
- 4. 노인복지관
- 5. 동일화시킬 필요가 없다
- 6. 기타(\_\_\_\_\_)

8. 귀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질문 9로 가시오)
- 2.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기능(질문 9번으로 가시오)
- 3.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질문 8-1번으로 가시오)
- 4. 기타(\_\_\_\_\_)

8-1. 노인복지(회)관이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 2. 서비스간의 연계역할로서의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능
- 3. 둘의 비중을 동일하게 제공
- 4. 기타(\_\_\_\_\_)

9. 귀하께서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_\_\_\_\_ 두 번째: \_\_\_\_\_ 세 번째: \_\_\_\_\_

- 1. 상담서비스
- 2. 재가복지서비스
- 3. 사회교육서비스
- 4. 취업 등 경제관련 서비스
- 5. 보건의료서비스
- 6. 기능회복서비스
- 7. 복리후생서비스
- 8. 기타(\_\_\_\_\_)

10. 귀하가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

---

11. 귀하가 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운영 및 시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나 또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점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예: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것,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 법적 제한점, 정책의 문제점, 개별 직책에서의 어려운 점 등)

---

---

---

---

---

---

---

---



# 노인복지(회)관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노인보건·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명칭, 기능과 역할,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자, 담당 공무원, 관련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은 향후 노인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저희 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입완료된 조사표는 동봉한 우표를 이용하시어 개별적으로 오는 2002. 6. 8(토)까지 당 연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정 경 배

※ 조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80-8330, 380-8242 FAX: (02)382-4583(노인복지팀)

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팀  
(우편번호:122-705)

응답자 성명	응답자 소속 기관 및 부서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1.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명칭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어떻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대로 혼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노인복지관으로 통일/ 노인복지회관으로 통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통일/ 규모에 따라서 '종합'명칭을 사용하여 구분/ 기존의 명칭으로 사용 등)

---

---

---

---

---

2.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상 ①각종 상담에 응하고, ② 건강의 증진, ③ 교양, ④ 오락, ⑤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을 노인의 여가생활을 풍요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계 및 현장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의사항은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을 ① 지역사회내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할 것인가 ②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서비스간의 연계역할을 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의 논의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어떻게 비중을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연계의 중심역할(서비스 코디네이터)/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지만 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기관/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지만 서비스 연계가 우선적 역할/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

---

---

---

---

---

### 3. 노인복지회관의 서비스 제공방향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상담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취업서비스, 사회교육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과 인력,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이와같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노인복지회관이 현재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노인복지회관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서비스 및 적합지 않은 서비스

예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중인 서비스

- |            |                  |            |
|------------|------------------|------------|
| 1) 상담서비스   | 4) 취업 등 경제관련 서비스 | 7) 복리후생서비스 |
| 2) 재가복지서비스 | 5) 보건의료서비스       | 8) 기타      |
| 3) 사회교육서비스 | 6) 기능회복서비스       |            |

4. 이상의 서비스 중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5.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중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또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6. 이상의 서비스 또는 사업 중 노인복지회관의 필수사업을 선정한다면 어떤 서비스(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7.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대상자

노인복지회관의 목적은 노인의 여가생활을 풍요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이용하는 노인은 연령, 경제, 건강측면에서 다양하여 모든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차적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측면에서 6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인가?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대상자를 정의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제공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회관의 일차적 대상자를 어떻게 정의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65세 이상 노인, 건강한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등)

---

---

---

---

---

8. 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학교법인, 대한노인회 등에 위탁운영하거나,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운영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 학교법인에 위탁운영 등)

---

---

---

---

9.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회관의 모델제시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은 규모와 인력,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내에서의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나며, 그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또는 소도시에 따라 적합한 노인복지회관의 모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0. 선생님께서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

---

---

---

※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신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著者 略歷 □

---

• 吳 英 姬

漢陽大學校 大學院 保健管理學 博士課程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主要 著書〉

『長期療養保護對象 老人의 수발實態 및 福祉欲求』, 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1. (共著)

『1998年度 全國 老人生活實態 및 福祉欲求調查』,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8. (共著)

---

• 鄭 京 姬

美國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社會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副研究委員

---

• 卞 在 寬

日本 茨쿠마大學 大學院 社會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副研究委員

---

• 李 允 景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文學 碩士(專攻: 社會福祉學)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主任研究員

---

研究報告書 2002-18

---

老人福祉會館 管理運營實態 및 改善方案

A Study on Multi-purpose Senior Centers: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

2002年 11月 日 印刷 畧 7,000원

2002年 11月 日 發行

著 者 吳 英 姬 外

發行人 朴 純 一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 : 02) 380-8000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예원기획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2002

---

ISBN 89-8187-283-X 93330